韓國文化硏究叢書 9

韓末支配層 硏究

金 泳 謨

韓國文化硏究所

1972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그것을 否定할 수 있고 많은 罪를 저지른 歷史의 主役들이 오히려 美化되기 쉬운 것이다. 따라서 集合的 實證主義의 接近方法에 의한 역사 연구가 더욱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필자는 역사 연구에 있어서 개별적 방법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은 아니고 集合的 方法과의 相互補完的 價値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 발견에서 우리나라의 史論이 再定立되어야 할 것이다. 韓末支配層에 대한 연구는 集合的 實證主義의 접근 방법에 의한 것이다.

韓末의 지배층은 傳統社會의 지배층인 官僚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社會的 役割分化로 말미암아 政治·行政·企業·知識의 지배층이 대두되고 있다. 물론 官僚가 가장 강력한 權力과 威勢를 가지고 있으나 각 分野의 지배층의 社會的 性格을 糾明하여야 韓末의 지배층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하여 韓末支配層의 中心的 硏究는 官僚集團의 社會的 性格을 밝히기 위한 것이고(第Ⅰ章), 政治·企業·知識의 지배층도 官僚集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社會的 背景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第Ⅱ, Ⅲ, Ⅳ章).

필자는 韓末支配層에 대한 多角度의 충분한 硏究를 행하였다고 自認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최근 우리나라 植民地化의 원인을 규명하고 오늘날 權力支配層의 社會的 起源을 밝히는 데 一助가 된다면 필자로서는 무한히 기쁘리라.

韓末支配層에 관한 이 정도의 硏究라도 가능하게 된 것은 社會階層硏究의 결정적 자료인 그들의 履歷書와 族譜가 現存하였기 때문이고, 특히 韓沽劤敎授(서울大學校 韓國文化硏究所長)의 指導와 鞭撻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방대한 資料의 處理(記錄·符號化·集計)에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裵甲洙, 白鏞桓, 盧鍾植, 李在善, 兪應淑 등 諸君과 李相殷氏(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에게 심심한 感謝를 드린다.

1972年 9月

著 者

目　　次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그것을 否定할 수 있고 많은 罪를 저지른 歷史의 主役들이 오히려 美化되기 쉬운 것이다. 따라서 集合的 實證主義의 接近方法에 의한 역사 연구가 더욱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필자는 역사 연구에 있어서 개별적 방법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은 아니고 集合的 方法과의 相互補完的 價値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 발견에서 우리나라의 史論이 再定立되어야 할 것이다. 韓末支配層에 대한 연구는 集合的 實證主義의 접근 방법에 의한 것이다.

韓末의 지배층은 傳統社會의 지배층인 官僚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社會的 役割分化로 말미암아 政治·行政·企業·知識의 지배층이 대두되고 있다. 물론 官僚가 가장 강력한 權力과 威勢를 가지고 있으나 각 分野의 지배층의 社會的 性格을 糾明하여야 韓末의 지배층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하여 韓末支配層의 中心的 研究는 官僚集團의 社會的 性格을 밝히기 위한 것이고(第Ⅰ章), 政治·企業·知識의 지배층도 官僚集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社會的 背景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第Ⅱ, Ⅲ, Ⅳ章).

필자는 韓末支配層에 대한 多角度의 충분한 研究를 행하였다고 自認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최근 우리나라 植民地化의 원인을 규명하고 오늘날 權力支配層의 社會的 起源을 밝히는 데 一助가 된다면 필자로서는 무한히 기쁘리라.

韓末支配層에 관한 이 정도의 研究라도 가능하게 된 것은 社會階層研究의 결정적 자료인 그들의 履歷書와 族譜가 現存하였기 때문이고, 특히 韓沽劤敎授(서울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長)의 指導와 鞭撻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방대한 資料의 處理(記錄·符號化·集計)에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表甲洙, 白鏞桓, 盧鍾植, 李在善, 兪應淑 등 諸君과 李相殷氏(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에게 심심한 感謝를 드린다.

1972年 9月

著　者

目　次

이와 같이 韓末의 모든 관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支配層의 構造變化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植民地化의 길을 밟고 있었던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변화의 성격을 밝히는 데도 대단히 필요한 것이다.

官僚는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고 역사적 변화의 構造的 産物이고, 동시에 그것은 정치적 사회적 구조와 변화의 표현이다.

따라서, 관료의 사회적 속성에서 관료의 사회적 성격을 찾아볼 수 있고 나아가 韓末의 사회적 성격의 一面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료의 사회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찾아보려고 한다.

(1) 관료의 充員制度와 充員要因을 분석하여 그들의 社會的 資質을 밝히려고 한다.

(2) 관료의 社會的 背景을 분석하여 그들의 出身成分을 밝히려고 한다.

(3) 관료의 社會移動을 분석하여 그들의 身分世襲性과 移動類型을 밝히고자 한다.

(4) 관료의 어떠한 社會的 資質과 性格이 外勢와 밀착될 수 있었고 마침내 植民地化되었는가를 實證的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2) 研究方法

관료의 사회적 성격은 대부분의 관료가 共有하고 비교적 永續性이 있는 '最頻的 퍼서낼리티' *modal personality*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퍼서낼리티는 주로 社會構造와 文化的 背景에 의하여 형성되고 있다.

필자는 관료의 最頻的 퍼서낼리티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러한 諸要因을 모두 考察할 수 없겠고 다만 社會構造 중에서도 社會化 *socialization* 의 主要한 機構인 家族·學校·職場·地域社會를 중심으로 그 표현 형태인 家門·學歷·經歷·出身地를 분석해볼까 한다.

또한, 이러한 社會化機構에 들어갈 수 있는 機會構造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료가 될 수 있는 사회 제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 제도와 사회 구조의 분석은 그것의 客觀性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사회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는 대단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조건은 可變性이 弱하고 이러한 분석에 의하여 多數社會成員의 공통성을 발견하여 性格規定하는 것이 더욱 과학적 접근 방법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의 행동과 가치가 표현된 史實과 文獻의 분석에 의한 접근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것은 客觀性이 결여될 危險性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관료의 充員方法과 充員要因은 주로 제도적으로 분석하고 그들의 出身成分과 機會構造는 주로 實證的으로 파악하며 그들의 社會移動은 制度와 實證的인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규명하려고 한다.

제도적 분석은 韓末의 官報와 法令集을 주로 이용하였고, 실증적 분석은 韓末 官僚의 履歷書와 族譜를 주로 이용하였다.

韓末 관료의 履歷書는 그들의 사회적 資質과 性格을 밝히는 데 매우 가치있는 기본적인 史料이다. 이것은 階層評價의 共通屬性, 즉 知識(教育과 訓鍊의 量)과 責任(權威와 活動)을 밝혀주기 때문이다.

族譜는 관료의 身分背景과 氏族背景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하며 官報는 그들의 제도적·실증적 밑받침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資料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韓末 관료의 사회적 성격을 밝히기는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韓末 관료는 아직도 充員과 資質의 傳統的 要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벗어나려는 과도기적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관료의 履歷書에서 잘 알 수 없는 父親의 身分背景은 먼저 名門族譜인 「萬姓大同譜」에서 고찰하고, 특히 名門氏族의 경우는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그들의 族譜(國立中央圖書館所藏)에서 再調査하였다. 만약 이것이 「萬姓大同譜」와 같지 않은 경우는 族譜의 것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하여 父親의 身分地位가 밝혀진 것이 전체 관료의 29.4% 였다.

3) 資料의 性質

韓末 관료의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기 위한 基本資料는 관료의 履歷書[1]와 「萬姓大同譜」[2]이고 그 밖에 「韓國官報」[3]와 「高宗時代史」[4] 및 「韓末近代法令資料集」[5]을 주로 이용하였다.

관료의 履歷書는 1903년에서 1910년까지 3,901명분의 現存履歷書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二重 또는 그 이상의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분석의 가치가 있는 것은 整理分의 2,828명과 未整理分의 380명, 도합 3,208명의 이력서이다.

관료의 이력서는 各府部院廳官吏履歷書細則에 의하여 그 작성 내용과 요령이 明示되어 있다.[6]

이에 의하면, 各該長官이 자기의 이력서는 자기의 이름으로 表勳院으로 直送하고 亞官以下 및 地方管轄內 人員의 이력서는 證認捺章한 후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1895년 4월 新官制頒布 이후에 勅奏判任官에 被任된 者와 新官制로 勅奏判任官을 曾經하고 現職이 없는 者도 別途의 書式[7]에 의하여 調製하여 本屬長官 또는 所在地長官을 경유하여 表勳院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매년 1次씩 송부하게 되어 있고 入仕年月日 및 懲戒被刑年月日을 假冒 혹은 漏落한 자는 該履歷書를 永爲拔去하여 버린다고 한다.

---

1) 履歷書는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 奎章閣에 34卷의 藏書와 한 뭉치의 未整理分이 있다. 34卷의 이력서는 各府衙의 이력서로서, 1903년의 履歷書는 13卷이 있고, 1907년의 것은 17卷이 있으며, 나머지는 1908년의 1卷과 1910년의 3卷이 있다. 그리고 未整理分의 이력서는 1908년과 1909년에 조사된 度支部·外部·內部·學部·農商工部·警務廳의 官吏의 것이다.

2) 萬姓大同譜發行所:「萬姓大同譜」上, 下, 續編, 1931年刊.

3) 內閣記錄局 官報課에서 1895년 7월 1일부터 발행한 것으로 奎章閣에 183卷의 韓國官報가 있음.

4) 國史編纂委員會:「高宗時代史」, 1~5卷 探求堂, 1970~71.

5) 國會圖書館:「韓末近代法令資料集」, 1~8卷, 1970~72.

6) 官報, 光武 4년 8월 22일과 9월 14일. 履歷書는 1900년에 表勳院令 第1號로서 各府部廳長官 및 所官吏의 것을 작성하도록 했지만 1896년에 軍部에서 먼저 시작된 것 같다. (「官報」, 開國 504년 1월 20일)

7) 履歷書明細書의 書式에 의하면, 調査日時, 調査者, 官僚의 姓名, 現職, 居住, 生年月日, 本貫, 學業, 經歷, 任免賞罰, 人格件試, 資級 및 陞敍 賞罰理由 등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료의 이력의 記錄이 비교적 정확하고 기본 자료로서의 가치는 대단히 크며 信憑性이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조사한 官僚履歷書는 表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 有職官僚였고 地方官의 履歷書[8]의 記載內容과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거의 모두가 中央官僚의 것이라 할 수 있다.

韓末 관료의 이력서를 보면, 上級官僚의 것이라도 親筆이 대부분이고 1910년경의 것은 일정한 書式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특히 그들의 官職位만을 알 수 있는 관료가 많은데 이것은 모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필자가 분석한 이력서는 1903년의 것이 전체의 29.0%이고 1907년의 것은 55.1%이며, 나머지는 1908년~1910년의 것이다.[9] 1907년의 이력서가 많은 것은 다른 시기의 이력서에 비하여 그 내용이 충실하므로 만약 중복된 경우에는 이것을 중심으로 내용을 보완하였기 때문이다.

필자가 조사한 관료는 判任官이 전체 관료의 52.9%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5.2%의 武官과 11.7%의 奏任官이며 나머지는 勅任官(1.5%), 奏·勅任官(4.3%), 奏·判任官(3.8%), 其他職(8.0%) 및 未詳(3.3%)이다.

〈表 1〉

韓末 官僚의 職位

地位	官職 \ 品階	正一品	從一品	正二品	從二品	正三品	從三品	四品	五品	六品	七品	八品	九品	無	合計(%)
判任官	主事				1	10		2	4	114		2	139	368	640 (20.0)
	技手					2				12			106	83	203 (6.3)
	參奉				1					16			11	42	70 (2.2)
	教員				1	13	1			14	1		40	134	204 (6.4)
	副教官									2			9	37	48 (1.5)
	書記					1				5			12	36	54 (1.7)

8) '地方官銓考細則' 第9條「官報」光武 10년 10월 19일.

9) 筆者가 조사한 履歷書는 모두 3,901명분이다. 이 중에서 버린 것이 693명분인데 대부분이 1903년의 425명분이고 나머지는 1907년의 120명과 1908~10년의 58명, 그리고 未整理分의 90명이다. 1903년의 것이 많이 버려지게 된 것은 1907년의 조사시에도 有官者였고 補完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907년과 그 이후의 이력서가 버려진 것은 調査內容이 그 이전의 것과 同一하였거나 不實하였기 때문이다.

奏任官	書記郞					2		1	5	126			46	72	252 (7.9)
	書記官			1	6	24				5			1	6	43 (1.3)
	總巡·巡檢					1				20			7	51	79 (2.5)
	侍御·(侍從)			1	6	13				8			2	8	38 (1.2)
	博士									1			2	15	18 (0.6)
	製藥師 樂師 기타官		1		6	6				6	1		2	3	25 (0.8)
	參書官					14				4			2	22	42 (1.3)
	技師		1		2	18				5			3	11	40 (1.2)
	郡守				14	34	1	3		17			2	24	95 (3.0)
	贊議·副贊議		3	7	9	12				2				6	39 (1.2)
	丞·令				2	6			1	22			3	13	47 (1.5)
	警務官				5	4				5			1	8	23 (0.7)
	局(課)長			1	11	18				3				12	45 (1.4)
	司長·理事			1	4	6			1	1			1	4	18 (0.6)
	秘書官 事務官 稅務官				4	6				11			1	5	27 (0.8)
勅任官	大臣·顧問		10	6	1									2	19 (0.6)
	特進官 辦判·卿		1	1	7	2								1	12 (0.4)
	其他		1	2	8	2								3	16 (0.5)
奏任·判官	敎官				1	7				3			7	3	21 (0.7)
	飜(通)譯官					6	1			3			7	47	64 (2.0)
	委員				3	7				2			8	16	36 (1.1)
奏·勅任官	議官				4	15		2		8				19	48 (1.5)
	判(檢)事				5	15				10			9	21	60 (1.9)
	提調·副提調		2	2	11	7								1	23 (0.7)
	觀察使				4	2				1				1	8 (0.2)
其他	醫官				3	13				8			10	6	40 (1.2)
	見習生													6	6 (0.2)
武官	將官·기타			2	4	2		1		2			1	1	13 (0.4)
	領官				14	20	1			2			1	14	52 (1.6)
	尉官			1	3	87		1		46			159	93	390 (12.2)
	正校·餉官					5	1			1			1	23	31 (1.0)
其他					17	40	3	1	5	30	4	1	15	96	212 (6.6)
未詳										1				106	107 (3.3)
合計 (%)			19 0.6	25 0.8	157 4.9	420 13.1	8 0.2	11 0.3	16 0.5	516 16.1	6 0.2	3 0.1	608 19.0	1419 44.2	3,208 100.0

관료의 品階記錄은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記錄에 의하면 有品官僚가 전체의 55.8%이고 나머지는 無品者이다. 有品官僚 중에서 正三品 이상이 전체의 19.4%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六品(16.1%)과 九品(19.0%)

이다. 朝官四品 이하는 正·從의 구별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10)]

이와 같이 下級官僚가 上級官僚에 비하여 많다는 것은 당연하나 이 구성 비율은 韓末 관료의 경우와 비슷하다.

필자가 조사한 관료는 同期間의 官僚實數[11)]와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 기간의 官僚勢力의 代表性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韓末의 관료는 表 1과 같이 다양한 관직에 종사하고 主事·技手·書記郞·敎員과 같은 下級官僚들이 多數이기 때문에 官僚勢力의 정치적 사회적 성격이 흐려지기 쉬울지 모르나, 대개 從二品 이상인 勅任官에 대한 별도의 考察에서 당시의 지배적인 성격을 규명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체적인 성격의 파악이 필요하다.

비록 官僚支配層이 존재하나 表 1에서 나타난 多數의 관료가 各府部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미래의 官僚支配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 官僚의 社會的 起源

1) 充員制度

朝鮮王朝時代에 있어서 관료가 되는 길은 科擧·蔭德·推薦의 세 가지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科擧, 특히 文武科와 小科 및 雜科에 入格하여야 된다. 실제로 上級官僚에의 充員은 1차적으로 科擧及第者이고 2차적으로 蔭德·推薦의 緣故性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科擧에 及第한다고 해서 모두 관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小科入格은 生員·進士의 자격 인정에 불과하고, 다만 文武科의 入格만이 官僚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들도 入官의 기회는 王의 傍點에

10) 「官報」 開國 503년 7월 2일.

11) 1908년 6월의 韓國政府官僚는 5,096명이고 이 중에서 日人이 1,797명이며, 또한 統監府의 日人官僚 4,403명이 있었다. 1910년 6월의 조사에 의하면, 韓國政府의 관료는 判任待遇(4,970명)와 囑託·雇員(2,666명)까지 합하여 13,166명으로 증가되었고, 그 대신 統監府의 관료는 3,773명으로 감소되었다(拙稿 外 3人; 「日帝下의 民族生活史」, 民衆書館, 1971, pp. 556-7).

의하여 가능하였다.

朝鮮王朝 前期에는 文科及第者 중 약 80%가 入仕하였고 中期 以前에는 95% 정도이며 末期에는 50%가 仕官하였다.[12)]

이와 같이 科擧及第者의 仕官率이 낮아진 것은 科擧制의 紊亂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科擧制의 紊亂은 그 開設回數와 入格者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文科試의 경우는 그 回數가 定期試에 비하여 不定期試가 약 4倍나 되고 入格者의 定額은 33명인데 대개 이를 초과하고 있다. 그리고 小科의 경우는 大科처럼 不定期試가 그다지 많지 않으나 그 入格者는 定員이 生員·進士에 있어서 각각 100명임에 불구하고 末期에 이르러 점차 이것을 훨씬 초과 하고 있다.[13)]

구체적인 例로서, 甲午改革이 있기 직전인 1894년 5월 甲午式年文武科殿試가 시행되었는데 文科에서는 愼宗翼 등 59人을 취하고 武科에서는 申永均 등 1,147人을 취하였다.[14)] 또한 甲午式年司馬試에서는 279人의 生員을 취하였고 1,042人의 進士를 취하였다.[15)]

이와 같은 科擧制의 紊亂은 官僚充員의 非正常性을 내포하고 동시에 甲申政變·壬午軍亂·東學亂·民亂 등에서 알 수 있는 社會構造的 矛盾, 특히 身分制度의 解體現象을 여실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身分制度와 社會構造의 矛盾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改革의 要求가 1882년 12월의 貴賤과 職業에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綸音이 있었지만 1894년에 소위 '甲午改革'이라는 구체적인 制度改革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甲午改革은 1894년 6월말부터 약 4개월 동안 軍國機務處에서 의결된 208件의 制度改革이 그 중심이 되어 있다.[16)]

---

12) 拙稿:「李氏王朝時代의 支配層의 形成과 移動에 관한 研究」, 中央大 論文集 第11輯, 1966, p. 193.

13) *ibid*, p. 179, p. 182.

14) 「國朝榜目」, 卷之 13과 「承政院日記」, 高宗 31년 5월 15일.

15) 「甲午式年司馬榜目」, 3卷.

16) 國史編纂委員會:「高宗時代史」卷 3, pp. 475-515 참조.
國會圖書館:「韓末近代法令資料集」卷 1, pp. 1-76 참조.
金雲泰:「朝鮮王朝行政史」'近代編', 一潮閣, 第8章 참조.

그 중에서도 門閥과 班常 등의 계급을 타파하고 貴賤에 관계 없이 人材를 選用하며 文武尊卑의 구별을 철폐하고 公私奴婢의 典을 일체 革罷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이러한 制度改革 중에서 관료의 任用을 위한 새로운 人事制度와 敎育制度의 改革이 있었고, 특히 이러한 制度의 內實을 기하기 위한 社會改革의 立法이 먼저 추진되었다. 1894년 7월 3일 軍國機務處는 "科文取士는 朝家의 定制이지만 虛文으로 實才를 收用하기 어려우므로 科擧法을 上裁하여 變通한 후에 選擧條例를 別定할 것"[17]을 의결하였고, 同年 7월 12일에 '銓考局條例'와 '選擧條例', 그리고 7월 14일에 '文官授任式'을 제정하여 실시하였다.[18]

選擧條例에 의하면 관료가 될 수 있는 신분은 朝野紳士 京鄕貴賤을 가리지 않고 모든 社會階層이며 이들에게 充員機會를 주고 있지만, 各府各衙門의 大臣은 自己所管의 奏任官과 判任官을 選取하여 銓考局에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科擧制에 의한 充員方法보다 오히려 閉鎖性을 갖기 쉽다.

選擧條例;

① 各府各衙門大臣은 所管 奏任·判任官을 選取한다.

② 朝野紳士 京鄕貴賤을 불문하고 品行·才術·藝術이 있고 時務를 아는 者를 認眞 選取하여, 그의 職·姓名·年·貫·居住를 詳錄한 選狀을 發給하여 銓考局으로 委送하면 隨材 銓考케 한다.

③ 豫選人選狀內에는 그 才器가 어느 局 어느 課에 適用될 수 있는가를 註明하고 銓考局에서 試行하는 普通試驗을 거쳐 特別試驗을 再行한 후에 各府衙門에 分局充員한다.

④ 學校를 廣設하여 人材를 양성하기 전에는 議政府에서 5部 8道에 關飭하여 鄕貢法에 의하여 京畿道 10人, 忠淸道 15人, 全羅道 15人, 慶尙道 20人, 平安道 13人, 江原道 10人, 黃海道 10人, 咸鏡南北道 各 5人, 五道 및 濟州 各 1人을 薦升 京師로 보내어 어느 衙門으로 赴任하기를 원하는가에 따라 各 衙門大臣이 選取한다.

---

17) 「官報」 開國 503년 7월 3일.
18) 「官報」 開國 503년 7월 12일.
「官報」 開國 503년 7월 14일.
「官報」 開國 503년 7월 19일.

이것을 보면, 비록 官僚充員의 사회적 기반은 개방되어 있고 개인적 자질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으나 選取權이 特權官僚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緣故性이 크게 작용하고, 따라서 機會構造는 대단히 閉鎖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地方民에게는 充員機會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의 規定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것도 緣故性과 閉鎖性이 강력히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兩班官僚의 親族이 아니거나 地方民인 경우는 充員機會가 거의 없는 것이다.

이것은 銓考局의 條例에 의하여 더욱 불가능하게 된다. 즉 地方民과 전통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銓考局의 試驗科目이 國文·漢文·寫字·算術·內國政略·外國事情 등이기 때문에 대단히 不利하다.

銓考局條例;

① 銓考局은 各府衙에서 보낸 選擧人의 考試를 관장하며 試驗은 普通試驗과 特別試驗의 2가지가 있다.

② 普通試驗은 國文·漢文·寫字·算術·內國政略·外國事情, 그리고 內政外事는 모두 策으로 출제한다.

③ 特別試驗은 本人이 所持한 選狀內에 註明한 適用才器에 準하여 單擧로 출제한다.

④ 普通試驗 후에 特別試驗을 치르되 合格하지 못한 者는 銓考局에서 本人의 選擧府·衙에 具文通知하며 合格者에게는 銓試狀을 成給하여 該大臣의 憑考를 삼도록 한다.

⑤ 銓試狀을 가진 者는 該局課內의 陞差에 있어서 다시 試驗이 필요치 않으며 또한 退任者가 다시 同局에 仕官할 때는 試驗이 불필요하다.

이와 같이 官僚候補者는 該大臣의 추천과 銓考局의 試驗을 거쳐야 仕官이 가능하다. 그러나 技術官인 경우는 그 재능에 따라 수용하고 자격에 구애받지 않으며 俸金을 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官吏任用制度는 判任官의 경우 文官授任式의 規定(第4條)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① 勅任官은 모두 聖簡으로 總理大臣이 各衙門大臣 및 贊成 都憲과 協議 公擧

하고 人望을 갖추어 奏聞取旨하여 點用한다.

② 二品 勅任官의 正·從의 階는 모두 聖旨로 裁奪하되 처음에는 從二品을 수여 하고 仕滿하는 36개월간 시종 勝講하면 正二品으로 例陞하고 殊勳 奇績者는 聖旨로 특진시키되 이 限에 있지 않다.

③ 奏任官은 各該衙門大臣이 공평히 선발하여 該品의 官職·姓名·本貫·居住·學識·履歷을 總理大臣에게 呈送하고 都察院에 轉付可否를 評議한 후 그는 이를 奏聞 施行한다.

④ 判任官은 各該衙門大臣에게 人員을 選取하여 銓考局으로 보내어 시험한 후에 該大臣이 薦書를 承宣院에 直上하여 啓下하면 奉教 職帖을 成給한다.

⑤ 技術官은 그 才能에 따라 收用하되 資格에 구애받지 않으며 俸金을 別定한다.

이러한 官僚任用制에서 하나의 理論的 矛盾點을 지적할 수 있는데 그것은 현실의 사회적 욕구(身分撤廢)를 형식적으로 受容·表現하면서 실질적으로는 既存의 官僚支配勢力이 充員機會를 거의 독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朝鮮王朝 末期의 사회적 모순과 解體現象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甲午年의 改革內容에서 강력히 주장되고 있는 身分撤廢와 人材登用은 이미 王朝 末期의 사회의 逆階層化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甲午改革은 이의 合法化作業이라 할 수 있다.

王朝社會의 逆階層化 현상은 이미 大邱府와 蔚山府의 身分構造의 변동에서 實證되고 있는 바와 같이,[19] 17C 末까지만 하여도 戶籍上으로 兩班이 極少數(8.3%)이고 常民과 奴婢가 絕對多數(각각 51.1%와 40.6%)였던 것이 18C 중엽에 이르러 奴婢가 급격히 감소되고(13.9%) 兩班이 증가되였으며(26.3%), 19C 중엽 이후는 奴婢는 거의 없고(1% 내외) 常民이 감소하며(33% 내외) 兩班이 급격히 증가되었다(65.5%).

이것은 社會階層, 즉 身分構造와 身分意識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弱化되었고 전통적인 身分概念인 班常關係가 사회 생활에 있어서 거의 그 빛을 잃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혁신적인 社會改革의 제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19) 四方 博:「李朝人口에 관한 身分階級別的 觀察」, 梨花女大 社會學科編譯, p. 28.
鄭奭鍾:「朝鮮後期에 있어서의 身分制崩壞에 대한 一小考」, 謄寫版, 1968, p. 33.

이미 1882년 12월에 8道 4都에 綸音을 내려 비록 官紳·吒隷의 家라도 모두 財貨를 阜通하여 富庶가 될 수 있도록 하고 農工商賈의 아들이라도 學校에 入學할 것을 허락하며 출신의 貴賤을 論하지 말고 오직 才學의 如何를 볼 것을 諭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六曹郞官의 文蔭武를 구별하였으나 이제부터 그것에 구애되지 않고 檢擬한다고 하였다.[20)]

그 후, 1894년 6월 28일 軍國機務處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改革案을 議決 公布하였다.[21)]

① 門閥과 班常 等의 階級을 타파하고 貴賤에 불구하고 人材를 選用한다.
② 文武尊卑의 區別을 철폐하고 品階에 따라 相見儀를 규정한다.
③ 罪人 自己外의 緣坐律을 폐지한다.
④ 嫡室과 妾에 모두 無子한 후라야 養子함을 허용한다.
⑤ 寡女의 再嫁는 貴賤을 불문하고 自由에 맡긴다.
⑥ 公私奴婢의 典을 일체 革罷하고 人身의 販賣를 금한다.
⑦ 비록 平民이라도 國家에 利롭고 民人에게 便利할 수 있는 意見이 있다면 軍國機務處에 上書하여 會議에 붙이게 한다.

이러한 身分撤廢와 官吏任用은 1894년 6월 22일의 詔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 즉 국가를 도모하는 道理는 用人이 爲先하므로 四色偏黨의 論을 일체 타파하고 門地에 불구하고 오직 어질고 재주 있으면 이를 薦擧하라고 하였다.[22)]

이와 같이 甲午改革에 나타나 있는 官僚充員의 制度改革은 王朝 末期의 社會變動의 構造的 産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韓末까지 우리나라 官僚任用의 基本制度가 되었다. 비록 甲午年 이후 韓日合倂에 이르기까지 약 15년 동안에 많은 官制改革, 특히 官吏任用의 制度改革이 존재하였지만 이의 발전 형태인 것이다.

官吏任用의 發展形態는 ① 任用制度의 전문화, ② 任用條件으로서 新教育의 强調, ③ 任用方法으로서 시험보다 薦擧의 높은 비중이 나타나고 있

20) 「日省錄」 高宗 19년 12월 28일, 「承政院日記」 高宗 19년 12월 26일.
「高宗時代史」 卷 2, p. 411.
21) 「日省錄」 高宗 31년 6월 28일
「高宗時代史」 卷 3, p. 508.
22) 「官報」 開國 503년 6월 22일.

다. 다시 말하면 관료의 役割分化와 官僚支配層의 權力强化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관료의 專門化는 任用制度의 多樣性과 試驗內容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文官任用令(1906 년 6 월), 武官任命規則(1900 년 3 월), 法官銓考(1906 년 10 월), 郡守任用令(1908 년 6 월), 巡査採用規則(1907 년 12 월) 등과 같이 任用方法이 細分되어 있고 동시에 試驗內容도 專門性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그간의 새로운 敎育制度의 발전과 各種學校의 設立 및 留學 등에서 新學問의 受容者가 급격히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官僚任用時에 자격이 인정된 학교의 졸업을 요구하거나(예, 文官任用令) 近代的인 新學問(예, 法學·經濟學·行政法·政治學 등)의 受驗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試驗과 學力을 구비하지 않아도 官僚充員의 길이 있다. 즉 技術官이나 武官 및 巡檢에의 充員은 가능하고 그뿐만 아니라 各部와 衙門의 見習生은 그곳의 奏任官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관료가 될 수 있었다.

사실상 韓末 官僚 중에 科擧와 各種試驗에 합격한 사람이 전체의 15.3%에 불과하고 근대적 교육을 받은 사람도 44.9%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보면, 韓末 관료 중에 科試 入格者와 學校卒業者가 아닌 者가 전체의 41.8%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韓末 관료의 充員方法은 여러 가지가 있고 充員機會의 사회적 구조는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정상적이고 원칙적인 관료의 充員方法은 試驗과 學力을 重視하는 任用制度이며 이 길은 昇進이 더욱 빠른 것이다. 任用制度가 허술하여 非正常的인 현상을 일으킬 수 있고 갑작스러운 制度改革은 새로운 제도에 의한 官僚充員도 어려울 것이다.

이미 甲午年의 選擧條例의 마지막 규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學校의 廣設에 의한 人材養成이 필요하고 따라서 近代的 學校敎育만이 新官僚를 육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學校敎育의 중요성과 卒業者의 우선 採用은 1898 년 12 월에 公

布 實施된 奏判任官試驗 및 任命規則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즉 議政府 및 各部의 判任官을 任命할 때에는 각기 管下 學徒 및 外國留學生 卒業人 중에서 試驗을 거쳐 主務長官이 專行任命하고(第4條) 武官任命은 武官學徒 卒業人으로서 軍部試驗을 치른 자는 바로 奏任할 수 있으며(第5條) 司法官任命은 法律學 卒業人 중에 法部試驗을 거친 者는 바로 奏任할 수 있다고 한다.[23]

이와 같이 初期에는 教育水準이 높은 사람은 바로 奏任官에 任用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1906 년 이후의 官吏任用은 그러한 特惠를 주지 않고 學力과 資格을 대단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韓末의 대표적인 官僚充員制度인 文官任用令과 法官銓考規程, 그리고 地方銓考規程을 보기로 하자.

(1) 文官任用令은 1906 년 9 월 24 일에 制定 公布된 것과 1908 년 7 월 23일에 改定 公布된 것이 있는데 後者가 公布됨으로써 前者는 폐지되었다. 後者는 前者에 비하여 더욱 엄격한 것으로 任用될 수 있는 資格은 다음과 같다.[24]

① 勅任文官은 다음의 資格의 하나가 있는 者 중에서 任用한다. 단 親任式으로서 叙任하는 官 및 특별히 任用의 규정을 한 者는 이 제한에 不在한다.

ⓐ 勅任文官 또는 宮內勅任官의 職에 있는 者 및 있었던 者.

ⓑ 奏任官 1 等의 文官 또는 宮內官이 되어 上級의 俸給을 받고 在職後 만 1 년 이상으로 勤績이 현저하고 事務에 通練한 者.

② 奏任文官은 별도의 任用規定을 개설한 者 외에는 다음 資格의 하나가 있는 者 중에서 任用한다.

ⓐ 奏任 以上의 文官 또는 宮內官의 職에 있는 者 및 만 1 년 이상 奏任文官 이상의 職에 있었던 者.

ⓑ 判任文官 1 等이 되어 一級俸을 받고 在職 만 1 년으로 勤績이 현저하고 事務에 通練한 者.

ⓒ 外國大學에서 法律 또는 政治經濟의 學科를 수료하여 그 卒業證書를 가지

23) 「官報」 光武 2 년 12 월 12 일.
「官報」 光武 4 년 4 월 3 일.
24) 「官報」 光武 10 년 9 월 28 일.
「官報」 隆熙 2 년 7 월 27 일.
「官報」 隆熙 2 년 10 월 8 일.

고 銓衡委員의 전형을 거친 者.

ⓓ 內外國의 政法專門學校의 卒業證書를 가지고 만 2년 이상 判任文官 또는 判任宮內官의 職에 있고 현재 5級俸 이상의 俸給을 받는 者.

③ 判任文官은 별도의 任用規定을 개설한 者 외에는 다음의 資格의 하나가 있는 者 중에서 任用함.

ⓐ 判任 以上의 文官 또는 宮內官의 職에 있는 者 및 만 1년 이상 判任 以上의 文官 또는 宮內 官職에 있었던 者.

ⓑ 文官普通試驗合格證書 또는 銓考所合格證書를 가진 者 및 宮內判任官試驗을 거친 合格者.

ⓒ 第2條 3項과 同一함.

ⓓ 官立高等學校 또는 學部大臣이 이와 同等 이상으로 인정하는 內外國의 官公私立學校의 卒業證書를 가진 者.

④ 秘書官은 前數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任用할 수 있다.

⑤ 教官, 技術官 및 특별한 學術技藝를 要하는 文官은 별도의 任用規定을 개설한 者 외에는 銓衡委員의 전형을 거쳐서 前條의 규정에 불구하고 任用할 수 있다.

⑥ 만 2년 이상의 雇員으로 同一官廳에 근속한 者는 銓衡委員의 전형을 거쳐서 그 官廳의 判任官으로 任用할 수 있다.

이러한 資格要件은 1906년의 경우에 비하여 특히 外國大學의 卒業者를 높이 인정하고 있으며, 1906년의 경우 判任官의 任用規定에 試取와 特例의 규정이 없지만 1908년의 경우는 그것이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1906년의 경우는 議政府 및 各部判任官은 主務大臣이 專行을 할 수 있다(第1條 3頁).

이러한 것을 보면, 官僚任用에 있어서 教育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決定要因이 되어 있고 동시에 主務大臣은 자기의 권한을 이용하면 관료의 任用에 있어서, 특히 充員機會를 恣意로 행사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비록 文官任用에 필요한 試驗을 치러야 될 者도 普通文官試驗이 定期와 臨期의 兩種이 있어서 特惠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25] 왜냐하면 定期試驗은 매년 2回가 있고 1回에 30인 이내로 選取하며 臨時試驗은 各部部에서 急速을 요할 경우에 1人이라도 試取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試驗은 初考와 會考가 있는데 前者는 受驗人이 中等教育에 상당

25) 「官報」 光武 10년 10월 27일.

한 學力이 있는가를 판별하기 위한 것이고 後者는 受驗人이 學理上 原則 및 現行法令에 通曉하고 동시에 修得한 學力이 實務에 응용될 만한 材器를 考試함이다.

初考의 試驗은 中學教育의 學力이 있음을 考試함인데 그 내용이 作文·公文·論文·筆寫·楷書·速寫·算術·筆算·珠算 등이고, 會考의 試驗內容은 法學·經濟學·現行法令 중 受驗人이 擇一할 수 있기 때문에 初考의 자격이 있는 者는 入官이 용이한 것이다.

또한 受驗人은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各官廳見習生 1개년 이상 근무한 者는 初考가 면제되기 때문에 新制教育의 學歷이나 見習生의 경력을 가진 者는 入官이 용이한 것이다.

(2) 法官銓考規定은 1906년 10월 26일에 제정 공포되었으나 施行細則은 同年 11월 6일에 공포되었다.[26]

이에 의하면, 다음의 資格 중에 하나라도 있는 者는 法官銓考委員의 試驗을 거쳐서 判事 또는 檢事로 任用될 수 있는 것이다.

① 法官養成所에서 만 2個年 이상의 科程을 졸업한 者와 內外國法律學校에서 2個年 이상의 科程을 卒業한 者.

② 各 裁判所 專任判事나 檢事로 1個年 이상 계속 근무한 者.

③ 法部 民事局·刑事局의 局長·課長으로 만 1個年 이상 계속 勤務者와 法官養成所의 教官으로 만 1個年 이상 계속 教授한 者.

④ 法部 民事局 刑事局의 主事나 平理院, 漢城裁判所의 主事로 만 3個年 계속 근무한 者.

⑤ 法部 民事刑事局의 局長·課長이나 각 裁判所 專任判事 檢事로 互相轉任 혹은 陞任한 者는 그 在職이 계속함을 간주하고 主事도 同一함.

⑥ 辯護士로 만 1個年 이상 근속한 者.

이러한 자격의 소유자는 行政法·民法·民事訴訟法·刑法·刑事訴訟法·商法·國際法·經濟學과 같은 科目의 法官試驗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근대적 학문을 體得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法政系의 學校에서 修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裁判所의 主事는 試驗科目이 임시로 정해지긴 하나 다음과 같은

26) 「官報」 光武 10년 11월 14일.

資格의 소유자는 가능한 것이다.

① 法官養成所에서 2個年 미만의 과정을 졸업한 者와 內外國法律學校에서 만 1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者.

② 法部 및 各裁判所의 主事와 各觀察道 및 各港市署의 詞訟主事로 만 1個年 이상 계속 근무한 者.

③ 外國語學 및 文法에 통효한 者.

④ 法部 및 各裁判所의 主事와 各觀察道 및 各港市署의 主事로 互相轉任한 者는 그 在職이 계속함을 간주함.

⑤ 各道·府·郡 書記로 檢獄 및 訴訟事務에 通曉한 者.

⑥ 儒材 鄕人 중의 法學에 通曉한 者.

⑦ 學識이 通達하고 事務에 嫺熟한 者.

이것을 보면, 裁判所의 主事가 되는 것은 文官의 判任官이 되기보다 더욱 容易한 것 같다.

이러한 法官銓考規程으로 말미암아 司法權이 行政權으로부터 점차 分離되어가는 현상이 보이겠지만 최근까지도 行政權과 司法權이 分離되어 있지 못하고, 각 府使·觀察使·牧使·監使·府尹·學務局長·議官·郡守·前主事 등의 地方 官吏를 判事로 임명하고 參書官·主事 등을 檢事로 겸임 발령하였다.[27]

(3) 地方官吏의 任用은 傳統的 支配勢力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1896년 12월 6일에 제정된 地方官吏 擇用規則에 의하면, 官吏充員의 자격으로 府部의 判任官이 36朔을 勤仕하고 才譜가 있거나 曾往文武科榜과 蔭仕와 岐仕의 10년이 踰하면 才參의 表著를 隨하여 擇用하도록 하고[28] 있다.

그러나 1906년 9월의 地方官銓考規程에 의하면 地方判任官은 內部大臣이 專行하여 任用할 수 있다. 地方判任官이 될 수 있는 자격은 ① 曾經奏判任職者, ② 各府部判任職에 現帶한 者, ③ 3년 이상 書記職에 있어서

27) 「官報」 開國 504년 6월 11일.
「官報」 建陽 元年 1월 21일.
「官報」 建陽 元年 8월 28일.
「官報」 光武 2년 7월 5일.
「官報」 光武 5년 4월 2일.

28) 「官報」 建陽 元年 12월 8일.

事務에 通曉하고 文算을 구비한 者, ④ 儒林鄕人 중에 事務에 通曉한 者는 地方官銓考委員의 銓考를 거쳐야 하고, 그리고, ⑤ 特異한 學識技能이 있는 者는 議政府會議를 거쳐 任用될 수 있는 것이다.[29]

地方官의 銓考도 그 試驗內容이 法律經濟, 地方制度 및 會計豫算의 大意와 地理·歷史·外國語 등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新制敎育과 近代的 知識을 체득하지 못한 者는 入仕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지방의 勅任官과 奏任官의 任用에 있어서 일정한 資格所持者 이외에 특이한 學識과 技能이 있는 者는 銓考를 거쳐 仕官할 수 있기 때문에 中央官僚와 마찬가지로 地方官僚도 非競爭的인 제도에 의하여 充員機會가 제공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2) 充員機會

韓末 官僚의 充員制度는 甲午改革 이전의 科擧制와 門蔭이 중심이 된 官僚制度와는 그 성질이 判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取試制度와 學校敎育에 의하여 充員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取試와 新制敎育의 기회가 누구에게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 관료의 充員機會는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調査한 韓末 官僚는 대부분 甲午改革 이후에 入官하였고 그들의 充員要因도 科試보다는 敎育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表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甲午改革 이전에 入官한 관료는 전체의 18.2%이고 그것도 甲申政變 이후이며, 전체의 72.6%가 1895~1906년간에 入官하고 있다. 나머지는 統監府設置 이후에 入官한 관료이다.

이와 같이 絕對多數가 대부분 甲午改革 이후 光武年間에 入官하고 있는 것을 보아 官僚勢力의 급격한 交替現象을 찾아볼 수 있다.

甲午改革 이전에 入官한 사람은 科擧에 入格한 사람이 가장 많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도 많은데 이것은 대부분 中人層의 身分轉換措置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한다.

29) 「官報」 光武 10년 9월 28일.

〈表 2〉 入官 年度別 充員 要因

充員要因 \ 入官年度	1884 年 이전	1885～1894	1895～1906	1907 年 이후	未詳	合計(%)
進士	5	14	58	4	4	85 (2.6)
生員	2		7		1	10 (0.3)
文科	35	53	17	5	2	112 (3.5)
武科	33	65	35	2		135 (4.2)
銓考			9			9 (0.3)
其他試驗	6	10	25	1	3	45 (1.4)
蔭德	2	4	25			31 (1.0)
薦學		4			1	5 (0.2)
外國語學校	3	13	159	13	35	223 (7.0)
師範學校		1	78	1	5	85 (2.6)
法官養成所		1	45	1	2	49 (1.5)
武官學校		1	294		1	296 (9.2)
學堂·義塾	2	1	50	5	7	65 (2.0)
普通學校			18	2	2	22 (0.7)
中學校	1		18	1	1	21 (0.7)
見習·講習所		1	66	7	13	87 (2.7)
其他學校	2	20	183	20	42	267 (8.3)
留學 專門·大學		3	34	6	4	47 (1.5)
留學 士官學校		2	28			30 (0.9)
留學 其他學校	1	16	66	12	8	103 (3.2)
留學 視察·見學	1	5	29		1	36 (1.1)
科試+新制學校	7	23	72	1	2	105 (3.3)
無	59	187	1,014	21	59	1,340 (41.8)
合計 (%)	159 (5.0)	424 (13.2)	2,330 (72.6)	102 (3.2)	193 (6.0)	3,208 (100)

그러나 甲午改革 이후에 入官한 사람은 新制學校卒業生이 가장 많고 無資格者도 많은데 이것은 見習生制度와 推薦에 의하여 入官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 甲午改革 이후에도 科擧及第者가 많이 入官하고 있는 것은 旣得權의 인정이라 볼 수 있고 甲午改革 이전의 入官者도 新制敎育을 받고 있는 것은 새로운 變化에의 適應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科試制度와 敎育制度, 그리고 이의 機會構造를 좀더 자세히 분석하여 보자.

(1) 科試制度와 推薦

王朝時代의 官僚充員은 주로 科擧制度에 의존하여왔음을 지적한 바 있

다. 사실 上級官僚는 文科及第者가 대부분이고 門蔭과 薦擧에 의하여 充員된 官僚는 대부분 下級官僚들이다. 물론 科擧에 入格한 者 중에서 門蔭이 높은 者가 주로 官僚支配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科擧에 합격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科擧의 不正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30] 정상적인 課程에 의한 科擧入格者는 대개 小科初試에서 5대 1, 覆試에서 6대 1의 높은 競爭에서 이겨야 하고 또한 文科初試와 覆試에서도 치열한 競爭에서 승리하여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地方의 官僚候補者들이 대개 거치는 과정이고 특히 서울의 官僚候補者들은 末期에 올수록 그들의 사회적 배경이 높아서 小科를 거치지 않고 文科에 바로 入格한 蔭子弟들이 많은 것이다.

이것은 身分構造와 官僚制度가 紊亂·解弛되어 있고 官僚勢力의 肥大化와 不正한 行態는 官僚充員의 機會構造를 불합리하게 만든다.

이러한 모순된 현상이 甲午改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科擧制를 폐지하고 갑자기 官吏任用制度를 改革한다고 해서 任用制度의 모순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官僚充員을 위한 制度改革 이전에 그것의 현실적 수용이 가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존재하여야 된다. 즉 新敎育을 위한 학교의 설립과 新學問의 受容者를 길러내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先行되지 않는 상황에서 官僚制度, 즉 人事制度의 改革은 오히려 非合理的인 方法에 의하여 관료를 充員시키게 되는 것이다.

甲午改革의 銓考·選擧條例는 官僚候補者의 資格規定이 없고 各部衙의 大臣에게 選取權을 주고 있기 때문에 비록 試取制度가 있지만 旣存秩序의 認定과 관료의 緣故關係에 의하여 관료가 充員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빚는 것이다.

그 후의 官僚充員制度도 新敎育의 履修者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들의 量的 稀少價値는 試取制度가 무의미하게 되고 文官任用令과 各部衙

30) 科擧의 不正은 「國朝榜目」에 의하면 宣祖 丙申年 庭試의 倒科와 顯宗 戊申年 庭試榜目의 全罷榜이 있고, 光海君時의 28回의 文科 중 9回의 不正이 있었다.

의 見習生制度는 각각 試驗과 教育의 제도적 充員을 거의 無視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전자는 教育, 그리고 후자는 勅奏任官의 推薦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

〈表 3〉 官僚의 充員制度

公布年度	任用制度	官職位	推薦者	資格基準	試驗	特例任用	備考
1894	銓考·選擧條例	判任官	大臣		有	有	
1894	文官授任式	判任官	大臣		有	(技術官)	
1898	奏判任官任命規則	判任官		學徒·留學生	有		主務長官이 任用
		武官		武官學徒	有		
		司法官		法律學卒業人	有		
1899	內部見習生選用規則	判任官	勅·奏任官	3년 見習者	有		15人 이하
1899	外部見習生選用規則	判任官	勅·奏任官	3년 見習者	有		10人 이하
1899	量地衙門見習生規則	技手補	首技師	1年 見習者	有		
1900	度支部見習生選用規則	判任官	勅·奏任官	2年 見習者	有		10人 이하
1906	文官任用令	判任官		銓考合格者 高校卒業者 5년 이상의 雇員	無	有	
1906	法官銓考規程	判·檢事		法官養成所 2년 수료 및 教官 法律學校 3년 이상 수료자 法部主事·局·課長	有	有	
		主事		判·檢事 자격자 外國語 해독자 檢獄 서기 儒林·鄉人	有	有	
1906	地方官銓考規程	判任官		3년 이상 書記 경력 鄉人·儒林	無	有	大臣이 전형함
1908	文官任用令(改正)	奏任官		外國大學卒業者 政法經專門學校 졸업자	無		
		判任官		銓考·普試合格者·外國大學·高校 졸업자 만 2년 이상의 雇員	無	有 (秘書官 技術官 教官)	

〈資料〉 韓國官報

文官과 法官의 充員制度는 특히 법률·정치·경제의 學問履修者와 專門·大學卒業者를 우대하고 있다. 文官의 경우는 이들에게 試驗을 면제해

주고 法官인 경우 비록 取試를 하지만 試驗의 科目이 行政法·民法·刑法·商法·民事訴訟法·刑事訴訟法·國際法·經濟學이기 때문에 당시의 國內 專門大學이 설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불가피하게 日本留學生에게 대단히 有利한 것이다. 또한 技術官의 充員도 文官 이상의 優待가 技術敎育의 履修者에게 주어졌고 당시의 國內 學校에서는 그것을 履修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히 외국 유학생에게 대단히 有利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韓末의 유학생은 日本에서 法政經系의 專門大學에 가장 많이 進學하였고 그 다음으로 技術系의 學校에도 많이 入學하였다.

韓末의 관료는 초기에 학교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견습생에 의한 充員이 가장 많았던 것 같고 末期에 올수록 敎育制度에 의하여 充員된 것 같다. 비록 敎育과 取試에 의하여 官吏任用의 자격 규정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特例와 推薦에 의한 任用이 가능한한 非正常的 方法에 의하여 관료가 많이 充員되는 것이다.

이러한 充員制度와 사회적 기반은 表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科試制度에 의한 官僚充員보다 오히려 다른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즉 관료 중에 15.3 %만이 科試의 入格者들이다.

〈表 4〉 **官僚의 科試合格者**

地位	官職＼科試	進士	生員	文科	武科	銓考	其他試驗	蔭德	南行천	無	合計(%)
判任官	主事	21		2	9	9	11	7	1	580	640 (20.0)
	技手	2			2		1			198	203 (6.3)
	參奉	6	2				2	1		59	70 (2.2)
	敎員	7	1	5	1	2	7	3		178	204 (6.4)
	副敎官									48	48 (1.5)
	書記				1		1			52	54 (1.7)
	書記郞	11	1	2	7	7	7	4		213	252 (7.9)
	書記官	7		3				1		32	43 (1.3)
	總巡·巡檢	1			5		2			71	79 (2.5)
	侍御·侍從	2	1	2	8			1		24	38 (1.2)
	博士			1		1				16	18 (0.6)
	製藥師·醫師·기타官	2								23	25 (0.8)

奏任官	參書官	2		1	1		1	1		36	42 (1.3)
	技師	2			3					35	40 (1.2)
	郡守	7	1	6	22		4	4	1	50	95 (3.0)
	贊議·副贊議	4		10	3			3	1	18	39 (1.2)
	丞、令	3	1	5	1		1			36	47 (1.5)
	警務官				1					22	23 (0.7)
	局(課)長	1		1	3		2	3		35	45 (1.4)
	司長·理事	1			2		1	1		13	18 (0.6)
	秘書官 事務官 稅務官	3		1	2			1		20	27 (0.8)
勅任官	大臣·顧問	2		8	5					4	19 (0.6)
	特進官 辨判、卿	2		6	1			1		2	12 (0.4)
	其他			6				1		9	16 (0.5)
奏任、判官	敎官				3					18	21 (0.7)
	飜(通)譯官				1					63	64 (2.0)
	委員	1			1	1	1	1		31	36 (1.1)
奏、勅任官	議官	2		3	11		2	1		29	48 (1.5)
	判(檢)事	4		4	4	1	3	1		43	60 (1.9)
	提調·副提調	1	1	13			1	1		6	23 (0.7)
	觀察使	1		1	3					3	8 (0.2)
其他	醫官			2		2				36	40 (1.2)
	見習									6	6 (0.2)
武官	將官·기타			1	6					6	13 (0.4)
	領官	3			12		1	2		34	52 (1.6)
	尉官	6		3	18		1	1	3	358	390 (12.2)
	正校·餉官				5					26	31 (1.0)
其他		6	3	38	18		10		1	136	212 (6.6)
未詳					2		3			102	107 (3.3)
合計 (%)		110 3.4	11 0.3	122 3.8	163 5.1	21 0.7	64 2.0	39 1.2	7 0.2	2,671 83.3	3,208 100.0

科試를 거친 관료는 甲午改革 이전의 科擧에 합격한 사람이 대부분으로, 특히 그 중에서 武科及第者(5.1 %)와 文科及第者(3.8 %)가 많고 그 다음으로 進士(3.4 %)와 生員(0.3 %)이다.

甲午改革 이후의 시험에 합격한 관료는 전체의 2.7 %에 불과하고 이것도 科擧人格者와 마찬가지로 正規課程의 試取보다 합격이 용이하고 大量으로 합격시키는 科試를 거친 者들이다.

사실 小科及第者는 王朝時代에 있어서 관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上級官僚인 奏·勅任官이 되어 있으며, 武科及第者도 武官보

다 오히려 文官에 많이 進出하였고 이들도 上級官僚가 많이 되어 있다.

또한 門蔭에 의한 充員이 科試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比率(1.4%)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아, 그리고 전체의 83.3%라는 絶對多數가 科試에 入格하지 않고 다른 手段에 의하여 관료가 되었다는 것과 甲午改革 이후의 官僚充員의 수단이 대부분 試取라는 基本原理에 어긋난다는 것은 官吏任用制度와 運營의 모순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韓末 官僚 중에서 進士와 武科及第者가 많은 것은 王朝 末期에 다른 科試에 비하여 大量으로 뽑았고, 또한 1894년 6월 28일에 "文武尊卑의 차별을 폐지하고 다만 品階에 따라 相見儀를 갖는다"[31]는 議案 때문에 이들이 大量으로 文武官에 進出할 수 있었던 것 같다.

武科出身者는 武官이 된 사람이 가장 많으나 郡守와 議官·侍御로 간 사람도 많으며, 文科出身者는 大臣·提調·贊議 등 上級官僚가 된 사람이 매우 많고 기타도 대단히 많은데 이것도 대부분 높은 官職의 소유자이다. 이것은 文武科가 舊制度에 있어서 관료가 되는 유력한 길이었고 文科出身者는 이미 年齡이 많아서 勅任官과 奏任官의 比率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관료로서의 지위가 대부분 안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生員·進士와 기타 試驗의 합격자는 거의 判任官과 奏任官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韓末 官僚 중에 科試를 거치지 않았던 83.3%의 多數官僚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充員이 가능하였는가를 그들의 初職의 분석에서 알아보기로 하자.

表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上級官僚의 初職은 官制改革 이전의 官職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下級官僚는 오히려 그 逆現象이다. 비록 上級官僚일지라도 특히 正三品은 多數가 甲午改革 이후의 官職을 初職으로 하고 있다. 下級官僚(거의가 6品과 9品임)와 無品者(기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임)는 거의 대부분 新制의 官職을 거치고 있다.

이것은 甲午改革 이후 10년~15년의 경과로 벌써 새로운 充員制度에

31) 「官報」 開國 503년 6월 28일.

의한 官僚形成이 正三品 이상의 上級官僚가 생기게 되었고 또한 官僚層의 大多數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表 5〉 官僚의 品階別 初職

品階 / 初職	正一品	從一品	正二品	從二品	正三品	從三品	四品	五品	六品	七品	八品	九品	無	合計(%)
主事			3	34	104		2	3	222		3	136	383	890 (27.7)
技手					10				11			46	59	126 (3.9)
技師					3								5	8 (0.3)
參奉		3	1	9	21		1	1	48			22	73	179 (5.6)
敎員		1	2	2	11				28			40	134	218 (6.8)
敎官					1				3			5	2	11 (0.3)
副敎官				2	4				7			31	46	90 (2.8)
參尉				9	73	1			42			140	87	352 (11.0)
副尉				5	6				2				4	17 (0.5)
正尉				2	1								4	7 (0.2)
正校					2				2			3	14	21 (0.7)
書記				1	3				7			5	43	59 (1.8)
書記郞									5			4	9	18 (0.6)
書記官			1		2				4				2	9 (0.3)
郡守				1	4	1			1				2	9 (0.3)
總巡(檢)				5	9				19			9	48	90 (2.8)
醫官					4					2		7	2	15 (0.5)
飜譯官					7				5			6	44	62 (1.9)
侍御			2	2	15				6			6	7	38 (1.2)
宣傳官			3	5	9	1	3		3				4	28 (0.9)
司勇				3	5				6			1	6	21 (0.7)
注書		1	3	13	5	1	1	3	2				5	34 (1.1)
博士					2				6			13	23	44 (1.4)
委員		1		3	10		1		7			11	21	54 (1.7)
農·工·商				7	4			1	1			5	33	51 (1.6)
五衛					1								10	11 (0.3)
司果				3			2		8				11	24 (0.7)
主簿				2	2				4				2	10 (0.3)
都事				1	8				7			1	3	20 (0.6)
正字		2	1	3	1		1		1				4	13 (0.4)
守門將		1		2	5				1				3	12 (0.4)
監役				2	6							1	7	16 (0.5)
親衛隊				1					1			10	8	20 (0.6)
文學官				1	4				1			1	3	10 (0.3)
假引儀								2	8					10 (0.3)
哨官					5			1	3				1	10 (0.3)

參　　官		1	2	2	1		1				2	4	13 (0.4)
議　　官	1	1	2	8	1			2			1	5	21 (0.7)
判・検事				4							3	6	13 (0.4)
見 習 生			1	1			1	13			63	69	148 (4.6)
其　　他	9	7	34	58	2		3	30	4		36	132	315 (9.8)
無												91	91 (2.8)
合　　計	19	25	157	420	8	11	16	516	6	3	608	1,419	3,208
(%)	0.6	0.8	4.9	13.1	0.2	0.3	0.5	16.1	0.2	0.1	19.0	44.2	100.0

관료의 初職 중에서 가장 많은 官職은 主事인데 이것이 전체의 27.7 %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尉官(11.7 % 중 11 %가 參尉임), 教官(9.9 %), 參奉(5.6 %), 技手・師(4.1 %), 見習生(4.6 %), 摠巡(2.8 %) 등이고 나머지는 各官職에 分散되어 있다.

이러한 初職은 甲午改革時에 官僚(특히 主事와 參奉 등)가 된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各部衙의 判任官 이상의 推薦制度가 큰 기능을 한 것 같다.

教員의 任用은 叙任時 試驗規則에 의하면, "教員은 卒業生으로 任用하되 本部로부터 특별한 臨時試驗을 거친 후에 叙任하고 試驗科目은 漢城師範學校課程에 의한다"[32]고 되어 있어서 이곳의 卒業生은 대단히 쉽게 될 수 있고, 學部의 局長과 參書官이 判任官(博士) 또는 商工學校 教官을 무수히 추천하고 있는 것을 學部令에서 찾아볼 수 있다.[33]

摠巡은 대개 巡査에서 昇進되는데 巡査는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特種의 技能이 있거나 아니면 判任官이 될 수 있는 자격 또는 陸軍下士 이상의 職에 있었으면 될 수 있었고[34] 參尉 또는 副尉의 武官이 警視로 될 수 있었다.[35]

또한 見習生도 各部衙의 勅・奏任官의 推薦에 의하여 그 才藝를 試驗하여 入官할 수 있고,[36] 기타의 職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위원도 地契衙門의

32) 「學部來文」第4回, 「學部令」第7號.
33) 「學部來文」第5回, 「學部通牒」14, 16, 18, 19, 20, 22, 23, 26號.
34) 「官報」隆熙 2년 1월 7일. 內部令 第6號 '巡査採用規則'.
35) 「官報」隆熙 2년 1월 28일.
36) '內部見習生選用規則', 「官報」光武 3년 7월 29일.
'外部見習生選用規則', 「官報」光武 3년 6월 17일.
'量地衙見習生規則', 「官報」光武 3년 4월 24일.

경우는 總裁가 判任官 이하를 專橫하고[37] 量務委員의 경우는 各該監理가, 그리고 學務委員은 府尹이 추천하여 任用한다.[38]

이러한 推薦制度는 地方官吏의 경우에 더욱 심하다.

地方官吏의 任用을 專橫할 수 있는 各府觀察使와 參書官 및 各郡 郡守의 新任時에는 各官廳勅任官이 保薦케 하고(단 觀察使는 大臣만 保薦함)[39] 各府牧判任官 이하의 任免은 判尹과 觀察使, 그리고 牧使와 郡守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즉 漢城府主事는 判尹이 선택하고 各觀察府主事의 一員은 該觀察使가 自辟하고 나머지는 府內의 士民과 吏額에 구애되지 말고 聲望과 才諝가 素著한 사람으로 分半하여 觀察使가 선택하여 內部에 보고한다. 그리고 觀察府 摠巡은 內部에서 警務廳의 摠巡·巡檢으로 파견하고 이들이 地方警務에 미숙할 때는 觀察使가 該府巡檢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各郡鄕長은 該郡區域內 士民과 吏額을 불문하고 聲望과 才諝가 뚜렷한 者를 郡守가 선택하되 郡民大小民人이 會議投票하여 多數에 따르기로 하였다.[40]

이와 같이 中央官僚와 地方官僚를 막론하고 初任時에 推薦의 힘이 결정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制度的 機能은 有品者와 無品者를 막론하고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관료의 初職이 대부분 取試를 필요로 하지 않는 官職을 거치고 있으며 試驗을 치르더라도 까다롭지 않는 官職을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初職 중에서 教官과 武官은 學校卒業으로서 充員될 수 있고 技手·通譯官·議官 및 參奉 등은 特採될 수 있으며 見習生과 書記 등은 試驗이 필요치 않다. 그러나 試驗이 필요한 官職은 主事·參事官·摠巡·委員 등인데 이것도 試驗을 거치지 않고 任官이 가능한 것이다.

1894년 7월 8일 軍國機務處의 議案에 의하면, "各府衙門主事總額 중

37) '地契衙門職員及處務規程', 「官報」 光武 5년 10월 22일.
38) '量務委員任命規則', 「官報」 光武 4년 10월 10일.
'學務委員規程', 「官報」 隆熙 2년 10월 21일.
39) '地方各府觀察使 參書官·各郡郡守保薦內規', 「官報」 建陽 元年 4월 7일.
40) '各府牧判任官以下任免規則例', 「官報」 建陽 元年 8월 10일.

$\frac{1}{3}$은 現役吏胥 중에서 廉勤하고 文算이 있는 者를 택하여 銓考局試驗을 거쳐 陞任토록 할 것"[41]을 규정하고 있어 韓末 官僚의 初職 중 27.7%가 主事인데 主事의 상당수가 이 규정에 의하여 任用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 밖에도 軍國機務處는 甲午改革 이후에 소멸된 官職 또는 雜職 등의 從事者들을 새로운 官制에 의하여 救濟될 수 있는 措置를 강구하고 있다. 즉,

① 文官通政 以上의 無實職人·武官梱帥와 銀臺 以上人·蔭官銀臺佐貳 以上人·蔭武官現職人 등은 更張 후에는 散秩하게 될 것이므로 散班院을 설치하여 議政府에 소속시켜 酌量給俸하여 後日의 取用을 기다리게 하거나 혹은 달리 區處토록 하고 雜職·吏胥·良隷의 作散者도 此例에 의하여 權付하되 在京人員外는 勿許토록 한다.[42]

② 文·蔭·武官으로 마땅히 散班에 속하는 者는 本年 8월 8일 議案에 의하여 議政府·中樞院에 부속시켜 官俸을 酌豫하되 院長으로 하여금 관리케 하고 新額에 들어가지 못한 雜職·吏隷들은 各該移屬衙門에 예속시켜 舊에 의하여 給料한다.[43]

③ 무릇 醫譯雜職 및 帶加人으로 各府衙의 奏·判任官이 된 者는 모두 新授階級에 따라 시행하되 原資에 구애받지 않는다.[44]

이러한 것을 보아, 表4의 官僚의 初職分布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舊官職名과 分類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게 되었다. 이것은 舊官僚를 새로운 官職으로 전환시키고, 심지어 中人階級까지 身分撤廢와 貴賤에 관계없는 人材登用의 원칙에 입각하여 奏任官 또는 判任官으로 전환될 수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대부분인 것 같다.

이와 같이 韓末官僚의 充員方法은 새로운 科試制度의 영향을 많이 받지 못하고 舊官僚(官人과 中人)를 新官僚로 제도적으로 身分을 전환시켰고 甲午改革 이후는 특히 新教育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이다.

(2) 教育制度와 學校

官僚의 充員要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教育이다. 教育을 받은 者가 科

---

41) 「官報」開國 503년 7월 8일.
42) 註 40)과 同一함.
43) 「官報」開國 503년 7월 17일.
44) 註 42)와 同一함.

試에 入格할 수 있고 官吏의 充員機會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甲午改革 이전의 教育은 儒學과 詩文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科擧에 入格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으며, 그 이후의 教育도 갑자기 달바꿈할 수 없기 때문에 韓末官僚는 모두 傳統的 教育을 받았고, 甲午改革 이후의 入官者는 대부분 新教育制度에 의하여 近代的 學問을 受容하지 않을 수 없었다.

傳統的 教育은 兩班官僚의 子弟들이 독점하였고 이들은 대개 8歲가 되면 學堂과 書堂이나 鄕校 및 書院에 들어가고, 15歲가 되면 成均館에 들어가서 공부한다. 그러나 甲午改革 이후는 새로운 近代的 學校가 많이 설립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新制學校는 1886년에 설립된 育英公院과 培材學堂 및 梨花學堂이고,[45] 그 후 1910년 2월에 이르기까지 설립된 基督教系 學校가 796校이며,[46] 韓日合併 直前까지 불과 몇 해 사이에 3천여의 私立學校가 세워지고 1909년 전국 私立學校 請願數가 2,056件이라고 한다.[47]

이것은 韓末의 文明開化를 위한 憂國志士들의 教育運動이며 이것에 의한 民族國家의 自主獨立을 위한 民族運動의 表現이라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韓末의 教育熱과 排日思想은 대단히 강하였다. 이것은 많은 學會와 學校의 설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官公立學校가 1912년에 불과 461個校인 데 반하여 私立學校는 1,515個校이고 書堂이 16,540個이다.[48] 私立學校와 書堂은 韓日合邦 후에 급격히 소멸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전자의 대부분이 基督系 學校이고 후자는 傳統的 教育施設이라서 排日思想을 고취하고 民族主義 教育을 실시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文明開化와 自主獨立을 위한 教育意志는 都市中心의 進步勢力에게는 新教育의 발전과 수용을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고 農村 중심의 保守勢力은 傳統教育의 强化形態로 일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

45) 李光麟 :「韓國開化史研究」一潮閣, 1969, p. 90.
46) 孫仁銖 :「韓國近代教育史」延世大出版部, 1971, p. 25.
47) *ibid.*, p. 36.
48) 拙稿(共著) :「日帝下의 民族生活史」民衆書館, 1971년, p. 561.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多數의 海外留學生이 나타나게 되었고 近代式學校가 설립되었으며 이것은 새로운 官僚充員을 위한 제도적 밑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韓末 官僚를 充員하는 데 주요한 役割을 한 각종 學校의 제도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表 6〉 韓末의 敎育制度

學校名	公布(改正)年度	入學資格	入學年齡	授業年限	敎科目	學生數	設立目的	敎官數	卒業者
漢城師範學校	1895		20～40歲	本科 2年·速成科 6個月			敎官養成	6名	28名(1回) 41名(2回) 44名(3回) 26名(4回)
	1906		15歲以上男子	本科 3年·速成科 1年	교육·국어·일어·역사·지리·수학·물리·화학·음악·농업·상업·공업	40名以下	敎員養成		
外國語學校	1895		15～23歲				敎官養成	9名(支校 5名)	
日語	1891			3年	외국어·국어·한문 수학·역사·지리·체조·수신·물리·화학·생물				349名
漢語	1897			3年					59名
英語	1894			5年					79名
法語	1895			5年					26名
俄語	1896			5年					—
德語	1898			5年					5名
	1906(改正)		12歲以上普通學校卒業者	6年					
法官養成所	1895	入試有 有官者도 可	20歲以上	6個月	법학 통론·민법·형법·현행법령·민사·형사 소송법·소송 연습.		司法官 採用		47名(1回), 38名(2回),
	1905	政·法·經卒業人 入試有	20～35歲	3年			〃	5名	
	1908	日語·高校卒業者	17～35歲		〃+행정법·국제법		成法學士		
武官學校	1896	漢文 의견 진술 가능자	20～30歲	1年			參 尉	4名	
	1898	將校와 勅任官의 추천자	18～27歲			25名 以內	〃	5名	
	1907	〃+관찰사 추천자	18～23歲	3年		50名 以內	〃	14名	
農商工學校	1904	入試有	17～25歲	4年					

醫學校	1899			3年	동물・식물・화학・물리・해부・생리・약물・내과・외과・안과・法醫・婦嬰・종두・위생・진단・체조.		敎員養成	3名	
	1902	中學校卒業人	15～23歲	〃					19名
中學校	1899								
尋常科		入試有		4年	윤리・역사・경제・화학・물리・외국어				
高等科		高等小學校卒業者(外國語學校卒業者)	17～25歲	3年	〃+정치・상업・농업・공업・의학		判任官專門學入學	7名	
小學校	1895			2～3年	수신・습자・독서・산술・지리・역사・외국어				72名(尋常科3回)
普通學校	1906		8～12歲		국어・한문・일어・미술・지리・이과・도화・체조	50名內			30名(尋常科4回)
高等學校	1906	普通學校卒業者	12歲以上	4年	수신・국어・한문・역사・지리・수학・박물・물리・화학・법제・경제・도화・음악・체조	50名內			
部・衙見習生	1899～1910	勅・奏任官 수천자	30歲以下	3～1年		10人또는 15人以下	官吏充員		

資料：學部來文과 韓國官報

表6의 學校는 모두 官學이고 초기에는 官僚育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官學만이 官僚育成에 寄與한 것은 아니고 私學도 官僚育成에 커다란 寄與를 하였다. 왜냐하면 官僚들은 모두 書堂私齋에서 漢文敎育을 받았고 初等敎育 履修者 중에 私立學校 卒業者도 대단히 많았기 때문이다.

漢城師範學校와 外國語學校 및 醫學校는 15세 이상의 男子들을 모집하여 약 3개년간의 교육에서 당시의 敎官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고, 法官養成所와 武官學校, 그리고 各部衙見習生과 中高等學校는 관료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자는 20세～30세 정도의 年齡層을 入學資格으로 하고, 후자는 17세～25세 정도의 年齡層에서 뽑아, 兩者 모두 3개년 정도의 교육을 履修시키고 있다.

사실 당시의 各種 學校의 50명 이하의 學生數와 10명 이하의 敎官들로 하여금 급격한 社會的 需要, 즉 學校의 敎員과 官僚의 充員을 해결하기는 대단히 어려웠다.

生과 非正規教育을받은 見習生制度에 크게 의존한 것

本留學生은 1884年初에 61명을 파견하였고[49] 그 이전에도 韓末 官僚중에 11명을 발견할 수 있으며, 1895년의 제1회 官費留學生 182명과 1897년의 제2회 官費留學生 64명, 그리고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官費留學生보다 더 많을 私費留學生까지 계산한다면 그 實數는 엄청날 것이다.

이러한 유학생은 귀국하여 관료가 된 사람도 많지만(전체의 7.2%) 관료가 되지 않는 사람이 官費留學生의 약 $\frac{3}{4}$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言論·教育·經濟界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見習生 및 講習生制度는 內部·外部·度支部·量地衙門 그리고 관상대와 측량소 등에서 채택 실시하였지만 이들의 定額이 10人~15人이 되고 官僚 중에 有故時에는 그 缺員을 見習生이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通路에 의한 官僚充員도 대단히 많은 것이다.

韓末의 見習制度는 官僚充員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韓末官僚 중에 日本留學生·武官學徒, 그 밖의 官學徒들은 各官廳·工場·軍隊 등에서 見習事務를 거치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商工學校·醫學校·陸軍研成學校·礦務學校·農林學校·成均館經學課·電報學校·郵遞學校·宗人學校 등이 있는데 이들도 대개 3년간의 教育課程이다.

이와 같이 韓末의 教育制度는 일차적으로 官僚養成을 위한 주요한 역할을 하였고, 당시의 교육 기관은 대개 官費制度가 많았으며 近代學問의 傳授 뿐만 아니라, 특히 日語教育을 各種學校마다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물론 學教制度는 初期에 비하여 그 入學資格이 엄격하여지고 入學年齡이 낮아지고 있으나 日語를 더욱 重視하는 官僚의 充員制度와 마찬가지로 學校制度도 日本의 영향력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韓末 관료들의 教育水準은 어느 정도이고 어떠한 학교의 졸업자가 어떠한 官職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49) 宋建鎬:「松齊 徐載弼」太極出版社, 1970, p. 43.

〈表 7〉 官僚의 出身學校

地位	官職 \ 學力	外國語學校	師範學校	法官養成所	武官學校	學堂·義塾	普通學校	中學校	見習所·講習所	其他	留學生 專門·大學	留學生 士官學校	留學生 其他學校	留學生 視察	無	合計(%)
判任官	主事	45	9	16	2	14	5	5	16	77	5		14		431	640 (20.0)
	技手	16	2		2	8	9	7	6	49			15	1	86	203 (6.3)
	參奉	3				1				3			1		62	70 (2.2)
	敎員	30	60	5		5	2	6	6	12	12		12	2	49	204 (6.4)
	副敎官	21	4	2		2		1		1	1				13	48 (1.5)
	書記	9	1						1	6			4		33	54 (1.7)
	書記郞	18	2	8	1	7	1	1	3	15	3		4		189	252 (7.9)
	書記官	6		1		2				2	4		3	4	21	43 (1.3)
	摠巡·巡檢	8	1			3	1	1	6	14	1		3	1	40	79 (2.5)
	侍御(從)	2			1					2				1	32	38 (1.2)
	博士			3					10	1					4	18 (0.6)
	製藥師·樂師·기타官	3	2			1					1			3	15	25 (0.8)
奏任官	參書官	1		1			1				2		1	2	34	42 (1.3)
	技師	2		1					1	4	2		9	2	19	40 (1.2)
	郡守	4				1	1		1				2	1	85	95 (3.0)
	贊議·副贊議	1			1							1	1		35	39 (1.2)
	丞·令	1				1				3					42	47 (1.5)
	警務官				2						4		2	1	14	23 (0.7)
	局(課)長									4	4		1	1	35	45 (1.4)
	司長·理事					1				2	1			1	13	18 (0.6)
	秘書官·事務官·稅務官	2	1							1			2		21	27 (0.8)
勅任官	大臣·顧問							1		1		1			16	19 (0.6)
	推進官·辨判·卿														12	12 (0.4)
	其他	2											1		13	16 (0.5)
奏任·判官	敎官	1			4	1			1	1	1	5	4		3	21 (0.7)
	飜(通)譯官	15				10	1		5	9	3		8	2	11	64 (2.0)
	委員	4		1		1			1	2	1		2	2	22	36 (1.1)
奏·勅任官	議官	1							1	3					43	48 (1.5)
	判(檢)事		1	14							3		3	1	38	60 (1.9)
	提調·副提調							1					1		21	23 (0.7)
	觀察使			1						1					6	8 (0.2)
其他	醫官	2	1						1	14			3		19	40 (1.2)
	見習生	1				1			2	2						6 (0.2)

武官	將官·기다	1			1							1		1	9	13 (0.4)
	領官				7					2		11	3		29	52 (1.6)
	尉官	2		3	293	1			1	3		12	3	12	60	390 (12.2)
	正校·餉官				1									1	29	31 (1.0)
其他		8		2	4	5	2		16	20	2	1	3		149	212 (6.6)
不詳		32				6		2	12	32	3		7	1	12	107 (3.3)
合計		241	91	58	319	71	23	25	90	286	53	32	112	40	1,767	3,208 (100.0)
(%)		7.5	2.8	1.8	9.9	2.2	0.7	0.8	2.8	8.9	1.7	1.0	3.5	1.3	55.1	

韓末 관료 중에 근대적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44.9 %이고 근대적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전통적 교육을 모두 받았던 당시의 지식인들이다.

근대적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당시의 學校設立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고 이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收容하였기 때문에 分散된 分布率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武官學校 卒業生(9.9 %)과 外國語學校 卒業生(7.5 %) 및 留學生(7.5 %)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師範學校(2.8 %)와 法官養成所(1.8 %), 見習·講習生(2.8 %) 및 其他學校(8.9 %) 등이다.

이러한 學校卒業生이 관료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은 表5에서 볼 수 있는 各種學校의 입학생과 졸업생의 輩出傾向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文官 중에서 外國語學校의 졸업생과 유학생이 가장 많고 이것은 이들에 대한 특별한 官吏收用의 配慮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의 留學生은 95 % 이상이 日本留學生이며, 이들은 초기에 慶應義塾에 거의 대부분 진학하고 후에는 專門大學을 비롯한 高等教育機關에 진학하고 있다. 또한 유학생은 초기에 政治·法律·經濟·商科 등 社會科學系의 교육을 많이 받고 있으나 후에 점차 技術系 學校에 진학을 많이 했다.

그리고 外國語學校卒業生도 表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日語學校卒業者가 他國語學校卒業者의 倍 이상을 차지하고 外國語學校 출신 관료 중에서 日語學校 졸업자가 전체의 51.0 %를 차지했다.[50]

外國語學校 졸업생은 教員과 主事가 가장 많고(40 %) 그 다음으로 書記郎(官)과 繙(通)譯官 및 技手이다(27 %). 師範學校 졸업생은 역시 教員이

50) 外國語學校의 出身官僚 중에 日語는 145명이고 英語는 46명, 漢語는 20명, 法語는 16명, 獨語는 10명, 俄語는 3명이다.

가장 많이 되었고(70 %) 法官養成所 출신은 司法官과 主事가 가장 많으며 (50 %) 武官學校 출신은 거의 대부분 尉官이 되어 있다(92 %).

留學生은 敎官과 技術官, 그리고 번(通)역관이 많이 되었고 특히 士官學校 출신은 武官과 敎官이 많이 되었으며 國內學校 졸업자에 비하여 그 지위가 높았던 것이다. 見習所와 講習所 출신자는 學堂과 義塾 출신자와 마찬가지로 主事와 번역관이 많으며, 특히 前者는 博士가 많다.

그 밖의 其他 學校는 商工學校·醫學校·成均館經學課·電報學校·郵遞學校·陸軍研成學校·礦務學校·農林學校·宗人學校 등인데 이러한 學校出身者는 中學校·普通學校의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主事와 技手가 가장 많다(44 %). 그 다음으로 敎官·書記郞·摠巡·번역관·醫官 등인데 이것은 學校의 성질에 따라 그 분야의 관료가 많다.

이와 같이 新制敎育을 받은 사람은 그 학문과 학교의 성질에 따라 官職의 仕官率이 비교적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상당한 수가 專攻과 상관없이 主事·敎官·書記郞·技術官에 入仕하고 있다.

그러면 學校卒業者의 進出傾向을 알기 위하여 가장 文官 官僚를 많이 배출한 外國語學校와 法官養成所의 졸업생에 대한 조치와 그들의 入仕希望傾向을 간단히 보기로 하자.

비교적 新制學校卒業者가 많아졌고 充員制度가 안정된 1907 년과 1909 년에도 學部大臣은 官立外國語學校의 졸업자를 議政府와 內閣書記官長에게 상당한 자리에 隨材 採用토록 요청하고 있다. 즉 1907 년 3 월에는 官立漢城英語學校 제 5 회 졸업생 3 명과, 漢城日語學校 제 9 회 졸업생 35 명, 仁川日語學校 제 6 회 졸업생 13 명, 그리고 漢城法語學校 제 3 회 졸업생 3 명을 送付하였고,[51] 1909 년에는 漢城外國語學校 졸업생 중 官吏志望者 32 명을 成績表와 함께 보내고 있다.[52]

官吏志望者 32 명의 年齡과 그들의 專攻 및 志望傾向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들의 年齡은 21 세가 12 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대부분 20 세

51) 「學部來文」 光武 11 년 4 월 12 일.
52) 「學部來文」 隆熙 3 년 5 월 26 일.

(7명)와 22세(4명), 20세 이하(10명)로 되어 있다. 官吏志望 중에 日語專攻者(8명)는 제1,2의 各部志望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英語專攻者(14명)는 度支部의 제1지망이 가장 많고 제2지망은 內部이다. 그러나 漢語·法語·德語專攻者(10명)는 제1지망의 日本留學이 가장 많고 제2지망은 各部에 散在되어 있으나 특히 法語專攻者는 會社員을 지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卒業者가 관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官吏의 充員이 가장 많고 日本留學을 원하는 非日語專攻者의 욕구를 보아, 이것은 日語學校 졸업생과 日本留學生이 가장 관료가 많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日帝의 정치적 영향력과 문화적 침식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韓末에는 親日的 官僚勢力의 형성을 위한 분위기가 강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法官養成所의 경우는 1895년 제1회 졸업자가 47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졸업과 동시에 관리가 된 사람은 16명으로, 3명의 檢事補와 12명의 主事, 그리고 1명의 郡守가 되었으며[53] 제2회 졸업생(38명)은 졸업과 동시에 17명의 관리가 되었는데, 9명의 主事와 3명의 尉官, 그리고 5명의 기타 관료가 되었다.[54]

이것을 보면, 초기의 學校卒業者는 官僚進出이 대단히 容易하였고 末期에는 入官이 용이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韓末 관료 중에 新制敎育을 받은 사람은 그들이 入官한 지 오래 되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 判任官 및 尉官의 지위에 머물러 있고, 少數가 奏任官이 되어 있다. 그러나 新制學校의 졸업자가 아닌 사람은 전체의 60% 정도가 判任官이고 또한 勅奏任官(大臣·顧問·特進官·辦判·議官·司法官·提調·郡守·局課長·觀察使 등)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이들 중에서 新制學校의 졸업자에 비하여 摠巡·侍御·雜職의 比率이 높은 경우도 있으나 이들은 대개 전통적 교육과 科擧에 의하여 관료가 된 사람이 많기

53) '法官養成所細則, 法部' 1895년 11월 10일.
54) '法官養成所細則, 法部' 1895년 4월 23일.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것 같다.

이와 같이 전통적 교육을 받은 사람은 上級官僚가 많고 新制敎育을 받은 사람은 下級官僚가 多數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이들의 年齡과 入官年限이 짧아서 그러한 것이고 官僚制度가 이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上級官僚 중 日本에 留學 또는 視察한 경험이 있는 者가 많기 때문에 근대적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대단히 유리한 官僚風土가 되어 있는 것이다.

下級官僚 중에 전통적 교육을 받은 사람이 主事와 書記郞에 많이 있으나 이것은 多數가 中人階級의 轉換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료로서의 能力은 미약한 것이다.

이와 같이 관료들의 學歷과의 상관성, 그리고 敎育性質과 지위와의 상관성은 그들의 入官年限과 制度改革이 있은 지 15년 미만이 되기 때문에 初職과 出身 學校와의 상관성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 교육을 받은 사람은 表 8에서와 같이, 그들의 初職은 主事(37.6%)와 參奉(9.0%)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甲午改革 이전의 官職에 대부분 入仕하였다. 主事가 많은 것은 各部衙門總額 중의 $\frac{1}{3}$이 現役吏胥에서 充員되었기 때문인 것 같고, 甲午改革 이전의 文官과 參奉·摠巡·書記·見習生·技手 등의 初職이 많은 것도 前述한 軍國機務處의 議案에 의하여 散班文·蔭·武官 그리고 醫譯·雜職·吏隷 등이 新官職으로 移屬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近代的 敎育을 받은 관료 중에 外國語學校와 師範學校 및 中學校의 졸업자는 그 初職이 敎員(官)인 사람이 가장 많고 法官養成所의 경우는 博士와 主事가, 그리고 武官學校의 경우는 參尉가 가장 많다.

그 밖에도 海外留學生과 外國語學校 및 學堂·義塾의 卒業生 중에 多數가 主事와 通譯官 및 敎員에 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海外留學生과 國內學校 졸업생의 初職分布率이 비슷한 것을 보아 처음의 官僚任用에 있어서 차별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現職의 分布率을 보면 그들의 昇進에 있어서 差別性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8〉 官僚의 學歷別 初職

學力 初職	無	外國語學校	師範學校	法官養成所	武官學校	學堂·義塾	普通學校	中學校	見習·講習生	其他	留學生 專門·大學	留學生 士官學校	留學生 其他學校	留學生 視察	合計(%)
主事	654	52	5	15	5	15	2	1	9	80	17		25	10	890 (27.7)
技手	56	7	3	1		7	3	1	4	31			11	2	126 (3.9)
技師	5									1	1		1		8 (0.3)
參奉	156	6		1	4			1	3	3	1		2	2	179 (5.6)
敎員	41	24	63	5	2	8	2	14	5	27	8		17	2	218 (6.8)
敎官	4		1			1				2	1		2		11 (0.3)
副敎官	21	47	10	2			2		2	1	3			2	90 (2.8)
參尉	32				284				1			25	2	8	352 (11.0)
副尉	12				3							2			17 (0.5)
正尉	4				2						1				7 (0.2)
正校	19				2										21 (0.7)
書記	40	6				1			2	6	2		2		59 (1.8)
書記郞	9	1		1		2				2			3		18 (0.6)
書記官	4	1				1					1		1	1	9 (0.3)
郡守	7						1		1						9 (0.3)
總巡(檢)	60	3	1				2	1	4	13	1		5		90 (2.8)
醫官	10		1						2	1			1		15 (0.5)
繙譯官	7	13			1	9	3		4	8		9	9	4	62 (1.9)
侍御	25	1			6	2				3		1			38 (1.2)
宣傳官	21			1					1	3		2			28 (0.9)
司勇	12	3								2	1		2	1	21 (0.7)
注書	33				1										34 (1.1)
博士	7	1		20					10	6					44 (1.4)
委員	26	5	2	2		3		1	1	7	3		3	1	54 (1.7)
農·工·商	36	3	1			1			3	5			1	1	51 (1.6)
五衛	11														11 (0.3)
司果	21	1								1			1		24 (0.7)
主簿	9			1											10 (0.3)
都事	20														20 (0.6)
正字	12									1					13 (0.4)
守門將	8	1			3										12 (0.4)
監役	15									1					16 (0.5)
親衛隊	20														20 (0.6)
文學官	10														10 (0.3)
假引儀	10														10 (0.3)
哨官	9			1											10 (0.3)
奉官	11	1												1	13 (0.4)

議官	17								1	1	2				21 (0.7)
判·檢事	6			5							1		1		13 (0.4)
見習生	62	18	1	2	1	5	4	4	17	24	1		8	1	148 (4.6)
其他	218	15	3	1	5	10	4	1	8	29	3	2	13	3	315 (9.8)
無	7	32				6		1	12	28	2		2	1	91 (2.8)
合計 (%)	1,767 55.1	241 7.5	91 2.8	58 1.8	319 9.9	71 2.2	23 0.7	25 0.8	90 2.8	286 8.9	53 1.7	32 1.0	112 3.5	40 1.3	3,208 100.0

이와 같이 敎育이 官僚의 充員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科試보다 강력한 要因이 되어 있는 것은 科試制度의 근대적 지식의 필요성에서 起因되기도 하나 그보다 정부가 學校卒業者를 적극적으로 收用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表 5에서 밝힌 바와 같이 學校開設의 목적이 관료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도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1898년 8월에 各學校學徒 및 外國遊學生 중 卒業人을 收用하는 일을 議政府會議를 거친 후 上奏하여 制可되었고[55] 1900년 10월 25일에 外國語學校와 醫學校 및 中學校卒業人을 該學校에 수용하는 官制가 頒布 施行되었으며,[56] 1904년 4월 2일에도 各學校卒業人收用規則이 勅令으로 頒布 施行되었다. 즉 官公私立各種專門學과 中學師範 및 外國留學에 卒業證券이 있는 사람으로 그 자격에 따라 各 官廳에 상당한 職을 次第任用하되 學部의 試驗을 거쳐 認許한 후 需用하도록 되어 있다.[57]

그 밖에도 學部는 1897년에 成均館 經學科 졸업자 중 우수자가 本館年終試驗規則에 의하여 試取高等하였기 때문에 宮內府와 各部에 適照하여 相當職에 調用하도록 졸업생 20명을 外部大臣에 추천하였고,[58] 1899년에 日本留學生을 졸업시에 各部廳에 需用事로 照會하는 일이 있었다.[59]

그리하여 近代的 新制學校의 卒業生의 多數를 관료로 充員하였던 것이다.

3) 身分背景

(1) 父의 科試

55) 「官報」 光武 2년 8월 4일.
56) 「官報」 光武 4년 10월 27일.
57) 「官報」 光武 8년 4월 5일.
58) 「學部案」 第3號, 光武 元年 9월 28일.
59) 「學部案」 第5號, 光武 3년 1월 20일.

甲午改革 이전 관료들의 身分背景은 대단히 높았다. 그들은 科擧에 入格 하여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門蔭에 의존하여야 되기 때문에 身分背景이 낮은 社會階層의 출신은 거의 없는 것이다.

科擧入格者는 父의 社會·經濟的 지위가 튼튼해야 오랜 考試工夫를 할 수 있고 그것은 王朝時代에 있어서는 거의 官僚가 누릴 수 있었으며, 科擧及第者일지라도 前述한 바와 같이 모두 官吏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親族의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되었던 것이다.

蔭子弟도 功臣 및 二品 이상의 孫子·弟, 그리고 實職三品者의 子·孫 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身分背景은 대단히 높은 것이다.
따라서 科擧及第者의 身分背景을 살펴보면, 王朝時代의 관료의 身分背景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甲午改革 이전의 文科及第者는 自己代에서 전체의 48.8%가 小科에 入格하였고, 父親의 小科入格은 38.3%이며 祖父는 10.5%, 그리고 曾祖父는 8.2%가 小科에 합격하였다.[60]

이러한 경향은 世代 간의 文科合格率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族譜와 「萬姓大同譜」, 그리고 「國朝榜目」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韓末 관료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韓末 관료 중에 자기의 身分背景이 밝혀진 것이 전체의 29.4%인데 이들의 身分背景이 대단히 낮다.

관료의 身分背景은 王朝時代의 名門氏族의 족보뿐만 아니라 「萬姓大同譜」에서 찾아보았는데 여기에서 이들의 氏族과 身分背景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약 7할이 된다는 것은 그들의 社會的 背景이 대단히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밝혀진 관료의 父親 중에서 科擧에 及第한 사람은 24.5%에 불과하고 전체 관료 중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7.2%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甲午改革 이전의 文科及第者의 경우보다 훨씬 낮고 밝혀지지 않는 官僚父親의 신분은 대단히 낮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한다면 더욱 낮은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60) 拙稿:「李氏王朝時代의 支配層의 形成과 移動에 관한 硏究」, 中央大 論文集, 第12輯, p. 144.

〈表 9〉 品階別 父의 人格科試

父科試 / 品階	進士	生員	文科	武科	銓考	其他試驗	蔭	無·未詳	合計 (%)
正 一 品									
從 一 品	3	1	1					14	19 (0.6)
正 二 品	2	1	5	1			1	12	25 (0.8)
從 二 品	5		13	7			2	130	157 (4.9)
正 三 品	12	1	8	15			4	380	420 (13.1)
從 三 品				1				7	8 (0.2)
四 品	1		1					9	11 (0.3)
五 品				1				15	16 (0.5)
六 品	15	6	12	8			7	468	516 (16.1)
七 品								6	6 (0.2)
八 品								3	3 (0.1)
九 品	8	3	8	13			5	571	608 (19.0)
無	32	6	17	20			7	1,337	1,419 (44.2)
合 計 (%)	78 2.4	18 0.6	65 2.0	69 2.2			26 0.8	2,952 92.0	3,208 (100.0)

사실 自己父親은 甲午改革 이전의 世代이기 때문에 官僚自身의 合格率(15.3%)보다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上述의 比率程度라는 것은 官僚充員의 사회적 기반이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科擧及第者 중에 大科의 경우는 4.2%이고 나머지는 小科이며, 蔭子弟인 경우는 0.8%이다. 蔭德은 父親의 경우보다 자기들이 많이 받고 있다(1.2%).

表 9에 의하면, 관료 중에 有品者는 父親의 科擧人格率이 無品者에 비하여 높고, 특히 正三品 이상의 有品官僚는 父親의 大科合格率이 無品者에 비하여 약 2배 정도로 높은 것이다.

그러나 父親 중에 科擧에 入格하지 못하였거나 族譜에서 氏族과 身分을 찾지 못한 父親이 90.9%인데 그들의 子息은 44.2%가 無品官僚이고 특히 九品과 六品이 많다.

이와 같이 科擧에 人格하지 못한 父親의 子息이 無品官僚가 많고 비록 有品者일지라도 下品者들이며, 有品官僚의 父親이 無品者에 비하여 科擧에 많이 人格하였다는 것은 父親의 身分背景과 官僚의 지위와의 상관성, 즉

낮은 身分背景의 所有者는 下級官僚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多數의 父親이 科擧에 入格하지 못하였거나 名門族譜에서 찾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學歷이 대단히 낮음을 의미하고 동시에 그들의 身分背景이 대단히 낮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韓末의 傳統的 身分構造가 해체되어가고, 특히 甲午改革으로 인한 身分解體의 制度的 措置가 상당히 많이 표현되고 있음을 實感할 수 있다.

(2) 父의 官職

甲午改革 이전의 관료의 身分背景은 대단히 높았다. 兩班官僚들은 官職이 유일한 生計手段이라 하여도 過言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父 또는 祖父는 대부분 官職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官僚支配層이라 할 수 있는 三議政의 父親은 1品~3品의 官僚가 가장 많아서 전체의 67.3%를 차지하고 4品~6品의 관료가 21.5%이며, 나머지는 극소수의 7品~9品의 관료와 未詳 및 不記가 있으나 이들도 兩班인 것이다.[61)]

비록 身分地位가 三議政에 비하여 낮은 科擧及第者의 身分背景을 보더라도 대단히 높은 편이다.

小科及第者의 父親 중에 有品者가 49.0%이고 生員·進士가 8.3%이며 나머지도 兩班儒生들이다. 有品者는 그 57.5%가 三品 이상이다. 비록 父親의 官階는 品階에 비하여 약간 떨어지나 有官者는 오히려 더욱 많다. 즉 小科及第者의 62.5%가 有官者이고 有官者의 66.8%가 參上官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參下官(18.5%)과 堂上官(14.7%)이다.[62)]

文科及第者의 父親의 身分地位는 小科及第者의 경우에 비하여 더욱 높다. 즉 父親의 有品者는 전체의 52.5%이고 나머지의 11.3%는 生員·進士이며, 父親의 官階는 有官者가 전체의 48.8%인데 그 중에서 三品 이상이 47.3%이고 參上官이 43%이다. 비록 無官者라도 대부분 有品者

61) 拙稿:「李朝 三議政의 社會的 背景」韓國社會學, 第1輯, p.42.
62) 拙稿:「李朝時代 科擧及第者의 社會的 背景」金斗鍾博士 古稀紀念論文集, 1966, p.130.

이다.[63]

이와 같이 科擧及第者의 身分背景이 높다는 것은 入官하기 어려운 관료의 身分背景은 보다 더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韓末 관료의 身分背景, 즉 父親의 官職背景은 甲午改革 이전에 비하면 대단히 낮은 것이 아닌가 한다. 그것은 未詳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조사한 관료 중에서 族譜와 「萬姓大同譜」를 이용하여 찾을 수 있었던 관료의 父親은 전체의 29.4%인데 그 父親 중에서 有官者는 半數인 14.7%이다. 有官者의 지위를 보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다.

〈表 10〉 品階別 父의 官職

父官職 ＼ 品階	正一品	從一品	正二品	從二品	正三品	從三品	四品	五品	六品	七品	八品	九品	無	合 計(%)
判書			3	7	5		1		1			2	6	25 (0.8)
參判		1		2	3				3			4	1	14 (0.4)
承旨		1	1	2	1				3			1	9	18 (0.6)
牧使					1				5				2	8 (0.3)
參奉			2	2	7			1	6			5	12	35 (1.1)
府使				2	3	1		1	3			2	11	23 (0.7)
縣監		1	1						3			3	8	16 (0.5)
郡守			1	4	3				12			9	17	46 (1.4)
都事				1	2				1			4	5	13 (0.4)
主事		1							5			8	12	26 (0.8)
議官					3				2			1	7	13 (0.4)
監役				2	4				3			3	4	16 (0.5)
丞・令					1				3			3	2	9 (0.3)
(副)司果		1		2	2				1			3	8	17 (0.5)
其他		4	6	9	29		1	1	33			13	95	191 (6.0)
無		4	2	34	75	2	2	1	82			81	190	473 (14.7)
未詳		6	9	90	281	5	7	12	350	6	3	466	1,030	2,265 (70.6)
合計 (%)		19 0.6	25 0.8	157 4.9	420 13.1	8 0.2	11 0.3	16 0.5	516 16.1	6 0.2	3 0.1	608 19.0	1,419 44.2	3,208 (100.0)

官僚의 父親이 無官者인 관료는 有官者에 비하여 下級官僚가 약간 많으나 그렇게 심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有官의 父親은 그들의 官職이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비교적

63) *Ibid.*, p. 132.

높은 관직의 소유자들이다. 이것은 名門族譜에서 발견된 父親이라서 그런지 모른다.

有官者 중에서 비교적 많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는 官職이 郡守·參奉·判書·主事·府使·承旨·縣監·監役·司果·參判·都事·牧使 등이다.

父親의 官職은 舊官制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것은 現官僚들보다 1世代 전에 사회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즉 대개 10~15년 전이 甲午改革時이기 때문이다.

表 10에서 자기의 職位가 높은 경우는 判書·參判·郡守·參奉과 같이 高級官僚 또는 蔭官의 子弟가 많은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無品有官者 중에서 자기의 父親이 발견되지 못한 것이 전체 관료의 32.1%인데 이들의 身分背景은 대단히 낮은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萬姓大同譜」에서 발견될 수 없다는 것은 名門氏族이 아니라는 뜻이고, 동시에 表 10에서 未詳의 父親身分이 上級官僚보다 下級官僚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이와 같이 韓末 官僚의 身分背景이 매우 높은 者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 낮다는 것은 그들의 가장 주요한 充員要因이 교육에 있고 新教育의 履修者는 초기에 그들의 身分背景이 낮았기 때문인 것 같다.

이것은 甲午改革의 身分撤廢에 대한 제도적 조치에 起因되겠지만 學校入學의 자격 조건에 身分的 規制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韓末의 가장 많은 관료를 배출시킨 外國語學校에는 처음에 譯官집 子弟들이 많이 들어왔고 뒤에 兩班이나 常民 출신도 入學하였다.[64]

이러한 현상은 당시의 兩班官僚들의 新制教育에 대한 멸시와 편견 때문이기도 하다. 즉 그들의 傳統性과 保守性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교육 제도가 官僚充員에 중요한 要因이 되고, 학교가 확충됨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教育機會가 많이 제공됨으로써 관료가 될 수 있는 社會階層은 많아지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점차 教育과 관료의 充員機會는 身分(官職)보다 오히려 경제적 지위가 강력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

64) 李光麟 : 前揭書, p. 129.

이것은 韓日合邦 후의 官立學校入學者의 身分背景과 그들의 졸업 후 進出狀況, 그리고 父親의 職業背景에서도 여실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즉 入學者는 兩班(45.2 %)과 常民(54.8 %) 출신이 거의 비슷하고, 農民(62.7 %)과 商人(22.8 %) 출신이 많으며 卒業者는 다수의 敎員과 官公吏가 되고 있다.[65]

그뿐만 아니라 관료가 많이 된 留學生의 경우에 身分背景이 매우 높은 兩班官僚의 子弟들이 있는 반면에 多數는 중간적 신분의 子弟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

1880 년에 淸國에 파견된 留學生은 學徒가 20 명이고 工匠이 18 명인데, 전자는 兩班階級 출신이고 후자는 中人階級 출신이며, 1884 년 초의 日本留學生은 鄕班·中人·常民 출신 이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政府要人의 子弟는 거의 없었다.[66] 韓末留學生 중에 관료가 된 사람의 父親을 名門族譜인 萬姓大同譜에서 찾아본 결과 10 %도 되지 못하였고 그들의 身分(官職)도 대단히 낮았던 것이다.

그러나 韓末의 유학생 중에는 그들의 身分背景이 높은 경우도 대단히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1904 년 7 월에 學部大臣이 各部大臣에게 "勅任官 이상 官僚의 親子孫婿弟姪本宗 4 寸 이내에서, 16 세에서 25 세 이하의 者를 日本에 派遣 留學시키도록 추천하라"고 하고 同年 8 월에 "各部院廳의 奏任官의 親子孫婿弟姪本宗 4 寸 이내의 16 세~25 세 이하의 者도 추천하라"는 照會文을 大臣에게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67]

이와 같이 모든 勅任官과 奏任官의 親族들에게 유학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韓末 유학생의 身分背景이 높아질 것이고 이것은 上級官僚勢力의 日本化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때에 日本留學 간 사람이 植民地時代 官僚의 中心勢力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韓末官僚 중에 身分背景이 높은 사람은 이러한 기회를 가진

65) 拙稿:「日帝下의 民族生活史」pp. 564-7.
66) 權錫奉:「領選使行에 대한 一考察」歷史學報, 第 17, 18 輯, 1962. p. 296.
田保橋 潔編:「近代日鮮關係の研究」上, 朝鮮總督府中樞院, p. 918.
67)「學部案」8,「照會」第 9 號, 第 14 號, 1902~4.

者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韓末의 學生과 관료의 身分背景은 甲午改革 이전의 官僚勢力에 비하여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전통적 교육을 받은 관료들이기 때문에 사회의 中間階層이 가장 많으리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官僚 父親의 身分地位가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子弟들의 官吏任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身分이 밝혀진 父親과 未詳의 경우에 子息의 入官傾向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이 父親의 官職과 子息의 初職과의 相關分析에서 드러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父親이 밝혀진 관료의 初職이 主事인 경우 전체의 30.9%가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26.5%가 된다. 또한 父親이 無官者인 경우는 子息의 初職은 參尉와 敎員 및 기타가 많고, 未詳의 父親도 參尉와 敎員 및 見習生이 많으며 그 밖에도 技手·見習生·總巡·農工商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身分出身이 높은 者는 學校를 졸업하고 官職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으며, 그렇지 못한 者는 入官이 용이한 길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氏族背景

韓國社會는 오래토록 血緣性이 社會統合의 강력한 要因이 되었고, 家族主義가 社會의 基本原理로 되어왔다. 이것은 同族의 祖上崇拜, 相互扶助, 그리고 家門의 名譽라는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심지어 經濟的 機能으로 인하여 同族, 나아가 氏族이 하나의 共同體的 性格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王朝時代에 있어서는 身分內婚制가 성립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특히 兩班官僚社會에서 주로 볼 수 있는데 같은 身分階層끼리 通婚圈을 형성하면서 同一한 氏族뿐만 아니라 異族 간의 連帶에서 權力共同體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傳統社會에서는 관료의 氏族背景을 분석함으로써 당시의 名門, 즉 權力共同體의 형성의 주요한 氏族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甲午改革 이전의 名門氏族은 시대에 따라 優劣의 차이가 있으나, 대개

① 全州 李氏, ② 安東 金氏, ③ 豊壤 趙氏, ④ 南陽 洪氏, ⑤ 坡平 尹氏, ⑥ 淸州 韓氏, ⑦ 驪興 閔氏, ⑧ 潘南 朴氏, ⑨ 安東 權氏, ⑩ 文化 柳氏, ⑪ 東萊 鄭氏

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三議政과 小科 및 大科及第者의 조사에서 밝혀진 것인데,[68] 이들이 관료의 中心勢力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甲午改革은 과거의 傳統的 身分體系와 官僚秩序를 제도적으로 파괴하여 새로운 것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官僚充員의 氏族背景에 있어서도 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韓末 官僚의 氏族構成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甲午改革 이전의 名門氏族이 아직 그 構成比率이 많으나 甲午改革 이전에 비하여 대단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高宗初期만 하더라도 文科及第者 중에서 9大名門氏族의 構成比率이 31.3%였는데, 韓末의 경우는 名門氏族自體의 優劣이 轉倒되어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심지어 9大名門氏族은 전체 관료의 15%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表 11을 보면, 전통적인 名門氏族인 全州 李氏·南陽 洪氏·淸州 韓氏·安東 金氏 등이 科試入格者 중에 많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으나, 오히려 金海 金氏·慶州 金氏·密陽 朴氏·平山 申氏·海州 吳氏·慶州 李氏 등의 새로운 名門氏族의 登場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傳統的 名門氏族의 範疇에 들어가던 坡平 尹氏·靑松 沈氏·東萊 鄭氏·潘南 朴氏·驪興 閔氏·安東 權氏 등도 科試入格率이 낮아졌고 오히려 延安 李氏·光山 金氏·順興 安氏·大邱 徐氏·水原 白氏·仁同 張氏 등의 入格率이 높아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氏族 이외에도 傳統社會의 관료를 제대로 充員시키지 못한 新興氏族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同一한 本貫의 氏族內

68) 拙稿: 前揭論文을 참조.

에서도 다른 派, 다른 門中에서 관료들을 散見할 수 있기 때문에 甲午改革 이전에 볼 수 있었던 강력한 血緣性의 의미는 찾아볼 수 없지만 오랜 전통성으로 인하여 비록 官僚勢力의 交替 내지 血緣背景의 異質性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官僚勢力의 交替現象은 甲午改革 이전에도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朝鮮王朝 全期의 科學及第者의 조사에서도 볼 수 있었다.

〈表 11〉 氏族別 入格科試

科試 氏族	未詳·無	進士	生員	文科	武科	銓考	其他試驗	蔭	南行·추천	合計(%)
全州 李	156	15	2	9	19	1	5	5	1	213 (6.6)
金海 金	97	1		1	3		3			105 (3.3)
慶州 金	68		1	2	3	1	3	2		80 (2.5)
安東 金	48	1		2	3	4	2	1		61 (1.9)
海州 吳	54	3			7		1			65 (2.0)
平山 申	56	4	1	3	5		1			70 (2.2)
密陽 朴	66			4	6		4			80 (2.5)
慶州 李	46	1		4	1	2	1	2		57 (1.8)
淸州 韓	36	4	2	6	4		2	1		55 (1.7)
南陽 洪	48	5		2	1	1	3	1		61 (1.9)
舊名門氏族	141	16	1	13	10	3	5	1		190 (5.9)
新興氏族	155	10		13	20	1	4	3	1	207 (6.4)
其他 李	248	9	1	13	24	2	7	8	1	313 (9.8)
其他 金	247	14		12	5		6	3	1	288 (9.0)
其他 朴	83			3	1		1	1		89 (2.8)
崔	107	2		1	3	1	3			117 (3.6)
諸 姓	1,015	25	3	34	48	5	13	11	3	1,157 (36.1)
合計 (%)	2,671 83.3	110 3.4	11 0.3	122 3.8	163 5.1	21 0.7	64 2.0	39 1.2	7 0.2	3,208 (100.0)

〈備考〉 1) 舊名門氏族은 坡平尹氏, 淸松沈氏, 東萊鄭氏, 潘南朴氏, 驪興閔氏, 安東權氏임.
2) 新興氏族은 延安李氏, 光山金氏, 順興安氏, 大邱徐氏, 水原白氏, 仁同張氏임.

傳統的 名門氏族은 科試에서 武文科와 進士試에 많이 入格했고 新興氏族은 科試를 거치지 않은 관료가 많으며 科試入格인 경우 武科가 많다.

韓末 관료의 充員制度가 旣存勢力의 制度的 成長을 부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充員機會는 旣存勢力에 有利하게 되어 있고 敎育機會도 그들에게 有利하였다.

〈表 12〉 **氏族別 學歷**

學力 / 氏族	無	外國語學校	師範學校	法官養成所	武官學校	學堂·義塾	普通學校	中學校	講習所·見習所	其他	大學·專門學校	士官學校	其他學校	視察·見學	合計(%)
全州 李	129	12	5	5	20	6	2	3	1	19	2	2	4	3	213 (6.6)
金海 金	62	14	2	2	2	3	1	2		12			4	1	105 (3.3)
慶州 金	40	4	2	2	4	1	1	1	4	13	1	2	4	1	80 (2.5)
安東 金	42	4	4		4	1			1	3			1	1	61 (1.9)
海州 吳	35	4	3		16	1	1			4				1	65 (2.0)
平山 申	48	4	2		8	1				4	1		2		70 (2.2)
密陽 朴	51	4		1	3	2	1		2	9	2		4	1	80 (2.5)
慶州 李	36	3	1		5	3			2	2	2	1	2		57 (1.8)
淸州 韓	35	2	2		3	1	1	1	1	6	2		1		55 (1.7)
南陽 洪	34	5		3	3	1			1	8	3		2	1	61 (1.9)
坡平尹, 靑松沈, 東萊鄭, 潘南朴, 驪興閔, 安東權	120	6	5	7	15	4		1	5	7	2	2	10	6	190 (5.9)
延安李, 光山金, 順興安, 大邱徐, 水原白, 仁同張	134	11	7	3	21	3			5	15	3	1	3	1	207 (6.4)
其他 李	161	20	13	9	50	3	1	1	11	30	1	3	7	3	313 (9.8)
其他 金	171	31	6	3	20	2	3	2	4	20	3	8	13	2	288 (9.0)
其他 朴	46	6	4		11	2	1	1	3	9	1	2	1	1	89 (2.8)
崔	71	11	4	3	7	2				12	2		5		117 (3.6)
諸姓	552	100	31	20	127	35	11	13	50	113	27	11	49	18	1,157 (36.1)
合計	1,767	241	91	58	319	71	23	25	90	286	53	32	112	40	3,208
(%)	55.1	.75	2.8	1.8	9.9	2.2	0.7	0.8	2.8	8.9	1.7	1.0	3.5	1.3	100.0

그러나 韓末 官僚 중에 근대적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55.1 %가 되는데 傳統的 支配氏族은 근대적 교육을 받은 관료가 이에 未達하고 新興氏族 및 그 밖의 諸姓氏는 오히려 이것을 능가하고 있다.

이것은 前者가 社會變化, 특히 敎育制度의 변화에 適應力이 약하고 後者가 오히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前者는 韓末의 社會分化, 즉 역할과 권력의 분화로 인한 他分野에의 進出을 의미하기도 하고 後者는

대부분 社會經濟的 地位의 中間階層的 性格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 權力志向의 進就的 性格을 의미하는 것이다.

表 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武官教育을 많이 받는 氏族은 全州 李氏·海州 吳氏·平山 申氏·慶州 李氏, 그리고 新興氏族이 많고 商工學校·醫學校·電報·郵遞學校와 같은 기타 학교의 卒業者는 慶州 金氏·金海 金氏·諸姓氏 그리고 新興氏族이 많다. 특히 전통적인 名門氏族은 法官養成所의 출신이 많으나 新興氏族과 諸姓氏는 外國語 중에서 日語學校의 출신이 많다.

이와 같이 韓末 官僚의 氏族背景은 甲午改革 이전의 특성과는 많이 다르다. 즉 전통적 名門氏族과 家門의 지위는 약화되어가고 새로운 다양한 氏族에 의하여 代替되어가는 현상과 氏族的 意味가 약화되어가는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3. 官僚의 社會的 資質

1) 年齡構成

韓末 관료의 연령은 甲午改革 이전에 비하여 대단히 낮은 것 같다. 그것은 官僚充員의 制度改革으로 인하여 오랜 세월이 걸리는 科擧에 入格하지 않아도 入官이 가능하였고, 특히 修業年限이 대개 3년 정도인 新制學校를 卒業하면 入官이 가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科擧及第者의 入格年齡은 小科인 경우 最頻值가 20~25세이나 그 후에도 많이 入格하고 大科인 경우는 最頻值가 30~35세이다.[69]

이것을 보면, 관료의 年齡이 30代 이후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韓末의 관료는 科擧入格者가 극소수이고 過半數가 學校卒業者이며, 상당한 數가 이것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年齡은 다음과 같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69) 拙稿:「李氏王朝時代의 支配層의 形成과 移動에 관한 研究」, 中央大論文集 第11輯, p. 190.

〈表 13〉 官僚의 年齡

地位	官職 ＼ 年齡	19歲以下	20~24歲	25~29歲	30~34歲	35~39歲	40~44歲	45~49歲	50~54歲	55~59歲	60歲以上	未詳	合計(%)
判任官	主事	9	81	112	105	75	51	46	36	17	10	98	640 (20.0)
	技手	17	77	43	20	10	3	6	2	4	2	19	203 (6.3)
	參奉	1	9	10	7	9	9	8	5	7	5		70 (2.2)
	敎員	3	33	36	34	21	18	14	6	5	5	29	204 (6.4)
	副敎官	3	13	11	3	3	3	1	1		1	9	48 (1.5)
	書記	3	11	8	7	8	4	4	1	2	2	4	54 (1.7)
	書記郞	7	31	40	48	43	23	23	16	9	8	4	252 (7.9)
	書記官	1	1	2	14	6	8	4	1	1	3	2	43 (1.3)
	總巡·巡檢	2	19	19	14	10	5	3	3			4	79 (2.5)
	侍御·(從)	1	7	7	2	7	5	5	3	1			38 (1.2)
	博士	2	3	6	4	1	1		1				18 (0.6)
	製藥師·樂師·其他官		2		4	10	1	3	1	2	1	1	25 (0.8)
奏任官	參書官			2	7	5	8	6	4	3		7	42 (1.3)
	技師		2	7	10	6	5	2		2	3	3	40 (1.2)
	郡守			5	9	16	11	20	15	5	11	3	95 (3.0)
	賛議·副賛議				1		7	6	7	8	5	5	39 (1.2)
	丞·令	1	8	5	6	3	4	6	4	3	4	3	47 (1.5)
	警務官		2	5	4	6	3	1		1	1		23 (0.7)
	局(課)長			4	4	10	4	6	6	5		6	45 (1.4)
	司長·理事		1	1	2	5	1	1	1	1	1	4	18 (0.6)
	秘書官·事務官·稅務官			2	4	4	4	5	5	1	2		27 (0.8)
勅任官	大臣·顧問					1	2	5	5	3	2	1	19 (0.6)
	特進官·辦判·卿			1			1	2	3	2	3		12 (0.4)
	其他		2			3	2	3	3		2	1	16 (0.5)
奏任·判官	敎官		1	7	7	2	1		1			2	21 (0.7)
	飜(通)譯官	1	24	22	7	2	1					7	64 (2.0)
	委員	1	5	8	3	6	3	4	4	1	1		36 (1.1)
奏·勅任官	議官		2	4	8	5	4	6	7	2	10		48 (1.5)
	判(檢)事			7	9	7	12	8	7	2		8	60 (1.9)
	提調·副提調			1	1	6	4	1	1	1	8		23 (0.7)
	觀察使				1			4	1	1	1		8 (0.2)
其他	醫官		4	4	7	7	7	1	2	1	3	4	40 (1.2)
	見習生		4	2									6 (0.2)
武官	將官·기타					3	3	5		2			13 (0.4)
	領官		2	11	12	6	11	4	2			4	52 (1.6)
	尉官	11	129	134	51	26	13	4	2		1	19	390 (12.2)
	正校·餉官			10	8	8	2		1			2	31 (1.0)

其他	5	24	31	20	21	27	23	21	14	20	6	212 (6.6)
未詳	14	46	28	8	4	2	1	3			1	107 (3.3)
合計 (%)	82 2.6	543 16.9	595 18.5	451 14.1	365 11.4	273 8.5	241 7.5	181 5.6	106 3.3	115 3.6	256 8.0	3,208 (100.0)

表 13에 의하면, 관료의 年齡은 20代가 전체 관료의 35.4%를 차지하고 30代가 25.5%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40代 이후에 분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전체 관료의 60%가 20代와 30代의 年齡層이라는 것은 그들이 대개 判任官이고 이것은 甲午改革 이후에 充員되었기 때문이다. 30代 이후의 年齡層에서 多數의 奏任官이 나타나 있는 것도 그러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사실, 官僚의 初職入官年齡의 最頻値가 20～25세이기 때문에 30代 이후의 관료는 거의 모두가 甲午改革 이후에 充員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舊制度에 의하여 充員된 관료는 40%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또한 判任官이 전체 관료의 51.0%를 차지하고 이들 중에 상당한 수가 40代 이상이기 때문에, 즉 判任官은 대부분 甲午改革 이후에 充員된 관료들이기 때문에, 또한 新制度에 의하여 充員된 30代 이하의 관료가 奏任官 중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甲午改革 이전에 관료가 된 사람은 전체 관료의 20%가 되지 못하는 것 같다.

年齡이 낮은 20代의 관료는 判任官 중에서 教員과 技手 그리고 主事와 飜譯官 및 摠巡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고 武官 중에서는 대부분의 尉官이 이에 속한다. 30代의 관료는 判任官 중에서 主事와 書記郎(官), 그리고 奏任官 중에서 技師와 局課長 그 밖의 醫官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新制教育의 영향이다. 40代의 관료는 年齡構成比率에 있어서 判任官보다 奏任官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郡守와 判·檢事 등이다. 50代 이상의 관료는 주로 勅·奏任官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勅任官은 40歲 이하가 거의 없고 武官은 50세 이상이 거의 없다.

이와 같이 年齡과 官職과의 상관성이 높으나 특히 判任官의 主事·參奉·侍御, 그리고 奏任官의 參書官·丞·令·郡守·委員·議官·法官, 그

밖의 醫官·領官, 其他官은 커다란 상관성이 없고 各年齡層에 분포되어 있는 편이다.

이것은 舊制度에 의한 充員이 가능한 官職이기 때문인 것 같다. 특히 主事와 書記, 그리고 參書官이 각각 20代와 30代가 많으면서 各年齡層에 분산되어 있는 것은 舊官僚, 특히 吏胥의 身分轉換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것 같다.

관료의 品階와 年齡의 相關分析에서 有品者 중에 三品 以上은 연령이 높고 下品者와 未詳은 낮다. 즉 三品 以上은 거의 대부분 30代 이상이고 (80.4%), 이것은 品階가 높을수록 年齡이 높으나 三品의 경우는 30代가 가장 많다(29.0%). 그리고 六品者인 경우는 三品의 경우와 비슷한 分布率을 보여주고 있지만 九品者인 경우는 20代에 거의 集中되어 있다(55.2%). 無品 또는 未詳인 경우는 역시 20代가 가장 많고(33.2%) 나머지는 各年齡層에 비교적 分散되어 있다.

이것은 年齡과 官職의 相關分析에서와 같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官僚의 入官年齡과 그들의 初職과의 相關分析에서 분명히 알 수 있고 또한 그들의 充員要因의 一面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表 14〉 **初職別 入官年齡**

年齡 / 初職	14歲以下	15~19歲	20~24歲	25~29歲	30~34歲	35~39歲	40歲以上	未詳	合計(%)
主事	7	68	160	188	118	92	155	102	890 (27.7)
技手		17	42	17	17	5	8	20	126 (3.9)
技師		1	2	1		1	1	2	8 (0.2)
參奉	4	27	37	25	18	21	39	8	179 (5.6)
教員		20	75	41	34	10	18	20	218 (6.8)
教官			2	4	2	1	1	1	11 (0.3)
副教官		19	37	8	10	1	3	12	90 (2.8)
參尉		60	176	80	18	5		13	352 (11.0)
副尉			2	6	7			2	17 (0.5)
正尉				1	2	1	1	2	7 (0.2)
正校			1	8	7	3	2		21 (0.7)
書記	2	12	12	11	5	5	4	8	59 (1.8)
書記郎		1	6	3	3	2	3		18 (0.6)

書記官				1	5	2	1		9 (0.3)
郡守				2	2	4	1		9 (0.3)
摠巡(檢)		5	25	30	14	4	5	7	90 (2.8)
醫官			2	2	4	2	4	1	15 (0.5)
飜譯官		14	25	20	4		1	8	62 (1.9)
侍御	2	10	7	7	6	1	3	2	38 (1.2)
宣傳官	1	7	7	4	4	2	1	2	28 (0.9)
司勇	1	8	3	2	6		1		21 (0.7)
注書	2	8	4	7	5	3	4	1	34 (1.1)
博士	2	3	13	11	4	2	8	1	44 (1.4)
委員		2	14	10	10	9	5	4	54 (1.7)
農・工・商	6	19	10	3	3	3	5	2	51 (1.6)
五衛將		1	6	1	1		1	1	11 (0.3)
司果	1	3	4	3	5	4	3	1	24 (0.7)
主簿		3	3	3	1				10 (0.3)
都事		2		7	6	3	2		20 (0.6)
正字		1	4	3	2	2	1		13 (0.4)
守門將		3	4	2	1		1	1	12 (0.4)
監役		1	4	3	1	1	4	2	16 (0.5)
親衛隊		3	8	4	2	1		2	20 (0.6)
文學				1		2		7	10 (0.3)
假引儀	1			3	2	3	1		10 (0.3)
哨官		1		6	2			1	10 (0.3)
奉官	1	2	1	2	1	4	2		13 (0.4)
議官			2	4	3	2	7	3	21 (0.7)
判・檢事			2	3	3	1	1	3	13 (0.4)
見習生	3	37	51	37	8	1	5	6	148 (4.6)
其他	8	42	59	64	40	26	46	30	315 (9.8)
無			1	4	3			83	91 (2.8)
合計 (%)	41 1.3	400 12.5	811 25.3	632 19.7	389 12.1	229 7.1	348 10.8	358 11.2	3,208 (100.0)

表 1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入官年齡이 20代인 官僚는 主事・技手・教員・副教官・參尉・飜譯官・見習生 등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表 6의 入學年齡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개 25세 전에 入學하여 3년~5년의 新制學校를 졸업한 후에 入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入官年齡이 各年齡層에 분산되어 있는 參奉・書記・摠巡・侍御・宣傳官・注書・博士・委員・司果・正字・監役・奉官 등은 新制學校卒業者와 상관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들은 舊制 官職이기 때문에 甲午改革 당시에 散班文・蔭・武官이 中樞院에 附屬되었거나 醫譯・雜職・吏隷가 新額에 들

어간 경우인 것이 아닌가 한다.[70)]

이것은 表 14에서 볼 수 있는 主事의 경우에 入官年齡이 낮은 것은 新制學校의 卒業者이고 入官年齡이 높은 것은 甲午改革 이전의 吏胥가 主事定額의 $\frac{1}{3}$을 充員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한다.

上級官僚는 아직도 甲午改革 이전의 전통적 관료가 지배하고 있지만 量的 多數를 차지하고 있는 下級官僚는 新制學校 출신의 관료가 多數를 차지하고 있다. 下級官僚는 年齡이 낮기 때문에 전통적 관료에 비하여 대단히 장래성이 있고 진취적인 능력의 소유자라 할 수 있다.

2) 教育水準

韓末 관료 중에 新制教育을 받은 사람이 44.9%이고 이것은 判任官의 官職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특히 外國留學生의 경우는 文官과 武官의 구별이 없이, 그리고 判·奏·勅任官의 차별이 없이 분포되어 있다.

비록 新制教育을 받지 않은 관료들이라도 私塾과 書院 및 鄕校 등의 전통적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다.

관료들의 教育水準을 그들의 品階와 관련시켜 분석하였더니 다음과 같다.

表 1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上級官僚는 전통적 교육을 많이 받았고 下級官僚는 有品者인 경우 新制教育을 받았지만 無品者인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從二品 이상의 관료는 80% 이상이 新制教育을 받지 않았고 正三品은 63.8%, 六品은 68.0%, 그리고 九品은 39.7%, 그리고 無品者는 49.7%가 舊制教育만 받았다.

新制教育을 받은 有品官僚는 武官學校의 출신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商工學校·成均館經學科·醫學校 등 기타 學校의 출신이며 특히 武官學校 출신은 正三品과 九品의 관료에서 많다. 그러나 無品官僚는 外國語學校와 기타 學校의 출신이 가장 많고 나머지는 各種學校에 分散되어 있다.

外國語學校 출신은 無品者뿐만 아니라 九品者도 많으며 師範學校와 見習所 및 學堂·其他學校 출신은 無品者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70) 「官報」 開國 503년 7월 17일.

〈表 15〉 品階別 出身學校

學力 \ 品階	正一品	從一品	正二品	從二品	正三品	從三品	四品	五品	六品	七品	八品	九品	無	合計(%)
無		17	19	126	268	7	10	16	351	4	2	242	705	1,767 (55.1)
外國語學校			1	7	17				23			46	117	241 (7.5)
師範學校					2				12	1		20	56	91 (2.8)
法官養成所					4				10			23	21	58 (1.8)
武官學校			1	4	63				41			141	69	319 (9.9)
學堂·義塾				1	1				9			17	43	71 (2.2)
普通學校					2				2			11	8	23 (0.7)
中學校		1		1					1			13	9	25 (0.8)
見習·講習生					2		1		6	1	1	10	69	90 (2.8)
其他		1	2	3	14	1			41			48	176	286 (8.9)
留學生 專門·大學				3	9				8			7	26	53 (1.7)
留學生 士官學校			1	3	8				3			7	10	32 (1.0)
留學生 其他學校				3	21				5			23	60	112 (3.5)
留學生 視察			1	6	9				4				20	40 (1.3)
合計		19	25	157	420	8	11	16	516	6	3	608	1,419	3,208
(%)		0.6	0.8	4.9	13.1	0.2	0.3	0.5	16.1	0.2	0.1	19.0	44.2	100.0

留學生의 경우 有品者와 無品者에 分散되어 있으나 특히 上級官僚 중에 士官學校 출신의 비율이 높고 無品 및 九品의 관료는 其他學校(學院·義塾 官廳 등)의 출신이 가장 많다.

이와 같이 有品官僚, 특히 上級官僚가 武官教育을 많이 받고 無品 및 下級官僚가 外國語教育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은 韓末의 時代相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다.

傳統的 教育을 받은 관료가 上級有品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에 의하여 科學에 入格하고 또한 入官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無品 및 下級者가 많은 것은 吏胥와 雜職 출신의 中人들이 많기 때문인 것이다.

韓末 官僚의 武官志向과 外國語志向性은 당시의 富國强兵과 文明開化라는 近代化와 植民主義者의 政治哲學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政治哲學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점차적으로 外勢, 주로 日帝에 의하여 植民哲學으로 惡用되어 버린다.

이것을 단적으로 表現하여주는 것이 表 1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武官學校 卒業生의 감소와 外國語(특히 日語)學校 卒業生의 증가 현상이다.

〈表 16〉 年度別 出身學校

學校 / 年代	無	外國語學校	師範學校	法官養成所	武官學校	學堂·義塾	普通學校	中學校	見習·講習生	其他	留學生				合計(%)
											專門·大學	士官學校	其他學校	視察	
1903	459	43	36	15	231	6	3	4	2	67	15	14	32	4	931 (29.0)
1907	1,129	115	47	42	84	41	16	15	25	137	23	18	47	27	1,766 (55.1)
1908~10	179	83	8	1	4	24	4	6	63	82	15		33	9	511 (15.9)
合計 (%)	1,767 55.1	241 7.5	91 2.8	58 1.8	319 9.9	71 2.2	23 0.7	25 0.8	90 2.8	286 8.9	53 1.7	32 1.0	112 3.5	40 1.3	3,208 (100.0)

비교적 自主獨立性이 강했던 光武年間인 1903년의 관료는 武官學校 출신 관료가 전체의 $\frac{1}{4}$이 되었고 그 밖에 留學生과 其他 學校 그리고 外國語 및 師範學校의 출신이 많았다. 그러나 1907년 이후에는 이것이 급격히 감소되어가고 오히려 外國語學校와 其他學校 및 見習所의 출신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해가 갈수록 新制學校 출신이 차지하는 관료의 比率이 증가되어가고 있지만 1907년의 武官學校·師範學校·法官養成所의 出身官僚의 比率이 감소되어가고 1908년 이후에는 오히려 外國語學校·見習所·其他學校의 出身官僚의 比率이 증가되어가고 있다. 특히 留學生의 경우는 그 比率이 해마다 증가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韓末 官僚는 植民地化의 過程과 더불어 自主獨立과 文明開化를 위한 近代化의 의지가 표현된 機手는 감소되고 또한 教育水準이 높은 學校 출신이 감소되고 오히려 기타 학교와 見習所와 같은 外國語學校 및 簡易學校의 출신과 훈련생 및 유학생을 많이 채용함으로써 植民地官僚를 삼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학교의 출신은 試驗制度보다 오히려 推薦制度에 의하여 관료로 充員되기 때문에 植民主義者의 관료 노릇을 잘 할 수 있는 性格構造를 가지게 마련이다.

韓末 관료의 年齡水準이 낮은 것은 이미 그들의 初職과 現職의 從事時의 年齡構成과 官職의 성격에서 분석하였지만 그들의 入學年齡에서도 파

악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入官年齡이 낮은 것은 新制學校의 卒業者가 많기 때문이고 따라서 그들의 入學 또는 卒業時의 年齡水準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관료들의 入學年齡은 新制學校를 졸업한 경우 대개 15세에서 24세의 年齡期이다. 이때 入學한 사람은 전체 관료의 28.3%이고 新制學校 졸업자의 63.0%이다.

〈表 17〉 學校別 入學年齡

學校 \ 年齡	14세 이하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未詳	合計(%)
無								1,767	
外國語學校	22	102	68	23	5	5	1	15	241 (7.5)
師範學校	3	11	27	23	13	10	1	3	91 (2.8)
法官養成所	2	4	13	11	13	8	3	4	58 (1.8)
武官學校	4	136	122	34	9	1		13	319 (9.9)
學堂·義塾	10	27	20	9	1			4	71 (2.2)
普通學校	12	5	4					2	23 (0.7)
中學校	4	10	8	1				2	25 (0.8)
見習·講習生		13	41	16	10	6	2	2	90 (2.8)
其他	22	70	105	45	15	6	4	19	286 (8.9)
留學生 專門·大學		4	18	15	7	2	1	6	53 (1.7)
留學生 士官學校		4	17	8			1	2	32 (1.0)
留學生 其他學校	4	26	43	18	11	4	1	5	112 (3.5)
留學生 視察		1	9	12	8	5	4	1	40 (1.3)
合計	83	413	495	215	92	47	18	1,845	3,208 (100.0)
(%)	2.6	12.9	15.4	6.7	2.8	1.5	0.6	57.5	

그 밖에 상당한 數가 25세 이후에 入學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이것은 新制學校의 入學年齡이 특히 初期에는 엄격한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고 관료를 가장 많이 充員시킨 漢城師範學校와 후기의 外國語學校 및 中學校 그리고 初期의 法官養成所 등은 12세 또는 15세 이상의 年齡層의 入學이 얼마든지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學校의 入學者는 15~24세의 年齡層 이외에도 多數가 入學하고 있으며 表 5에서 볼 수 있는 入學年齡制限의 효과도 表 15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入學年齡制限의 拘束을 크게 받지 않았던 學校가 前記 三個校 이외에도

기타 學校와 유학생, 그리고 見習·講習生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武官學校 및 士官學校의 경우는 年齡制限이 엄격했던 것 같다.

新制學校의 入學年齡이 15세~24세가 가장 많다는 것은 그 이전에 初級學校의 修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專門敎育機關 이외의 入學試驗 또는 卒業試驗이 대부분 國文과 漢文의 讀書作文이기 때문에 私塾에서 漢文工夫가 대단히 필요하였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韓末 관료는 新制學校에 入學했던 아니했던간에 舊制敎育은 받아서 상당한 전통적 지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新制學校의 敎育을 받은 사람은 表 6에서 볼 수 있는 各種學校의 敎科目의 내용을 보아서 國語와 外國語뿐만 아니라 歷史·地理·數學·物理·化學·生物·音樂·修身·體操 등의 교양적인 근대 학문을 배우게 되고 法官養成所와 醫學校와 같은 기관에서는 벌써 전문적인 근대 학문과 新知識을 19세기 말기에 受容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문과 지식 및 기술의 導入은 주로 敎官 및 敎員들이 日本으로부터 導入하게 된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歐美의 新文化와 근대 학문을 간접적으로 도입하는 계층은 日本留學生이 중심이 되었다.

日本留學生 중에서 官僚知識人, 즉 敎官이 중심이 되었지만 人文社會科學은 유학생이 도입하였으나 自然技術科學은 非留學官僚의 敎官들이 도입하였다. 이것은 文獻(敎材·雜誌 등)과 敎育에 의한 受容이 19세기 말에 벌써 보편화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科試入格

王朝社會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家父長制的 官僚制의 영향이 대단히 큰 機能을 하였고, 이것은 科擧制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科擧制度는 權力支配層의 合法的 統治手段이 되어왔고 이것이 兩班支配階級의 사회적 통합의 機能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傳統社會에서는 科擧에 入格하여 관료가 되면, 그것은 일반인으로부터

支配의 合法性을 부여받았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傳統社會의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選良으로서 사회적 인정을 받았고 그것이 유일한 지배층이 될 수 있는 正統的 過程이었다.

그러나 王朝 末期의 甲午改革은 이러한 합법성과 정통성을 否認하는 제도적 개혁이었기 때문에 國家統治를 위한 지배층의 새로운 합법성이 마련되어야 했다. 그것이 表 3에서 볼 수 있는 관료의 充員制度였다.

韓末 관료의 充員制度는 초기에 法令上으로 官僚候補者의 取試制度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거의 형식적이고 특히 推薦과 特例의 규정이 있어서 오히려 이것이 큰 機能을 한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充員制度의 運營에 있어서 아직도 新敎育制度에 의한 候補者의 不足과 舊官僚勢力의 待遇問題, 그리고 身分撤廢 등의 문제 등이 上昇作用을 하여 초래된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情實主義에 기초한 非合法的 官僚充員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다.

甲午改革 후 10년～15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正三品 以上의 有品者 중에서 科擧에 入格한 사람은 極少數에 불과하고 비록 科擧에 入格하여도 甲午改革 이전에 文官入仕의 非正規課程으로 인식되었던 武科 및 小科 출신이 文科 출신의 2倍 이상이 되었다는 것은 官僚制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傳統的 支配勢力을 파괴하고 韓末의 소란한 民心을 회유하는 수단으로서 社會改革을 시도하였고 특히 관료의 充員制度를 고쳤지만 과거에 볼 수 있었던 官僚의 정통적 기능, 즉 政治的·行政的·司諫的 機能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관료의 充員이 取試보다 推薦과 特例에 주로 의존하였기 때문에 관료의 中立·忠誠·奉公의 정신은 약해지고 따라서 정통적 기능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관료가 科試에 의하여 充員된 사람은 전체 관료의 15.3%이고 비교적 上級官僚의 경우 그 比率이 높아지고 있음을 現職과의 相關分析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관료들의 品階와 상관시켜 분석하여도 마찬가지이다.

〈表 18〉 **品階別 科試入格率**

品階 / 科試	正一品	從一品	正二品	從二品	正三品	從三品	四品	五品	六品	七品	八品	九品	無	合計(%)
無		5	6	84	298	1	4	11	426	3	3	561	1,269	2,671 (83.3)
進士		2	3	9	22		1	1	23			17	32	110 (3.4)
生員			1	2	2				2			2	2	11 (0.3)
文科		10	8	27	27	4	1	3	10				32	122 (3.8)
武科		2	7	19	51	3	3	1	23			7	47	163 (5.1)
銓考									6			7	8	21 (0.7)
기타 試驗				3	9		1		18	3		10	20	64 (2.0)
蔭德				10	9				7			4	9	39 (1.2)
南行·추천				3	2		1		1					7 (0.2)
合計		19	25	157	420	8	11	16	516	6	3	608	1,419	3,208 (100.0)
(%)		0.6	0.8	4.9	13.1	0.2	0.3	0.5	16.1	0.2	0.1	19.0	44.2	

韓末 관료 중에 科試와 門蔭에 의하여 관료가 된 사람은 正四品의 29.1%이고 六品은 17.5%이며 九品은 7.8%이다. 그리고 無品者는 13.4%로 九品者보다 더욱 많다.

반면에 科試에 入格하지 않고 관료가 된 사람은 上級者에 비하여 下級者의 비율이 더욱 높다.

履歷書에는 取試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法令上으로 臨時試驗을 치르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관료들이 그것을 試驗으로 간주하지 못할 정도로 형식적인 것이었는지 모른다.

이와 같이, 取試에 의하지 않고 推薦과 特例에 의하여 入官의 比率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관료가 바람직한 資質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韓末의 관료는 時代에 따라 그들의 入官方法이 다르다.

1903 년도의 관료들의 科試入格率은 전체의 10.1%이고, 1907 년도의 경우는 21.7%이며 1908 년~1910 년의 경우는 11.7%이다. 1903 년의 科試入格率이 1907 년에 비하여 낮은 것은 理解가 되지만 1908~1910 년의 入格率이 1907 년에 비하여 낮다는 것은 바람직한 관료의 入官傾向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表 19〉 年度別 科試入格率

科試 / 年代	進士	生員	文科	武科	銓考	其他試驗	蔭	南行·추천	無	合計(%)
1903	22	3	7	36	4	7	15		837	931 (29.0)
1907	75	8	107	102	13	51	21	6	1,383	1,766 (55.1)
1908～10	13		8	25	4	6	3	1	451	511 (15.9)
合計 (%)	110 3.4	11 0.3	122 3.8	163 5.1	21 0.7	64 2.0	39 1.2	7 0.2	2,671 83.3	3,208(100.0)

1903년의 科試入格率이 낮은 것은 前述한 甲午改革 이후의 혼란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入格率이 너무 낮은 것은 이미 관료의 정통적 성격과 기능을 19세기말에 상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韓日合邦 당시에 取試의 比率이 더욱 낮아지고 있어 그들의 行態에서 관료의 자주적 성격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다.

科試合格者들의 入官傾向을 보면, 官職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文科及第者의 初職은 注書·正字와 다양한 舊官職인 기타에 분산되어 있고, 武科及第者도 宣傳官·司果·哨官·參尉·主事와 다양한 舊官職인 기타가 많고, 進士·生員은 主事와 參奉이 많으며 銓考入格者와 蔭門은 主事가 많다.

그러나 科試를 거치지 않은 者는 그것이 불필요한 主事·參尉·見習生·醫官·技手 등이 많다.

이와 같이 取試者는 科擧入格의 比率이 높기 때문에 전통적 성격이 강하고 無取試者는 근대적 성격과 전통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4) 氏族構成

王朝時代에 있어서 少數의 名門氏族이 通婚圈을 중심으로 權力共同體를 형성하여 왔다. 따라서 이들이 관료의 中心勢力이 되었고 심지어 科擧及第者도 이들이 多數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王朝末期에 社會의 逆階層化 現象이 일어나고 新興名門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科擧及第者의 氏族背景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新興의 氏族 또는 名門이 나타난다는 것은 閉鎖的인 사회에서는 旣存의 兩班階級內에서의 순환을 의미할지 모르나 이것은 官僚制가 가장 안정된 朝鮮 中期의 현상이고 末期에는 오히려 새로운 氏族의 등장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朝鮮 王朝의 生産構造內에서 常民階級 또는 産業從事者의 경제적 成長을 의미하고 경제적 성장은 科擧應試의 機會擴大를 가능케 하였다.

科擧制度가 중간층의 출신 子弟로 하여금 上層에의 진출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逆階層化와 生産力의 발전은 支配階級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官僚社會의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韓末의 甲午改革은 이것을 더욱 加速化시킬 수 있었다.

朝鮮王朝時代의 名門氏族인 全州 李氏·安東 金氏·豊壤 趙氏·南陽 洪氏·坡平 尹氏·淸州 韓氏·驪興 閔氏·潘南 朴氏·安東 權氏·文化 柳氏·東萊 鄭氏 등은 점차 관료의 중심 세력에서 弱化되어가고 오히려 金海 金氏·慶州 金氏·海州 吳氏·平山 申氏·密陽 朴氏·慶州 李氏 등이 관료를 多數 充員하고 있으며 그 밖에 延安 李氏·光山 金氏·順興 安氏·大邱 徐氏·水原 白氏·仁同 張氏 등이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全州 李氏 등의 舊名門氏族이 多數를 차지하고, 특히 正三品 이상의 지배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나 다른 많은 姓氏에서도 이를 輩出하고 있다. 즉 앞서 지적한, 全體官僚의 38.7%를 차지한 舊名門 또는 新興名門의 氏族(22個) 이외에 기타의 李·金·朴·崔의 姓族에서도 전체 관료의 25.2%를 차지하고 나머지 36.1%는 각각 다른 姓氏에서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姓氏의 人口比率에 따른 관료의 氏族別 構成이 되어 있지 못하지만, 종래에 비하여 많은 姓氏族이 분산하여 차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官職과 氏族을 相關分析해보자.

〈表 20〉 **氏族別 官職占有率**

地位	氏族 / 官職	全州李	金海金	慶州金	安東金	海州吳	平山申	密陽朴	慶州李	淸州韓	南陽洪	舊名門氏族	新興氏族	其他李	其他金	其他朴	崔	諸姓	合計(%)
判任官	主事	40	31	21	15	13	15	16	12	12	10	24	39	52	71	15	25	229	640 (20.0)
	技手	13	22	5	1	6	3	8	4	3	7	9	10	9	19	7	9	68	203 (6.3)
	參奉	6	1		1		1	6	2	3	1	1	10	3	7	1	3	24	70 (2.2)
	教員	9	10	4	4	3	6	2	1	3	4	13	14	20	17	9	9	76	204 (6.4)
	副教官	1	2			2					1	5	2	5	6	4	8	12	48 (1.5)
	書記	6		5	1	1		3		1	2	4	5	5	6	2		15	54 (1.7)
	書記郎	22	9	11	10	5	5	5	5	4	4	30	13	21	15	2	12	79	252 (7.9)
	書記官	5	2		1	1			1	2	4	5	2		5		1	14	43 (1.3)
	摠巡·巡檢	2	5	1		3	1	2	2	1	1	3	6	8	2	4	4	34	79 (2.5)
	侍御·(侍從)	4	1		2	2			1		1	3	2	8	3	1	1	9	38 (1.2)
	博士						1					1	1		1			14	18 (0.6)
	製藥師·樂師·기타官	4		1			1		1				4	2	1			11	25 (0.8)
奏任官	參書官	3			2	1	1		1		1	4	4	4	3		2	16	42 (1.3)
	技師	3	3	2		3		2	1	1	1	1			7		1	15	40 (1.2)
	郡守	7	2	2	3	2	4	4	2	2		3	14	14	8	3		25	95 (3.0)
	贊議·副贊議	2		2			3				1	7	1	5	3			15	39 (1.2)
	丞·令	5		2	3	1		2		2	4	3	5	4	3	1	1	11	47 (1.5)
	警務官	3	2	1				1						1	1	1	2	11	23 (0.7)
	局(課)長	5		1	2	1	2	2	1			3	4	2	4		2	16	45 (1.4)
	司長·理事	2	1	1								4	1	1		1		7	18 (0.6)
	秘書官·事務官·稅務官			1	1			1		1	2	4	2	1	3	2	1	8	27 (0.8)
勅任官	大臣·顧問	5					1		1			3		2	1			6	19 (0.6)
	特進官·協辦·卿	2						1				2	3	1	1			2	12 (0.4)
	其他	2	1	1					1			2	3	2	2		1	1	16 (0.5)
奏任·判官	教官	1									1	2			3		2	12	21 (0.7)
	飜(通)譯官	4			1	1	1	2		3	2		1	4	4	4	3	34	64 (2.0)
	委員	3		1			1	3		2	1	3	2	5	3	1	1	10	36 (1.1)
奏·勅任官	議官	4	1	1	1	1	3	5		1		3	1	3	7		1	16	48 (1.5)
	判(檢)事	4	1	2	1			3	2	1	3	7	2	13	2	1	3	15	60 (1.9)
	提調·副提調	4					1	1	3	1		3	3	4	1			2	23 (0.7)
	觀察使							1	1			1		2			1	2	8 (0.2)
其他	醫官	2	2	2							1	2	2	5	6	1	2	15	40 (1.2)
	見習生													1				5	6 (0.2)
武官	將官·기타									1		1	2	3		1		5	13 (0.4)
	領官	6		1			5	1	3	1		1	4	4	4	3		19	52 (1.6)

尉官	22	3	6	7	17	8	2	7	4	3	17	29	63	30	11	12	149	390(12.2)
正校·尉官	1	2		1			1			1	1	2	4	4	1	3	10	31(1.0)
其他	9	3	5	4	1	6	6	4	6	2	12	10	22	24	6	3	87	212(6.6)
未詳	2	1	1		1	1		1		3	3	4	10	11	7	4	58	107(3.3)
合計	213	105	80	61	65	70	80	57	55	61	190	207	313	288	89	117	1,157	3,208
(%)	6.6	3.3	2.5	1.9	2.0	2.2	2.5	1.8	1.7	1.9	5.9	6.4	9.8	9.0	2.8	3.6	36.1	100.0

備考> 1) 舊名門氏族은 坡平 尹·靑松 沈·東萊 鄭·潘南 朴·驪興 閔·安東 權氏 등이다.
2) 新興氏族은 延安 李·光山 金·順興 安·大邱 徐·水原 白·仁同張氏 등이다.

表 20을 보면, 勅·奏任官은 舊名門氏族의 占有率이 많고 判任官은 全州 李氏를 제외하고는 新興氏族의 占有率이 훨씬 높다.

全州 李氏와 新興氏族은 武官과 主事·技手·敎員·書記郞을 많이 배출하고 특히 全州 李氏는 大臣·提調·郡守·局(課)長이 많고 舊名門氏族은 전통적 관직에 많이 종사한다.

新興氏族 및 名門氏族이 많은 관직은 甲午改革 이후에 생긴 것이 많다. 이것은 새로운 充員制度에 의하여 형성되었거나 舊職의 轉身, 즉 中人의 文官化에서 연유된 것이 많기 때문인 것 같다.

이와 같이 새로운 氏族의 登場과 舊名門의 沒落現象이 官僚社會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官僚支配層의 勢力基盤의 弱化를 의미하고 종래의 血緣을 중심으로 한 權力의 유지는 대단히 어렵게 되어 간다.

5) 出身地域

王朝時代의 관료는 地方 출신보다 서울 출신이 대단히 많다. 이것은 권력이 中央集權化되어 있고 서울의 兩班子弟들이 應科의 機會가 많았기 때문이다.

王朝時代의 文科及第者의 56.5%가 서울 출신이고 44.5%가 지방 출신이며 武科及第者도 52.8%가 서울 출신이고 나머지는 지방 출신이다.[71]

이것을 보면, 서울의 大科入格者가 家門이 좋고 入官의 기회가 많은 것이며, 따라서 지방의 中人을 제외하고는 王朝時代의 관료는 대부분 서울

71) 拙稿:「李朝時代 科擧及第者의 社會的 背景에 대한 考察」前揭書, p. 144.

출신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조사한 韓末 관료는 中央官僚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울 출신이 많을 것이다. 履歷書에는 그들의 居住와 本籍이 不分明하게 기록된 것이 많기 때문에 서울 출신의 관료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말할 수 없으나 表 2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 관료의 60%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관료의 充員制度와 充員機會에서 밝힌 바와 같이 官廳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 地方民이 관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종래의 科擧制에서 볼 수 있던 바와 같이 관료의 充員機會가 제도상으로나 實際上으로 서울兩班이 독점할 수 없게 되어 있고 地方民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었기 때문에 地方民의 진출이 많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下級官僚 중에서 상당수가 서울의 中人 출신이고 地方民보다는 아직 서울 출신이 많을 것이고 學校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表 21에 의하면, 居住가 서울인 경우가 가장 많아서 전체 관료의 63.2%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京畿(6.3%), 平南(4.5%), 平北(3.7%), 忠南(2.1%), 全北(2.1%), 忠北(1.5%), 慶北(1.5%), 慶南(1.1%), 咸北(0.9%), 咸南(0.7%), 全南(0.6%), 黃海(0.5%), 江原(0.5%) 등의 順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 서울 지방 이외에는 平安道와 忠淸道 그리고 全北과 嶺南 및 關北地方의 관료가 많은데 이것은 새로운 地方民의 진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종래에는 서울과 忠淸道 및 嶺南地方民이 관료 및 儒林의 中心勢力이었는데 이제는 外來文化, 즉 新學問과 新文化(宗敎)의 受容이 빠른 지역인 京畿·關西·全北地方의 진출이 현저한 것이다.

이것은 韓末 日本留學生의 출신 지방의 分布現象과 대단히 비슷한 것[72]으로 새로운 지방 출신, 즉 새로운 文化와 學問 및 교육에 대한 적응이 빠

72) 1908년의 在日留學生(493명)의 43.6%가 서울·京畿出身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대부분 平安道(27.2%), 慶尙道(8.7%), 그리고 忠淸道(6.9%)의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른 사람이 사회의 지배층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實證하고 있는 것이다.

〈表 21〉 **品階別 居住地**

品階 / 居住	正一品	從一品	正二品	從二品	正三品	從三品	四品	五品	六品	七品	八品	九品	無	合計(%)
서울		15	24	133	328	4	4	13	376	3		414	715	2,029 (63.2)
京畿		1		9	17		2		45		1	57	70	202 (6.3)
咸北					2				4			8	14	28 (0.9)
咸南					1				1			5	15	22 (0.7)
平北					6		1		7			11	95	120 (3.7)
平南				1	12	1	2		16	3	1	17	92	145 (4.5)
全北				1	7				2			3	54	67 (2.1)
全南									1			3	15	19 (0.6)
忠北				1	5			1	3			19	19	48 (1.5)
忠南		1		2	9	1			12			16	27	68 (2.1)
慶北				3	3			1	8			12	21	48 (1.5)
慶南					3				10			6	17	36 (1.1)
江原					2	1			3			1	9	16 (0.5)
黃海					1		1		1			5	9	17 (0.5)
濟州													1	1 (0.0)
未詳		2	1	7	24	1	1	1	27		1	31	246	342 (10.7)
合計 (%)		19 0.6	25 0.8	157 4.9	420 13.1	8 0.2	11 0.3	16 0.5	516 16.1	6 0.2	3 0.1	608 19.0	1,419 44.2	3,208 (100.0)

韓末 官僚 중에 有品者, 특히 上位有品者일수록 서울地方民이 많고 無品者인 경우는 서울과 地方民의 占有率이 거의 같다.

이것은 아직도 전통적 支配勢力은 서울 출신임을 의미하고 地方民이 최근에야 진출하고 있음을 말하여준다. 특히 京畿道와 平安道 및 忠淸道의 地方民이 上級官僚의 占有率이 많고 平安道와 全北의 진출이 급격히 많아지고 있는 것은 이 地方民이 進步的이고 반면에 嶺南地方民은 保守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4. 官僚의 社會的 移動

1) 世代的 移動

傳統社會에 있어서 社會移動은 대개 水平移動이 일어나지 않고 垂直移

動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空間的 次元뿐만 아니라 時間的 次元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하면, 世代內 또는 世代間에 있어서 직업적 신분적 轉換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의 王朝社會는 西歐의 身分制的 社會形態는 아니지만 世代間의 身分世襲率이 대단히 높았다. 身分世襲率이 높은 것은 科擧制와 門蔭을 중심으로 한 官僚制度가 엄격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것이다.

그러나 王朝 末期에 이르러 兩班의 武官化 또는 中人化 現象이 초래되었고 甲午改革으로 인하여 이것이 合法化되었다. 다시 말하면 身分과 文武 간의 差別撤廢는 그것을 의미하고 그로 인하여 다시금 中人 및 武官의 文官化라 말할 수 있는 身分移動의 현상이 世代內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甲午改革 이전의 신분의 下降現象은 兩班의 量的 增加로 인한 入官의 기회가 줄어듦으로써 入官이 용이한 길을 택하여 그들의 사회적 上昇移動과 生計維持의 手段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量的 增加와 普遍化는 武科 및 武官 출신이 官僚支配層으로 나타나고 吏胥와 譯官 및 雜職과 같은 中人層의 사회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더불어 관료 상호간의 身分意識이 극히 둔화되었으며 오히려 권력과 역할의 分化로 말미암아 機能의 전문화가 요청되었다.

이것은 王朝社會 내부의 社會生産力의 발전뿐만 아니라 外勢의 衝擊과 外來文化의 접촉으로 가일층 촉진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官僚社會 내부의 필요성과 거의 해체된 身分社會의 內在的 필요성 때문에 武官과 中人의 身分的 上昇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다. 이것을 甲午改革은 제도상으로 合法化시켰던 것이다.

사실, 韓末에 이르러 관료는 급격한 역할과 권력의 分化現象이 초래되어, 종래처럼 정치적 권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威勢와 經濟力 및 知力까지 독점할 수 없었고 政治力·經濟力·知力의 分化가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 權力支配層의 分化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韓末 留學生의 專攻選擇에 있어서 自然 및 技術系 학과의 진출 경향이 높고 관료의 初職에 있어서 技術官·敎官·通譯官에의 진출

경향이 높다는 것은 벌써 兩班社會에 있어서 종래의 武官과 生業 및 雜職에 대한 전통적인 신분 및 職業意識이 많이 소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世代內에 있어서 관료의 水平移動, 즉 身分과 직업의 轉換이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가능하였고 동시에 上昇과 下降의 垂直移動도 가능하였다.

韓末 관료의 水平移動에 대한 제도적 조치와 그 실제는 이미 관료의 充員制度와 充員機會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당히 보편화되었고 그 比率도 대단히 높은 것이다.

1894년 6월에 "四色黨論을 타파하고 門地를 불문하고 人材를 등용하는 일"[73]과 "門閥·班常等級을 혁파하고 貴賤에 관계없이 人材를 選用하는 일 및 文武의 差別을 폐지하는 일"[74] 그리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選擧條例 등이 제정·실시됨으로써 관료의 充員機會는 확대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吏胥와 醫譯 및 雜職을 判任 또는 奏任官으로 轉身시키는 일,[75] 특히 이들을 主事定額의 $\frac{1}{3}$을 채웠다는 것은 世代內의 주요한 身分移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身分轉換과 身分의 垂直移動은 초기에 많이 일어났고 비록 中期 이후일지라도 1898년의 奏·判任官任命規則, 그리고 1906년 이후의 文官任用令에서 일정 기간과 자격의 소유자를 昇進케 하는 규정이 있으나 첫 任用時에 親任式의 叙任과 特別任用規程 및 特例가 많아서 經歷移動의 類型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 특히 秘書官·飜(通)譯官·郡守·教官·法官의 경우는 文官任用令에 구애되지 않기 때문에 特別任用과 昇進이 대단히 無秩序했던 것 같다. 이들은 대부분 바로 奏任官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甲午改革 당시의 選擧條例에 의하면, 各府各衙門大臣은 所管奏任·判任官을 選取할 수 있었다.[76] 그 후에도 軍務 혹은 司法事務에 嫺熟한 者는 卒業證書가 없어도 直行任命되고[77] 법률에 通曉하고 사무에 嫺熟한 者는

73) 「官報」 開國 503년 6월 22일.
74) 「官報」 開國 503년 6월 28일.
75) 「官報」 開國 503년 7월 17일.
76) 「官報」 開國 503년 7월 12일.
77) 「官報」 光武 4년 4월 3일.

試官銓考委員의 銓考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78] 郡守도 文官任用令의 규정에 불구하고 觀察使가 자기 구역내에 거주하고 지방의 情形에 통달하여 품행이 方正한 者 중에서 推薦·任用할 수 있게 되었다.[79]

사실 文官任用令과 地方官銓考規定에서도 昇進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나 特別任用規程이 있다. 特別任用規程을 제외한 경우는 다음의 원칙에 의하여 昇進될 수 있었다.

〈表 22〉 **官僚의 昇進制度**

文官의 경우	地方官의 경우
奏任官의 任用	**奏任官의 任用**
① 6品에서 4品에 이르기까지 仕滿 24個月 이상의 者와 성적이 뛰어난 者(1894년)	① 曾經勅奏任者
② 奏任職을 曾經하되 1年以上 在勤者(1906년)	② 各府部 勅奏任職에 現帶한 者
③ 判任 3년 이상 繼勤한 者(1906년)	③ 4년 이상 各府部判任職에 있는 者와 曾經한 者
④ 外國大學에서 法律·政治·經濟學科 卒業者(1908년)	④ 2년 이상 地方判任職에 있어서 事務에 通鍊한 者
⑤ 內外國의 政法專門學校의 卒業者로 만 2년 이상 判任文官에 있는 者(1908년)	⑤ 특이한 學識과 技能이 있는 者
勅任官의 任用	**勅任官의 任用**
① 仕滿 24개월간 시종 廉謹한 者와 才嗣가 超異한 者(1894년)	① 勅任職에 現帶한 者와 曾經한 者
② 勅任職에 曾經한 者(1906년)	② 5년 이상 各府部 奏任職에 있던 者와 曾經한 者
③ 奏任 3등 이상의 職에 있는 者와 曾經奏任 3년 이상 在勤者(1906년)	③ 3년 이상 地方奏任職에 있어서 治績이 현저한 者
④ 勅任官에 있었던 者(1906년)	④ 특이한 學識과 技能이 있는 者

備考 1) ( ) 內는 1894년의 文官授任式과 1906년 및 1908년의 文官任用令임.
2) 地方官任用은 1906년 9월의 銓考規定임.

文官과 地方官의 昇進制度에서 勅任官은 대개 前者가 3년, 그리고 후자가 5년 이상을 지낸 者는 昇進이 가능하고 奏任官은 전자가 3년, 그리고 후자가 4년을 경과한 者는 昇進이 가능하다. 그러나 表 2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特例의 경우가 있어서 昇進의 類型과 年限이 일정하다고 볼 수 없다.

---

78) 「官報」 光武 10년 10월 26일.
79) 郡守任用令, 「官報」 隆熙 2년 6월 22일.

이러한 규정은 甲午改革 이전의 관료의 任用과 昇進에 비하면 대단히 弛緩되어 있고 그 昇進이 더욱 빠를 수 있다.

王朝時代에는 科學에 入格하여야 從六品에서 正九品의 品階를 주어 權知(臨時職)에 入官시켰다. 從六品은 文科及第者(33人) 중에 甲科 1人의 壯元에게 주었고 나머지는 少數가 正七品이며 대부분(23人)은 正九品의 品階를 주었다.[80)]

韓末 관료의 任用과 昇進制度가 대단히 無秩序하였다는 것은 表 5에서 볼 수 있는 그들의 初職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들의 初職은 判任官이 가장 많으나 奏任官에 바로 임명된 사람이 많고 오히려 현직 上級官僚와 上級有品者는 그 길로 들어온 사람의 비율이 判任官의 길보다 더욱 많다.

이것은 관료 제도의 중립화와 관료의 심적 안정과 士氣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소수 관료를 偏愛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은 公的立場보다 私的인 忠誠心을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正三品 이상의 有品者는 主事와 參尉의 출신이 가장 많고 舊官職從事者도 대단히 많다. 六品者는 主事가 압도적이며 參奉·參尉·敎員도 많다.

그러나 九品과 無品者는 主事의 비율이 가장 많으나 敎員·技手·參奉·參尉·見習生·總巡·번역관·農工商의 初職도 대단히 많다.

여기에서 正三品 이상은 舊官制의 初職이 下品·無品者에 비하여 많고, 下品·無品者는 新官制의 初職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의 官歷을 보면, 甲午改革 후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新制出身이 많다는 것은 대단히 빠른 昇進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甲午年 이후 불과 10~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新制官僚가 上級官僚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간의 급속한 정치적·사회적 변화와 成長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조사한 관료의 27.5%가 初職과 現職이 同一한데 이것은 入官年限이 오래되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겠지만 經歷移動이 심하지

80) 李相佰:「韓國史」'近世前期編', 乙酉文化社 1962년, p. 284.

않았음을 의미한다.

韓末 官僚의 經歷移動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27.5%가 되지만 나머지는 그들의 入官年度에 비하여 대단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表 23〉　　官僚의 入官年度

地位	官職＼入官年度	1884年 이 전	1885～1894	1895～1906	1907年 이 후	未 詳	合 計 (%)
判任官	主事	14	52	522	21	31	640 (20.0)
	技手		3	178	5	17	203 (6.3)
	參奉	6	12	46		6	70 (2.2)
	敎員	5	8	172	7	12	204 (6.4)
	副敎官		2	42	2	2	48 (1.5)
	書記	3	8	37	5	1	54 (1.7)
	書記郞	2	23	219	6	2	252 (7.9)
	書記官		10	30	3		43 (1.3)
	總巡·巡檢	1	8	70			79 (2.5)
	侍御·(侍從)	2	6	29	1		38 (1.2)
	博士			17	1		18 (0.6)
	製藥師·樂師·其他官	1	6	17	1		25 (0.8)
奏任官	參書官	3	9	29		1	42 (1.3)
	技師	1	11	26		2	40 (1.2)
	郡守	17	34	41	1	2	95 (3.0)
	贊議·副贊議	12	15	12			39 (1.2)
	丞·令	3	10	34			47 (1.5)
	警務官		3	19	1		23 (0.7)
	局(課)長	2	16	25	2		45 (1.4)
	司長·理事	1	3	10	3	1	18 (0.6)
	秘書官·事務官·稅務官	1	7	17	1	1	27 (0.8)
奏任·判官	敎官		1	18	1	1	21 (0.7)
	繙(通)譯官	1	7	45	10	1	64 (2.0)
	委員		3	25	6	2	36 (1.1)
勅任官	大臣·顧問	11	4	3	1		19 (0.6)
	特進官·協辦·卿	6	3	2	1		12 (0.4)
	其他	4	4	6		2	16 (0.5)
奏·勅任官	議官	9	13	24		2	48 (1.5)
	判(檢)事	8	13	36	3		60 (1.9)
	提調·副提調	9	5	8	1		23 (0.7)
	視察使	3	2	3			8 (0.2)

其他 醫官	1	6	32		1	40 (1.2)
其他 見習生			4	2		6 (0.2)
武官 將官·其他	3	4	6			13 (0.4)
武官 領官	2	14	36			52 (1.6)
武官 尉官	3	21	365		1	390 (12.2)
武官 正校·餉官	1	13	15		2	31 (1.0)
其他	23	64	96	14	15	212 (6.6)
未詳	1	1	14	3	88	107 (3.3)
合計 (%)	159 5.0	424 13.2	2,330 72.6	102 3.2	193 6.0	3,208 (100.0)

表 2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甲午改革 이후에 入官한 官僚는 判任官이 가장 많으나 勅·奏任官에도 多數 있다. 물론 勅任官과 같은 上級官僚는 대부분 甲午改革 이전부터 入官한 사람들이다. 入官한 지 15년도 못되어 勅任官으로 昇進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빠른 편이다.

甲午改革 이전에 入官하여도 多數가 判任官 및 奏任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甲午改革 이전의 中人身分이 대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判任官의 主事·參奉·書記(郎)·其他·未詳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例가 많을 것이다.

2) 世代間 移動

일반적으로 世代間 階層移動은 신분의 世襲性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분의 世襲性은 父親과 祖父의 사회적 배경의 영향력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父親의 사회적 기원은 子女의 직업적 성공의 機會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父親의 직업적 지위와 蔭德은 子女의 敎育과 初職, 심지어 現職에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子女의 經歷成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신분의 世襲性은 王朝時代에 있어서는 職業分化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 특히 官職은 兩班官僚社會의 占有物이다시피하여 그에 대한 사회적 評價가 대단히 높은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사회적 변동이 대단히 심한 過渡期的 社會에 있어서는 階層變數가 대단히 多樣하고 異質性이 크기 때문에 職業的 世襲性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韓末의 社會移動도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官職의 世襲性만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아직도 역할과 권력이 완전히 分化된 것이 아니고 官職이 아직도 가장 높은 사회적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考察하여 보면 世代間 身分移動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앞서 관료의 身分背景에서 그들의 父親의 관직과 科試를 중심으로 身分分析을 행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관료의 身分背景은 대단히 낮으나 밝혀진 父親의 身分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韓末 관료의 身分世襲性은 대단히 낮고 따라서 새로운 社會階層에서 관료 또는 支配層을 充員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24〉 **世代間 身分移動**

地位	官職 \ 父官職	判書	參判	承旨	牧使	參奉	府使	縣監	郡守	都事	主事	議官	監役	丞·令	(副)司果	其他	無	未詳	合計(%)
判任官	主事	2		4		6	7	4	15	4	8	6	4	1	2	42	88	447	640 (20.0)
	技手		1	1					1		3	1	4	1		5	28	162	203 (6.3)
	參奉					1			2					1		2	10	54	70 (2.2)
	教員			1		4	1	2			3	2	2		5	19	50	115	204 (6.4)
	副教官			1		2			3							8	7	27	48 (1.5)
	書記							1	1		1					4	9	38	54 (1.7)
	書記郎	1	2	3	1	1	1	1	4				1	2		9	37	189	252 (7.9)
	書記官	1	1			2	1		1	1				1		2	9	24	43 (1.3)
	總巡·巡檢				1							1				2	6	69	79 (2.5)
	侍御·(侍從)	1							1							5	7	24	38 (1.2)
	博士													1		1	2	14	18 (0.6)
	製藥師·樂師·기타官										1					2	3	19	25 (0.8)
奏任官	參書官		1				2				1		1	1	1	8	6	21	42 (1.3)
	技師					2		1				1			3	5	1	27	40 (1.2)
	郡守	1		1		2		1								9	16	65	95 (3.0)
	贊議·副贊議	2	1	1					1				4		1	4	9	17	39 (1.2)
	丞·令		1			1			1		2		2			2	11	27	47 (1.5)
	警務官																3	20	23 (0.7)
	局(課)長		2			3				1						1	12	26	45 (1.4)
	司長·理事	1						1									2	14	18 (0.6)
	秘書官·事務官·稅務官								1		1					4	5	16	27 (0.8)

奏任·判官	敎官								1						1		4	15	21 (0.7)
	飜(通)譯官							1								2	11	50	64 (2.0)
	委員			1												2	4	29	36 (1.1)
勅任官	大臣·顧問	2						1			1				1	5	4	5	19 (0.6)
	侍進官 協辦·卿	1		2						1			1				4	3	12 (0.4)
	其他	1						1							1	3	3	7	16 (0.5)
奏·勅任官	議官					1	1		1			1				2	4	38	48 (1.5)
	判(檢)事	1	1		1		1		1		1	1	1			8	14	30	60 (1.9)
	提調·副提調	1				2										2	6	12	23 (0.7)
	觀察使					1			1								3	3	8 (0.2)
其他	醫官		1				1									1	3	34	40 (1.2)
	見習生																1	5	6 (0.2)
武官	將官·기타	1														2		10	13 (0.4)
	領官	1					2								1	3	7	38	52 (1.6)
	尉官	1	2	2	3	5	4	2	8	5	2			1	1	14	51	289	390 (12.2)
	正校·餉官	1														2	2	26	31 (1.0)
其他		6	1	1	2		2		3	1	2			1		8	21	164	212 (6.6)
未詳						2										3	10	92	107 (3.3)
合計		25	14	18	8	35	23	16	46	13	26	13	16	9	17	191	473	2,265	3,208
(%)		0.8	0.4	0.6	0.3	1.1	0.7	0.5	1.4	0.4	0.8	0.4	0.5	0.8	0.5	6.0	14.7	70.6	100.0

表 2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韓末 관료의 身分世襲性은 대단히 낮다. 그들의 父親을 名門族譜에서 찾지 못한 것이 약 70%가 되고 비록 찾은 것 중 약 30% 중에서도 有官·有品者는 그 半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관직의 世襲性은 약 반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신분의 世襲性은 반에 훨씬 未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앞에서 제도적으로 또는 實證的으로 자세히 분석하였지만 甲午改革 이후의 官僚의 充員制度가 전통적 支配勢力을 단절하고 새로운 官僚勢力을 형성하는 데는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官僚支配層은 舊勢力이 지배하고 있지만 多數의 관료는 특히 사회의 中間階層에 의하여 充員되고 있다.

韓末 관료 중에 비교적 名門子孫의 範疇에 들어갈 수 있는 30%가 모두 有官·有品者는 아니고 그 半이 有官·有品者인데 이들의 관직은 대단히 다양하고 비교적 높은 官職의 자손들이다. 즉, 父親의 다양한 官職(其他)이 6.0%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郡守(1.1%), 參奉(1.1%), 判書(0.8%),

主事(0.8%), 府使(0.7%) 등이 있다.

父親의 官職은 대부분 舊制이나 이들은 子弟의 사회적 진출, 특히 入官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官職이다.

이와 같이 높은 신분의 子弟는 甲午改革 후에도 入官의 機會가 있었을 것이지만 多數인 未詳은 自己代에 身分轉換이 된 관료가 많겠기 때문에 신분 또는 직업의 世襲性은 높지 않을 것이다.

表 24를 보면, 判任官 또는 奏任官의 父親 중에 상당한 정치적·행정적 權力이 있는 官職의 子息들이라는 것을 보아서 父親의 蔭德을 입은 것이 많을 것이다.

또한 未詳의 子息들보다 그리고 無官의 子息들보다 有官의 子息들이 上級官職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韓末 관료 중에서 자기가 技手·書記郞·尉官의 경우는 主事·敎員·贊議에 비하여 父親이 無官者가 많고 특히 摠巡·郡守·번역관 등은 父親이 未詳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勅·奏任官의 경우는 신분이 밝혀진 父母가 많고 특히 主事의 경우 기타가 많은데 이것은 下級身分이 많은 것 같다.

일반적으로 관료 제도가 안정된 社會일수록 少數의 지배층이 下級身分出身을 지도적 지위에서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러나 韓末의 경우는 세습적인 支配階級이 權力의 自己保存的인 기능을 못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당시의 사회적 요구가 이를 否定하였고, 따라서 權力支配層은 外勢와 결탁함으로써 자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계층간의 葛藤이 존재하면 사회적·정치적 긴장이 조성되기 마련이고 이것을 스스로 制御하지 못하는 경우에 外勢에 의존하는 길이 自己保護의 길인 줄 착각하게 된다.

사회적 요구는 대부분 밑으로부터의 요구라 할 수 있는 것(예, 東學革命·民亂·逆階層化 등)으로 이것은 旣存秩序의 否定이라는 性格을 띠고 있다. 그러나 옆으로부터의 요구라 할 수 있는 지식인, 특히 儒林中心의 보수적인 改革의 요구와 言論人 중심의 西歐志向的 改革의 요구가 있었지만 권력을 장악하고 官僚支配層, 즉 정치적 지배층의 親日化의 경향, 그리고

外勢(특히 日帝)에 의한 經濟權의 支配化 現象은 자주적인 성격을 가진 밑으로부터와 옆으로부터의 정치적·사회적 요구를 성취시켜주지 못한다.

만약 韓末의 官僚支配層이 자주적인 성격이 있었다면 體質改善과 社會改革에 의한 사회적·정치적 不滿을 스스로 受容하여야 될 것이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世代間 身分 또는 官職의 높은 世襲率로 나타날 수 있고 일찌기 甲午改革과 같은 社會改革이 존재하여야 될 것이다.

5. 結　　論

韓末 관료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制度的·實證的 側面의 다양한 분석에서 그들의 여러 가지 社會的 特性을 지적할 수 있었다.

관료의 充員과 資質 및 移動은 그 시대의 社會的 樣相을 反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甲午改革 이전에 비하여 매우 심한 異質性과 多樣한 사회적 배경과 構造的 變革이 일어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었다.

다음에 그들의 사회적 특성을 간략히 지적하고 어떠한 사회적 의미가 있는지를 보기로 하자.

(1) 官僚의 充員制度는 대단히 閉鎖的이다. 甲午改革은 身分撤廢와 充員制度의 改革을 실시하였으나 이것에 따르는 사회적 기반, 즉 充員候補勢力이 초기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제도상의 未備로 取試보다 推薦과 特例規定에 의하여 充員이 더욱 가능하였기 때문에 權力과 緣故에 의한 情實主義에 빠지기 쉬웠다.

(2) 관료의 充員機會는 開放的인 편이다. 上層은 情實主義에 의존하면 入官이 가능하고 下層은 身分에 구애됨이 없이 新制教育의 機會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관료의 充員要因이 대부분 新制教育이고 定規課程인 取試는 거의 無意味하며 또한 制度的 身分轉換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3) 관료의 身分背景은 少數를 제외하고는 대단히 낮은 편이다. 왜냐하면 名門族譜에서 전체 관료의 30%밖에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

라서 少數는 官僚支配層의 子弟이고, 多數는 甲午改革 이전의 中人과 新興 資産家의 子弟들이다.

(4) 관료의 氏族背景은 전통적인 名門의 출신이 몰락되어 新興氏族이 등장한다. 즉 아직도 全州 李氏가 많지만 金海 金氏·慶州 金氏·密陽 朴氏·平山 申氏·海州 吳氏와 같은 新興家門이 등장하고 다수의 氏族에 관료가 분산되어 있다.

(5) 관료의 年齡은 20代와 30代가 가장 많다. 이것은 新制教育制度의 영향이 크겠지만 새로운 世代의 成長을 의미한다.

(6) 관료의 學歷은 모두 私塾에서 傳統教育을 받고 이의 약 半數가 新制教育을 받았다. 新制教育과 充員制度는 近代的 學問과 日語教育을 중시하기 때문에 親日的 官僚를 양성한다.

(7) 관료의 出身地域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서울과 京畿 출신이 많으나 새로이 平安道와 全北地方의 출신이 많다. 이것은 이 지역이 보수적인 嶺南에 비하여 外來文化의 受容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8) 관료의 身分이 世代內 轉換이 가능하였다. 다시 말하면 中人 및 武官이 文官化할 수 있었다.

(9) 관료의 身分世襲率이 대단히 낮다. 물론 上層은 대단히 높지만 관료의 증가와 교육의 확대는 中人 및 資産家와 같은 당시의 中間階級의 大量進出이 가능하였다.

이와 같은 韓末 관료의 사회적 특성은 근본적으로 甲午改革 이후의 充員制度와 充員機會의 矛盾性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官僚를 充員할 수 있는 바탕(社會勢力)을 制度(教育)的으로 먼저 육성하지 않고서 官僚勢力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官僚充員이 情實主義에 의존하고 外來文化志向的이며 따라서 自主的인 性格이 缺如되기 쉬운 것이다.

韓末에는 甲午改革을 계기로 종래의 관료의 充員制度인 科擧制가 없어지고 근대적 교육이 새로운 充員要因, 즉 새로운 階層의 評價尺度가 됨으로써 근대적 문화와 교육에 민감한 適應者가 새로운 지배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韓末에 있어서 이미 社會階層의 逆階層化 現象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社會構造的으로 새로운 계층이 支配層化되어가는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社會構造, 특히 機會構造의 변동을 甲午改革이 합법화 및 제도화시켜주었던 것이다. 또한 甲申政變 이후 소위 開化勢力의 강력한 정치적·사회적 成長을 볼 수 있고 東學亂에서 표현된 大衆의 강력한 意志가 표현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와 같이 韓末의 관료는 少數의 傳統的 保守勢力과 多數의 新興勢力의 출신이 並存하여 있고 이들이 官僚勢力을 형성하여 있는 것이다. 비록 후자는 권력이 微弱하지만 未來의 權力支配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二. 政治支配層의 社會的 背景

1. 序　論

1) 研究目的

王朝時代의 權力支配層은 官僚支配層이다. 모든 권력이 王으로부터 우러나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료 지배층이 政策決定者였다.

이러한 政治權力은 소수의 관료 지배층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적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변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韓末의 정치적 권력의 변동은 당시 권력 지배층의 保守와 進步의 對立, 그리고 外勢에 의한 植民地化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동 속에서 정치적 사회적 세력은 成長된다.

이러한 세력이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성격을 갖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政治社會化 機構와 文化的 背景에 의하여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韓末의 政治社會化 機關과 文化는 開港과 더불어 外勢에 의하여 오랜 전통성을 깨고, 특히 甲午改革을 계기로 日帝에 의하여 결정적인 영향을 일방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自主能力을 壓倒할 수 있는 경제적 침탈과 軍事的 壓力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權力支配層의 사회적 속성에서 植民地下라는 거대한 政治權力의 변동을 파악한다는 것은 대단히 無理한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당시의 權力支配層은 開港 이후에 성장된 정치적 사회적 세력의 대표적인 표현이고 이들이 外勢와 結託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資質의 특수성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비록 植民主義者가 군사적 정치적 압력에 의하여 合併에의 길을 가려

해도 우리의 정치적 세력과 경제적 기반의 自主性이 강했더라면 日帝支配下 36년간의 쓰라린 苦痛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政治支配層의 非自主性의 문제를 그들의 사회적 배경과 資質에서 밝혀보려고 한다.

그들의 사회적 속성과 資質은 개인적 資質에서만 밝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權力共同體는 주로 身分과 血緣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實證的 分析을 행해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政治權力의 변동을 政治支配層의 사회적 성격에서 考察하여 보려고 하는 것이다.

2) 接近方法과 對象

韓末의 政治權力은 일반 대중과는 완전히 乖離되어 있었기 때문에 植民地化의 政治社會變動은 권력 지배층의 行態分析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할 것 같다.

당시의 권력 지배층은 政治外的 次元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韓末의 官僚支配層이 아닌가 한다. 물론 官僚支配層이라고 해서 모두 직접적으로 커다란 상관성이 있는 것이 아닐지 몰라도, 특히 甲午改革 이후의 사회적 정치적 변동에 의하여 성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필자는 政治支配層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 韓末의 官僚支配層이라 할 수 있는 勅任官뿐만 아니라 韓日合併 당시의 韓人官僚인 高等官과 貴族의 사회적 배경을 조사하였다.

이것은 모두 韓末 政治變動에서 성장된 政治勢力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合併 당시의 정치 지배 세력이기 때문에 관료 지배층과의 어떠한 異質性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韓末의 관료 지배층이라 하지만 그들의 거의 대부분이 1907년 韓日協約 이후의 勅任官(전체의 83%)이기 때문에 合併當時의 高等官 및 귀족과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따라서 同質性이 대단히 높으리라 생각한다.

필자가 조사한 정치 지배층은 韓末의 勅任官과 高等官 및 貴族이다. 勅任官은 1903년에서 1910년까지의 111명에 대한 上級官僚이고,[1] 高等官은 韓日合併 당시의 內閣·中樞院·表勳院의 高等官 이상 각 大臣·親衛府長官·陪從武官長까지를 포함한 것이며,[2] 귀족은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授爵한 者로서 王族과 이를 거절한 者(韓圭卨·兪吉濬·洪淳馨·閔泳達·趙慶鎬·尹用求)를 제외한 것이다.[3]

이들의 調査時期가 각각 다르지만 거의 同時代이고 관료 지배층이었기 때문에 同質性이 강한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勅任官은 80%가 1907년 이전의 관료이다.

필자가 조사한 이들은 상당히 중복된 것이 많다. 勅任官의 경우는 高等官과 貴族名單에서 二重의 重複이 12명이고 三重의 것이 17명이며 高等

---

1) 勅任官은 李完用·李允用·李秉武·李根澤·李載克·李載崐·李容植·李址鎔·金允植·趙羲淵·趙秉弼·朴齊純·權重顯·宋秉畯·閔泳綺·徐正淳·嚴柱益·高永喜·任善準·成岐運(以上 大臣), 兪星濬·柳正秀·李源兢(以上 協辦), 李根洪·李在正·李鳳魯·金奎熙·金晩秀·洪承穆·申應熙·玄普運·宋憲斌·朱錫冕·趙英熙·尹吉炳·朴勝鳳·南奎熙(以上 贊議), 李根培·李重夏·李謙濟·李寅赫·崔錫敏·成晃鎬(以上 卿), 李羲惠·金思濬·朴容大·張承遠·尹祖榮·徐肯淳·鄭寅學(以上 特進官), 李恩寅·李輔榮·李根教·李範九·李載德·李正魯·金思轍·金永典·韓光洙·沈相薰·申泰茂·尹奎燮·閔景植(以上 提調), 李容觀·李鎬成·李斗璜·尹性普·朴重陽·尹忠求·許璡·柳赫魯(以上 觀察使), 閔炯植·趙秉潤·韓鎭昌·李熙斗·白性基·權重奭·梁性煥(以上 參將), 李建春·李鶴圭·李鍾泰·李康夏·李璣鍾·金榮漢·金喆鉉·金洛憲·金基肇·金彰漢·朴羲秉·劉猛·鄭鎭弘·廉仲模·丁大有·徐丙珪·趙禮錫(以上 局長), 金重煥(公使), 李容復·鄭寅昇(議官), 張華植(會辦), 崔錫肇(府尹), 尹鎭佑(司長), 康永均(軍醫長), 宋敬和(軍器廠製造所長), 金澤基(摠辦), 金甲洙(檢事), 李始榮(首班判事), 洪鍾檍(裁判長), 李夏榮(顧問), 李根湘(副議長, 韓昌洙(書記官長), 朴齊斌(副摠管)

2) 高等官은 李完用·李秉武·李容植·李建春·李源鎔·李址鎔·李根湘·李夏榮·李根澤·李載崐·李在正·李鶴圭·李聘植·李鳳魯·金允植·金明秀·金晩秀·金逵河·金重演·金禹植·朴齊純·朴勝鳳·朴慶陽·朴齊瓛·趙重應·趙東潤·趙英熙·趙秉健·趙羲淵·趙源誠·鄭東植·鄭丙朝·鄭蘭教·鄭恒謨·宋秉畯·宋憲斌·宋榮大·洪承穆·洪運杓·權重顯·權泰煥·高源植·高永昌·高永喜·韓昌洙·兪星濬·魚瑢善·任善準·南奎熙·尹炳晧·卞鼎相·申泰游·許璡·李純默·吳悌泳

3) 貴族은 李載完·李載純·李海昌·李海昇·尹澤榮·朴泳孝(以上 侯爵), 李址鎔·李完用·閔泳璘(以上 伯爵), 李完鎔·李埼鎔·李容植·李夏榮·李根澤·李載崐·李秉武·李根命·閔泳徽·閔泳韶·閔泳奎·閔丙奭·趙民熙·趙重應·權重顯·尹德榮·任善準·宋秉畯·朴齊純·高永喜·金聲根(以上 子爵), 金奭鎭·金春熙·金思濬·金嘉鎭·金永哲·金宗漢·金鶴鎭·金思轍·金炳翊·李根湘·李乾夏·李容泰·李鍾健·李鳳儀·李根澔·李載克·李允用·李正魯·李容元·李冑榮·閔炯植·閔種默·閔泳綺·閔商鎬·趙鼎九·趙東潤·趙同熙·趙羲淵·朴齊斌·朴箕陽·朴容大·鄭漢朝·鄭洛鎔·尹雄烈·南廷哲·崔錫敏·張錫周·成岐運·韓昌洙(以上男爵)

官의 경우는 전자가 13명, 그리고 후자가 17명이다. 그리고 귀족은 전자가 12명이고 후자가 17명이다. 이러한 세 가지 정치 지배층의 사회적 성격을 그들의 사회화 과정과 권력 공동체의 분석에서 밝히고자 한다. 즉 그들의 官職·品階·年齡·科試·學歷·居住·氏族은 韓末 관료 및 귀족의 履歷書를 중심으로 하여 찾고 거기에서 알 수 없는 父와 祖父의 科試 및 官職은 「萬姓大同譜」와 族譜 및 「朝鮮貴族列傳」을 중심으로 하여 찾아서, 이들의 성분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4]

韓末 정치 지배층의 성격 분석이 統計的 資料處理에 의해서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의 權力共同體, 즉 家門과 世代內 移動(經歷)의 성격은 韓末의 大臣에 대한 事例調査에서 규명하여 보기로 하였다.

여기서 정치 지배층의 사회적 성격을 주로 그들의 背景分析에서 밝히기로 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정치·사회의 제도 분석은 거의 하지 못하였다.

2. 政治支配層의 資質

1) 官職의 性質

韓末의 관료는 品階와 官職이 相異한 者가 대단히 많다. 정치 지배층의 범주에 들어간 勅任官과 高等官 중에서 대부분이 從一品~從二品 간의 有品者이나 전자는 20%, 그리고 후자는 30% 정도의 正三品 이하의 有品者가 있다. 그러나 貴族은 모두 從二品 이상이고 가장 많은 것은 從一品이다.

韓末 관료 중에 從二品 이상이 14.1%가 되고 필자가 조사한 관료는 201명이 되나 이 중에서 勅任官의 官職所有者가 그 반밖에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것을 보면, 관료의 지위는 品階보다 官職의 지위와 성질로 따져 보아야 될 것 같다.

필자가 조사한 韓末의 勅任官과 高等官은 大臣을 지낸 사람이 가장 많

4) 官僚의 履歷書는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의 奎章閣本이고 朝鮮貴族履歷書는 藏書閣本이며 族譜는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과 國立中央圖書館의 所藏本이다. 「朝鮮貴族列傳」은 1910년 12월에 大村友之丞이 편찬한 것이다.

고 그 다음이 贊議·副贊議이며, 귀족도 現職大臣과 前大臣을 포함하면 모두 39명으로 가장 많고 卿·顧問·副將·祇候官 등 大臣級의 人士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表 1〉 **政治支配層의 官職**

支配層＼官職	大臣	協辦	顧問	贊議	副贊議	特進官	祇候官	副將	卿	觀察使	參將	提調	書記官	宗室	局長	其他	合計
勅任官	20	3	1	15		7			6	8	7	13			16	15	111
高等官	13			9	12			2					8		3	8	55
貴族	27		6				6	6	11			2		2		9	69

〈備考〉 1) 勅任官과 高等官의 天臣은 前大臣도 포함.
2) 貴族의 경우는 大臣 經歷者가 39명이고 卿·顧問·祇候官·副將도 前大臣의 經歷者가 많다.

그 밖에 勅任官은 局長과 提調가 가장 많으며 나머지도 特進官·觀察使·參將 등이다. 기타도 各官廳의 責任 및 副責任의 자리에 속한다. 그러나 高等官은 書記官·局長 등이 많고 기타도 貴族과 勅任官의 경우에 비하여 그 지위가 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조사한 勅任官과 高等官 및 貴族은 각 행정 기관의 正·副責任者, 즉 政策決定者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韓末의 정치 지배층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官僚支配層인 勅任官이 이러한 지위를 갖게 된 것은 대부분 1905년의 統監府 설치 이후, 특히 1907년의 韓日協約 이후의 일이지만 이미 그 이전에 대개 入官하고 있다.

〈表 2〉 **官僚支配層의 入官年度**

入官年度＼官職	大臣	協辦	局長	贊議	特進官	觀察使	卿	參將	提調	其他	合計
1859～1875	5			3	1	2	1		4	3	20
1876～1894	10	3	7	8	4	3	4	4	5	10	58
1895～1907	4		9	4	2	3	1	3	4	3	33
合計	20	3	16	15	7	8	6	7	13	16	111

勅任官僚의 入官年度는 대부분 甲午改革 이전이지만 勅任官의 31.5%가 甲午改革 이후의 새로운 官吏充員制度에 의하여 入官하였다. 甲午改革

이전의 경우는 대개 開港 이후에 入官한 사람들이지만 전체의 20% 정도는 開港 이전에 入官한 사람들이다.

勅任官의 入官年度는 官職의 성질에 따라 分布傾向의 큰 差異가 없으나' 특히 大臣은 甲午改革 이전에 入官했고 局長은 그 이후의 入官者가 더욱 많다.

이러한 현상은 勅任官의 年輪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고 아직도 傳統的인 방법에 의하여 充員되었음을 암시하여 준다. 그러나 상당한 수가 新制에 의하여 充員되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전통적 세력이 관료 지배층을 형성하고 그들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조사한 勅任官은 76.3%가 1904년의 韓日議定書가 체결된 후에 入官하였고 이들은 文武科人格者의 比率이 많으나, 특히 1904년 이전에 勅任官이 된 者는 武科及第者가 많고 그 후에 勅任官이 된 者는 文科出身과 銓考 출신자가 많다.

이것을 보면, 1904년 이전의 관료 지배층은 武官 출신이 많고 그 후의 경우는 오히려 이것의 比率이 약간 減少되는 경향이다.

文科 출신자는 大臣과 特進官·提調·贊議·其他官職이 많고 武科 출신자는 大臣·觀察使·贊議가 많다.

이러한 科試를 거치지 않고 또한 新制學歷도 없이 약 30%가 勅任官이 되어 있다. 특히 局長의 대부분(약 10%)이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는 것은 당시의 官僚任用의 情實性이 어느 정도 개재되어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서 官人(文官과 武官)에 대한 전통적인 差別意識이 없어져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1882년의 高宗의 諭音과 1894년의 議案 때문이겠지만 이미 權門勢家의 子孫들이 入格이 쉬운 武科에 많이 及第했고 동시에 武官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文官에의 進出, 즉 정치적 지배층에의 진출을 合法化 및 制度化시켜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韓末에 武科·武官 출신이 大量으로 정치 지배층으로 진출하게

되었고 이들이 開港 이후 外勢를 끌어들이고 이들과 密着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自主的 近代化를 위한 政治的 素養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政治勢力이었다.

2) 年齡水準

韓末 정치 지배층의 年齡은 일반적으로 40代와 50代가 가장 많다. 특히 勅任官은 40代가 가장 많고 高等官은 40代와 50代가 같으며 貴族은 50代 이상이 대부분이다.

〈表 3〉 政治支配層의 年齡構成

支配層 ＼ 年齡	19歲以下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歲以上	未詳	合計
勅任官	1	1	4	4	7	12	25	16	14	10	5	5	1	1	5	111
高等官	1			4	7	7	10	8	8	4		2			4	55
貴族		2		2	5	3	7	15	9	8	6	5	5	2		69

이것은 그들의 入官年度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는 것 같다. 즉 勅任官은 開港~甲午改革期 간에 入官한 사람이 가장 많고(58명) 그 다음으로 甲午改革 이후이며(33명), 나머지는 開港 이전에 入官하였다. 그러나 高等官은 甲午改革 이후에 入官한 사람이 가장 많고(26명), 그 다음으로 開港~甲午改革의 기간이며 開港 이전의 入官者는 少數이다(5명).

이와 같이 勅任官은 現職高等官에 비하여 官職의 지위가 높기 때문이고, 貴族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데 이것은 그들의 授爵時 韓日合倂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功勞가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朝鮮古來의 名門으로서 커다란 社會的 威勢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開港 이후 日帝의 진출과 植民化에 커다란 功勞가 있는 權力支配層이었다.

그러나 勅任官과 高等官 중에 30代 이하는 매우 빨리 昇進한 者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이 新制學校 卒業者인 동시에 親日的인 성격이 강한 경력 때문이 아닌가 한다.

年齡이 낮은 者는 局長級이 많으나 간혹 特進官·觀察使·卿·參將·提

調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蔭德·個人的 資質·親日性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의 作用結果라 할 수 있다.

3) 科試와 學歷

王朝時代에 관료 지배층이 되려면 文科에 入格하지 못하면 대단히 어렵다. 文科에 入格하지 않아도 朝鮮王朝時代에 三議政이 된 사람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小科와 文科를 거친 者가 대부분이고 동시에 蔭德을 입고 있는 것이다. 文科를 거친 三議政은 전체의 86.4 %이다.[5]

그러나 韓末에는 甲午改革으로 인한 官制와 任用制度가 고쳐지고 새로운 자격, 즉 新制學校의 졸업과 근대적 학문과 지식이 官僚充員의 第1次的 요인이 되어 있다.

그리하여 전통적인 관료 지배층의 資質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 지배층은 약 70 %가 入官年度가 甲午改革 이전이기 때문에 근대적인 資質보다는 오히려 전통적인 특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韓末 관료 지배층은 一般官僚의 充員要因과는 대단히 다르다. 一般官僚는 科試入格者가 전체 관료의 15.3 %에 불과하고 新制學校의 졸업자는 전체 관료의 44.9 %인 데 반하여 관료 지배층은 전자가 65.7% 이고 후자는 오히려 적어서 13.5 %이다.

이것을 보면, 官僚勢力內에서도 上級者와 下級者 간에 대단히 異質的인 사회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後者가 전통적인 교육을 모두 받았지만 前者는 傳統性이 더욱 강하고 後者는 近代性이 더욱 강했을 것이다.

表 4를 보면, 정치 지배층은 문과 출신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武科 출신이며 新制學校 출신자도 상당히 많은데 상당한 수가 科擧入格者이다. 또한 전체 관료 지배층의 30 %가 科擧入格과 新制學歷이 없으면서 정치 지배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순전히 좋은 家門 출신, 즉 推薦과 蔭德에

5) 拙稿:「李朝 三議政의 社會的 背景」 韓國社會學, 韓國社會學會, 1964. p. 46.

의하여 가능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表 4〉 **政治支配層의 入官資格**

資格 / 支配層	進士	生員	文科	武科	其他試驗	蔭	南行추천	新制學校	新制學校+科擧	無	合計
勅任官	6	2	36	16	1	4	1	7	8	30	111
高等官	4		13	5		2		10	7	14	55
貴族	5		41	10		2			3	8	69

表 4에서 韓日合併 당시의 관료 지배층인 高等官이 勅任官에 비하여 新制學校 출신자가 많고 또한 留學者의 比率이 전자가 14.2%이고 후자가 5.4%인 것을 보면, 역시 高等官이 親日的 性格이 강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貴族은 科擧入格比率이 가장 높고 新制學校와 留學者의 比率도 가장 낮다.

高等官의 親日的 性格이 강한 것은 그들의 연령이 낮고 新制教育을 받고 留學者의 比率이 높기 때문에 高等官吏任用에 統監의 同意를 얻기 쉬웠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植民主義者들이 政治支配層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政治勢力을 귀족으로 대우하면서 회유하고 친일적인 官僚支配層은 廢官時 恩賜金을 주거나 植民官僚로 이용하는 것이다.[6)]

韓末 관료 지배층의 科擧入格率은 65.9%인데, 이것은 自己 父親 중 有官者의 科擧入格率(71.0%)보다도 낮다. 이것은 과거에 비하여 科擧制가 관료의 任用에 미치는 영향력의 弱化를 의미하고 동시에 蔭德과 推薦의 영향력의 증대를 의미한다.

官僚支配層의 父親 중에서 無官者(26명)와 判書(12명) 및 未詳(33명)이 가장 많은데 上級官僚(判書·領相·承旨)는 역시 文科 출신이 대부분이다.

文科及第者의 年齡은 24세 전후에 가장 많으나 16세에서 40세에 이르기까지 주로 分散되어 있고 武科及第者는 대개 26세 이하이다.

이와 같이 어려운 文科를 거쳐도 韓末에는 文武科의 차별이 없어지고 오

6) '韓日合併條約文', 第3條·4條·5條 및 7條에 규정되어 있음. 隆熙 4년 8월 22일.

히려 武科 출신이 要職에 任用되는 경향이었다.

이것은 관료 지배층의 子弟들이 주로 쉬운 武科에 入格하고 이것이 정치 지배층의 지위를 많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科擧及第者는 대부분 甲午改革 이전에 入官하였지만 15%가 그 후에 入官하였고 甲午改革 이전에도 科擧에 入格하지 못한 者가 특히 開港~甲午改革 期間에 18%가 入官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甲午改革 이전에도 入官時에 情實性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居住地域

관료의 출신 지역은 비교적 지방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관료 지배층 또는 정치 지배층의 경우는 비록 지방 출신의 科擧入格者가 많고 이들이 중앙에 진출하고 있으나 서울 출신이 정치 지배층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관료의 履歷書에는 주로 居住地域이 밝혀져 있고 출생지를 알 수 있는 경우, 특히 貴族의 경우에는 忠淸道 출신이 많으나 이들은 거의 대부분 서울의 名門 출신이다.

서울에 居住하는 정치 지배층은 서울의 北部[7]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그 다음이 南部[8]이며 勅任官은 中部[9]와 西部[10]에도 많이 살고 高等官은 西部에 많이 산다. 未詳인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거의가 서울에 거주한 것 같다.

勅任官의 居住地를 官職別로 보면 大臣은 北部와 南部에 많이 살고 局長은 南北中西部에 分散되어 있으며 贊議는 北部와 西部에, 參將은 北部에 비교적 많이 居住하고 있다.

7) 北部署는 齋洞·嘉洞·三淸洞·杜洞·花開洞·苑洞·小笠洞·大安洞·磚洞·渼洞·碧洞·紅峴洞·小安洞·新橋洞·水標橋洞 등이다.
8) 南部(署)는 茶洞·草洞·筆洞·墨洞·苧洞·小龍洞·小仁峴洞·銅峴洞·上犂洞·冷井洞·竹洞·長橋洞·會洞·南橋洞 등이다.
9) 中部는 磚洞·壯洞·鐘洞·泥洞·典洞·帽洞·相思洞·大廟洞·貫子洞·內相洞·下漢洞·蛤洞 등이다.
10) 西部는 社稷洞·銀杏洞·京橋洞·倉洞·芳橋洞·中洞·鍮洞·尼洞·蛤洞·尊峴洞 등이다.

〈表 5〉 政治支配層의 居住地

支配層 \ 居住	서울					京畿	慶北	忠南	全北	未詳	合計
	東署	西署	南署	中署	北署						
勅任官	2	16	25	30	22	5	2	2	1	6	111
高等官	1	13	6	22	7					6	55
貴族	1	7	14	22	7					18	69

이것을 보면, 서울의 班村을 알 수 있고 또한 地位가 약간 낮을수록 일정한 지역에 集中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班村의 의미가 약화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한다.

3. 政治支配層의 家門

1) 身分背景

傳統社會에 있어서는 官職이 兩班官僚의 유일한 生計手段이기 때문에 官僚支配層의 신분 배경은 대단히 높다. 다시 말하면 관료의 父親 또는 祖父의 관직 소유자는 많고, 따라서 그들의 科試入格率도 대단히 높은 것이다.

王朝 末期에는 王室 이외에도 서울과 같은 都邑에 관료 출신의 不在地主가 많이 나타남으로써 관직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었고 兩班의 體統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재산의 保護와 增加를 위해서도 관료에의 진출이 斷絶되기 어렵다.

韓末의 관료의 신분 배경은 그들 父親의 入格科試나 官職有無를 확인하여 본 결과 대단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관료 지배층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政治支配層 중에서 父親의 신분 배경은 귀족이 가장 높고 勅任官이 가장 낮으나 그들간에 아주 심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表 6〉 父·祖의 官職位

支配層 \ 官職		領相	判書	參判	承旨	牧使	府使	兵使	郡守	縣監	參奉	管政	其他	無	未詳	合計
勅任官	父	2	13	4	3				3	2	4		21	26	33	111
	祖		8	2		3	3	5	3	2			11	36	38	111
高等官	父	2	6		2				1	2		2	17	12	11	55
	祖		8	1		3	3	2		2			7	15	14	55
貴族	父	1	16	3	1				2	4		3	21	14	4	69
	祖	3	14	3	2	3	2	4		2			12	20	4	69

勅任官의 경우에 父親의 有官者는 전체의 66.7 %가 되고 祖父는 50.7 %이며 高等官의 경우도 有官父親이 72.7 %가 되고 有官祖父는 63.4 %이다. 貴族의 경우는 더욱 높아, 전자가 78.5 %이고 후자는 69.3 %이다.

이것을 보면, 祖父의 有官者가 父親에 비하여 약간 낮으나 다른 일반 관료에 비하여 대단히 높다. 특히 祖父의 관직은 外職의 地方長官이 많은 데 비하여 父親의 경우는 中央要職이 많다.

有官의 祖·父 중에서 判書가 가장 많고 기타도 많으나 이것도 상당히 높은 官職이라서 정치 지배층의 신분 배경은 대단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정치 지배층의 신분 배경이 높다는 것은 名門族譜라 할 수 있는 「萬姓大同譜」에서 一般官僚의 父親을 30 %밖에 찾지 못하였는 데 반하여 정치 지배층의 경우는 거의 $\frac{2}{3}$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신분 배경이 높으면 子孫들의 入官과 入科도 그들의 튼튼한 물질적 기반과 권력 배경으로 대단히 용이한 것이다. 그러나 신분 배경이 낮으면 入官과 入格이 대단히 어렵다.

여기에서 우리는 권력 지배층의 子孫이 다시금 권력 지배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정치 지배층의 父親이 有官者가 많고 그 지위가 높다는 것은 科擧와 文科에의 入格率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

表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치 지배층의 父·祖의 科擧入格率은 대단히 높고 이것은 入官率보다 낮은 것을 보면 祖·父의 入官이 門蔭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신분은 더욱 높은 것이다.

〈表 7〉 父·祖의 入格科試

支配層 ＼ 科試		進士	生員	文科	武科	蔭	無	未詳	合計
勅任官	父	9	2	19	9	4	35	33	111
	祖	6	4	9	9	8	37	38	111
高等官	父	2	1	15	3	4	23	11	55
	祖	11	4		4		18	14	55
貴族	父	12	1	14	7	5	26	4	69
	祖	2	6	16	5	6	31	4	69

勅任官의 科擧入格率은 父親의 경우는 55.2 %이고 祖父의 경우는 52.6 %이다. 그리고 高等官의 경우는 전자가 47.7 %이고 후자는 56.1 %이며 貴族은 전자가 60 %이고 후자는 52.3 %이다.

科擧入格率은 高等官을 제외하면, 모두 父親이 祖父에 비하여 더욱 높으나 高等官만이 낮은 것은 甲午改革의 영향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한다. 즉 科擧보다 新制教育이 새로운 入官評價의 尺度가 되었기 때문이다.

科擧及第者는 文科가 가장 많고 이것은 祖父의 入科의 경우에 비해도 더욱 높다. 그리고 貴族의 父親과 高等官의 祖父 중에서 進士入格者가 많은데 이것은 王朝 末期에 있어서 小科의 大量入格現象의 결과가 아닌가 한다.

정치 지배층의 父·祖父의 入官의 경우는 門蔭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表 7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들 子孫의 支配層化에는 그것이 커다란 機能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분 배경이 높은 子孫은 그들의 初職이 注書·宣傳官·正字와 같은 舊制인 것을 보면, 科擧入格 후에 入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신분이 낮은 경우는 初職이 主事와 같은 新官制와 注書와 같은 舊制가 많다.

이것은 전자가 甲午改革 후의 門蔭에 의한 入官이고 후자는 신분이 낮지만 科擧入格者의 入官인 것 같다. 또한 參奉의 入官者는 門蔭에 의하여 入仕할 수 있는 신분 배경이 높은 자손들이다.

이와 같이 科擧와 門蔭이 겸비되어야 관료지배층이 용이하게 될 수

있다.

2) 親族背景

韓末 정치지배층의 신분 배경이 높다는 것은 그들의 家門이 오랜 名聲과 傳統을 유지하여왔다는 것을 뜻한다.

王朝時代의 名聲은 정치적 권력·경제적 수입·사회적 위세·학문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높다. 당시에는 이러한 要因이 거의 官職에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入科와 入官, 그리고 上級官僚가 될수록 名聲은 높고 이것이 오래 지속될수록 門閥이 형성되는 것이다.

家門의 閥族化 현상은 通婚圈이 同姓同本끼리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異姓氏族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몇 개의 姓氏 간에 通婚關係에 의하여 血緣共同體를 형성하고 이것이 하나의 政治勢力化하여 권력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한 權力共同體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通婚圈은 官僚社會內에서도 同一한 氏族 간에 通婚이 이루어질 수 없는 原規가 있기 때문에 同一한 品階와 官階, 즉 身分階層끼리 이루어진다. 通婚이 身分內婚制이기 때문에 관료 지배층이 되려면 蔭德이 있어야 하고 家門이 좋지 못하면 上級官僚가 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것이 政治勢力으로서 강력히 나타나는 경우에 소위 勢道政治의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이 王朝時代의 정치 지배층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

이러한 權力共同體가 형성되고 오래도록 지속되기 위해서는 身分內婚制와 같은 사회적 규범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규범이 존재해야 된다.

이러한 규범은 王朝 末期 社會의 封建的 要因의 해체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대단히 약화되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科學及第와 入官傾向에서 나타났고 또한 開化의 政治勢力이 등장되었다. 이것을 제도화시킨 것이 甲午改革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甲午改革 前後의 정치적 갈등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정치적 갈등을 文明開化와 傳統保守라는 측면에서도 解釋할 수 있으나 新進官僚의 전통적인 門閥에 대한 抵抗이라고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甲申政變의 主役의 身分背景 또는 家門이 높은 사람도 있지만 入養 간 사람이 많고 전통적 門閥出身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思想的 配役은 오히려 開明한 中人階級이었다.

이와 같은 傳統門閥과 新進家門 간의 對立은 제도상으로 甲午改革 이후에 斷絕되었으나 실제적으로 존재하였다.

이것은 表 8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表 8〉 政治支配層의 家門

氏族 / 支配層	全州李	慶州李	金海金	慶州金	安東金	海州吳	平山申	密陽朴	淸州韓	南陽洪	驪興閔	舊名門氏族	新興名門氏族	其他李	其他金	其他朴	崔	諸姓	合計
勅任官	17	4		1	2		2	3	3	1		17	10	14	8		2	27	111
高等官	7	1	1			1	1			1		9		6	5			23	55
貴族	17	2		1	6			1	1		9	6	1	7	4		1	15	69

甲午改革 이후 10여년이 지나도 관료지배층(勅任官)의 多數가 全州 李氏와 舊名門氏族이며 合倂 당시의 高等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귀족의 경우는 多數가 全州李氏와 驪興閔氏라는 것이다. 이것은 甲午改革 이전의 名門勢道家이다.

그리고 新進家門이라 할 수 있는 新興名門과 其他姓氏가 勅任官과 高等官의 경우에 압도적으로 많다.

이것을 보면, 韓末의 傳統的 門閥은 全州 李氏와 驪興 閔氏가 그 중심이 되었고 新進家門은 雜多한 氏族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 지배층의 官職에 따라 그들의 氏族을 분석하여 보면, 大臣인 경우는 全州 李氏와 驪興 閔氏가 가장 많고, 그 밖의 관직의 경우에는 대체로 여러 姓氏에 分散되어 있다.

귀족의 官職者는 19세기말의 現職者도 많기 때문에 그들의 氏族이 全州 李氏와 驪興 閔氏가 많으나 20세기 초에는 이들 名門보다는 오히려 새

로운 家門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귀족의 前歷 중에 大臣을 지낸 사람이 모두 39명(辭退者 3명 제외)인데, 이들은 全州 李氏(12명)와 驪興 閔氏(6명)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牛峰 李氏·安東 金氏·楊州 趙氏가 각각 2명이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氏族이다.

반면에 高等官의 경우는 大臣을 지낸 사람(13명) 중에 全州 李氏가 4명이고 나머지는 諸姓氏族으로 傳統名門이 감소되고 있다.

그리고 勅任官의 경우는 高等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新興家門 출신이 많이 등장하고 傳統名門 출신이 약화되어가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表 9〉 **官僚支配層의 職位別 出身家門**

官職 \ 氏族	全州李	慶州李	金海金	慶州金	安東金	海州吳	平山申	密陽朴	淸州韓	南陽洪	舊名門氏族	新興名門氏族	其他李	其他金	其他朴	崔	諸姓	合計
大臣	5										3	1	3	1			7	20
協辦	1																2	3
局長	3	1			2			1			1	2		2			4	16
贊議	1			1			1				2		3	1			6	15
特進官								1			2	3		1				7
觀察使								1			1		3				3	8
卿	4															1	1	6
參尉									1		2	1	1				2	7
提調	2	1					1		1		3	1	3	1				13
其他	1	2							1	1	3	2	1	2		1	2	16

表 9를 보면, 대체로 官職에 큰 차별이 없이 다양한 氏族에 分散되어 있다. 그러나 全州 李氏와 舊名門氏族이 아직도 많음을 알 수 있다.

舊名門氏族이 많다는 것은 이들의 출신이 科擧, 특히 文科에 많이 入格하였고 또한 門蔭으로 入官하여 上級官僚가 많이 되고 있다. 그리고 新進家門의 등장도 대개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名門氏族의 변화는 당시의 權力共同體의 구조적 변화와 그 弱化를 의미한다. 이것은 동시에 정치 권력의 변화와 그 성격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권력 공동체의 血緣性 및 신분 배경이 어떠한가를 알기 위하여 韓末의 貴族名門의 事例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表 10과 11에서 볼 수 있는 事例는 모두 合倂 당시의 귀족이지만 尹澤榮·朴泳孝·閔泳璘·權重顯·李址鎔·李根澤은 19세기 말기의 權勢家들이고 李完用·朴齊純·宋秉畯·李容稙·閔丙奭은 合倂 당시의 親日關係들이다.

〈表 10〉 19C末 權勢家의 親族背景

尹澤榮(侯爵, 陸軍副將, 皇后 尹氏의 生父)

關係	姓名	本貫	科試	官職	備考
父	尹徹求	海平	進士		入養
丈人	兪鎭學	杞溪	文科	參判	入養
祖父	尹容善	海平	生員, 文科	議政	
外祖父	洪敬謨	豊山	進士, 文科	吏曹判書	

朴泳孝(侯爵, 前大臣, 哲宗의 駙馬)

關係	姓名	本貫	科試	官職	備考
父	朴元陽	潘南	進士	工曹判書	
丈人	哲宗	全州		李朝 제25대 王	
祖父	朴齊堂	潘南			
外祖父	李潤行	全義			
	宋延				

閔泳璘(伯爵, 前大臣, 戚族; 入養)

關係	姓名	本貫	科試	官職	備考
父	閔台鎬	驪興	進士, 文科	吏曹判書	入養
丈人	李源麟	龍仁			
祖父	閔致三	驪興			
外祖父	宋在華	鎭川	進士	牧使	
	尹稷儀	坡平	進士	府使	

李址鎔(伯爵, 前大臣, 李載兢의 子; 入養)

關係	姓名	本貫	科試	官職	備考
父	李載兢	全州	文科	禮曹判書(完永君)	
丈人	洪祐奭	豊山		都事	
祖父	李最應	全州			
外祖父	洪抚				

權重顯(子爵, 前大臣)

關係	姓名	本貫	科試	官職	備考
父	權益淳	安東	進士, 文科	大諫	
丈人	尹自敎	坡平			
	李鼎齡	全州			
祖父	權斗璐	安東			
外祖父	李世晟	龍仁	生員	右尹	
	李潤德	全義	武科	兵使	

李根澤(子爵, 前大臣)

關係	姓名	本貫	科試	官職	備考
父	李敏承	全州	武科	贊政	
丈人	柳雲黎	晋州		府使	
祖父	李鍾俊	全州	武科	兵使	
外祖父	韓承烈	淸州	武科		

〈表 11〉 合併當時 閣僚의 親族背景

李完用(伯爵, 總理大臣; 入養)

關係	姓名	本貫	科試	官職	備考
父	李鎬俊	牛峰	蔭, 文科	判書	入養
丈人	趙秉駿	楊州			
祖父	李塤	牛峰			
外祖父	閔龍顯	驪興	進士		

朴齊純(子爵, 前參政大臣)

關係	姓名	本貫	科試	官職	備考
父	朴洪壽	潘南	蔭, 文科	主簿	
丈人	徐廉淳	大邱			
祖父	朴宗晃	潘南			
外祖父	李相鉉	廣州			
	黃鍾羽	昌原			

宋秉畯(子爵, 前大臣)

關係	姓名	本貫	科試	官職	備考
父	宋文洙	恩津			
丈人	金商基	慶州			
祖父	宋欽直	恩津			
外祖父	崔九鉉	全州			
	高喆淳				

趙重應(子爵, 前大臣)

關 係	姓 名	本貫	科 試	官 職	備 考
父	趙 宅 熙	楊州	蔭, 進士	主事	
丈 人	吳 憲 默	海州			
祖 父	趙 徽 林	楊州	生員, 進士	牧使	
外祖父	朴 庠 壽	潘南			

閔丙奭(子爵, 前大臣; 入養)

關 係	姓 名	本貫	科 試	官 職	備 考
父	閔 敬 植	驪興			入養
丈 人	沈 相 復	靑松			
	朴 海 一				
祖 父	閔 泳 緯	驪興	文 科	判書	
外祖父	金 敎 淵	延安			
	趙 在 淳	楊州	文 科	判書	入養

李容植(子爵, 前大臣)

關 係	姓 名	本貫	科 試	官 職	備 考
父	李 承 祖	韓山		司果	
丈 人	趙 秉 世	楊州	進士, 文科	左相	
祖 父	李 益 在	韓山		牧使	
外祖父	洪 明 圭				

〈備考〉 關係 중 高永喜(子爵, 前大臣)는 中人出身임

表 10과 11에서 韓末權力支配層의 祖·父와 外祖 및 丈人 등의 3族, 즉 친족의 權力構造와 그들의 通婚圈 및 신분 배경을 推察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당대의 政治的 背景을 어느 정도 이해하여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圖表에서 나타난 자료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그들의 身分背景이 대단히 높다. 19세기 말의 權勢家가 20세기초의 경우에 비하여 높고, 특히 前者는 判書級의 신분 배경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둘째로 19세기말의 權勢家는 그들의 親族 중에 科擧入格者가 대단히 많으나 20세기초의 권세가는 그렇지 못하다.

세째로 이들의 通婚圈은 같은 身分階層끼리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세기말의 권세가는 대단히 높은 身分 간의 通婚이고 이들은 주로 당대의 名門氏族인 坡平 尹氏·潘南 朴氏·全州 李氏·驪興 閔氏 간의 血緣共同體를 형성하고 있다.

네째로 이들의 外祖 또는 丈人이 2명인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특히 權門勢道家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섯째로 이들 중에 入養者가 많이 있는데 그들의 養家는 生家에 비하여 身分地位가 높다.

이와 같이 19세기말의 권세가들의 신분 배경과 혈연 배경이 20세기초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다는 것은 前者는 오랜 勢道家門이고, 勢道家門의 族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父系血族者들이 당시의 높은 官職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後者는 甲午改革 이후에 그러한 勢道家의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성장된 新興勢力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4. 政治支配層의 移動

1) 職業經歷

韓末 권력 지배층의 官職經歷은 대단히 찬란하다. 이들의 年齡과 신분 배경이 대단히 높고 世代內의 직업 전환이 없이 入官하여 官職生活을 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官職을 거치고 있다.

이러한 職歷은 다음의 事例研究에서 자세히 볼 수 있겠지만,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들의 初職이 新制와 舊制의 관직에 半分되어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귀족은 舊制의 경우가 많고 勅任官과 高等官의 경우는 오히려 新制가 더욱 많다. 新制인 경우는 主事가 가장 많으나 舊制인 경우는 (假)注書와 參奉 및 宣傳官이라 할 수 있다. 특히 注書는 文科及第者가 많고 宣傳官은 武科 출신, 그리고 參奉은 蔭德에 의존하고 있다.

〈表 12〉 **政治支配層의 初職**

支配層 \ 初職	主事	參奉	教員	技師	議官	侍御	蔭閥	宣傳官	童蒙教官	注書	校理	正字	其他	合計
勅任官	22	7	4	1	4	3		6		14	3	4	43	111
高等官	17	5		3				2	2	6	1	2	17	55
貴族	5	5					5	4	5	8	4	1	32	69

이것을 보면, 科擧出身者의 入官傾向도 짐작할 수 있고 上級官僚가 되려면 어떠한 初職의 入官이 有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 지배층의 初職이 新官職이 많다는 것은 이것이 제정된 지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支配層으로 대두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下級官僚勢力의 多數가 新制에 의하여 성장되었고 이들이 관료 세력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主導的인 機能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관료 지배층에서 어떠한 初職을 거친 者가 주로 어떠한 官職의 占有者가 되어 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表 13〉 **官僚支配層의 職歷**

初職 \ 官職	大臣	協辦	局長	贊議	特進官	觀察使	卿	參將	提調	其他	合計
主事	1	2	8	4		1	1		1	4	22
參奉	3			2			1		1		7
教員	2							1	1		4
議官			2		1				1		4
侍御	1		1	1							3
宣傳官	2			1				2		1	6
注書	2			2	3	1			3	3	14
校理							1		1	1	3
正字	1			1	1				1		4
其他	8	1	5	4	2	6	3	4	4	7	44
合計	20	3	16	15	7	8	6	7	13	16	111

表 13에 의하면, 大臣은 參奉과 宣傳官·注書 및 教員을 거친 者가 상당히 많고 局長과 協辦은 主事와 議官을 거친 者가 많으며, 贊議는 主事와 參奉·注書의 출신이 많다. 그리고 特進官과 提調는 假注書를 거친 者가 더 많으며, 그 밖에는 이보다 대개 더 높은 지위의 初職者들이 관료

지배층이 되어 있다.

여기에서 局長과 協辦 및 大臣 등 新官制는 역시 新官職 출신이 많고, 觀察使·提調·卿 등은 舊官職의 入仕者들이 많다.

우리는 表 13에서 主事·參奉·教員의 출신이 大臣·協辦·贊議에 상당히 많고, 실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局長은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新官制의 實施가 오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新制官僚의 급속한 成長을 말하여준다.

初職이 主事인 경우는 進士試(4명)와 武科(2명) 출신이 있으나 약 半數 이상이 科擧에 入格하지 않았다는 것은 推薦과 門蔭에 의존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參奉의 경우는 科擧入格者가 많으나 小科가 대부분이고 教員은 文科 출신이 많다.

文科及第者인 경우는 (假)注書의 初職이 가장 많고(약 40%), 나머지는 (副)正字와 校理·教員의 初職者가 가장 많다. 그러나 武科인 경우 宣傳官과 主事의 初職이 많다.

이러한 것을 보면, 관료 지배층은 自己의 入官이 아직도 科擧制와 門蔭을 중심으로 한 官僚制度가 제대로 그 機能을 발휘하고 있을 때 入官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韓末의 관료지배층 중에서 大臣의 경우는 그러한 官僚制的 影響 아래 자란 것이 대부분이다.

여기에서 관료지배층의 職業移動과 그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그리고 植民地化의 主導的 役割을 수행한 大臣의 社會的 資質을 규명하기 위하여 그들 중에 몇 사람의 경력을 밝혀보기로 한다.

表 14를 보면, 親日大臣들의 여러 가지 職歷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반 관료지배층의 대표적인 類型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을 관료지배층의 一般的 資質과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職歷의 特性과 親日上級官僚의 사회적 특성을 抽出해보자.

〈表 14〉 韓日合倂時 要職者의 主要職歷

姓名 / 現職 / 本貫 / 年齡 / 年度	李 完 用 總理大臣 (正一品) 牛峰 52歲 (1858年生)	朴 齊 純 內部大臣 (從一品) 潘南 55歲 (1855年生)	趙 重 應 農商工部大臣 (從一品) 楊州 50歲 (1860年生)	高 永 喜 度支部大臣 (從一品) 濟州 61歲 (1849年生)	李 容 植 學部大臣 (從一品) 韓山 58歲 (1852年生)	宋 秉 畯 中樞院顧問 (從一品) 恩津 52歲 (1858年生)
1871				副司勇 (1866年)		武科入格, 守門將
1872						司果, 判官, 都事
1875					文科入格, 權知, 副正學	司憲府 監察
1876						
1877					侍講院 說書	
1878			成均館 中學儒生			
1879					藝文館 檢閱	
1880			殿講直赴初試		司諫院 正言	
1881				紳士遊覽團隨員	龍岡縣令	
1882	文科入格, 育英公院, 美淸日遊歷					
1883		文科入格, 主事, 幇辦	俄國 및 滿洲遊覽			
1884		統理衙門主事, 天津駐劄從事官		陽智縣監, 朔寧郡守	藝文館 應敎, 司諫	渡日
1885		副校理	定配	高陽郡守, 參議	承政院副承旨	
1886	奎章閣待教	承政院副承旨		機器局幇辦	內務府 參議	中樞府 都事
1887	駐美公使館參贊官	承旨, 內務參議			東萊府使	親軍後營隊官
1888	副承旨, 駐美臨時代理公使	吏曹參判, 仁川府使				
1889		典圜局 總辦			承政院副承旨	興海郡守
1890	回國	內務府協辦, 刑曹判書	特赦, 殿講直赴初試		兵曹·刑曹·吏曹參議	陽智縣監
1891	侍講院 檢校司書	漢城府左尹, 戶曹參判			刑曹參判	親軍壯衛營領官
1892		禮曹參判			司憲府大司憲 漢城府 右尹	日本亡命 (잠업 종사)
1893		吏曹參判			中樞府同知事	
1894	駐日全權公使, 外部協辦	長興府使	銓考課主事, 駐日大使 義和君隨員	內務部參議, 駐日大使 義和君隨員	義州府尹, 開城留守	
1895	學部大臣, 特免懲戒	濟用院太僕司長, 外部協辦	外部交涉局長, 仁川府使	學部協辦, 駐日全權公使		
1896	外部大臣, 3部 臨時署理大臣	議官	日本亡命 (농업 종사, 政經工夫)	農商工部協辦, 外部協辦	春川觀察使	

1897	學部大臣, 平南觀察使, 秘書院卿			學部協辦		
1898	全北觀察使	外部協辦, 外部大臣		度支部協辦, 特免懲戒	議官, 學部協辦, 參贊	
1899	全北宣諭使			漢城府判尹	特免懲戒, 參贊, 特進官	
1900		兼3部臨時署理大臣		度支部協辦, 農商工部協辦	太醫院卿, 贊政	
1901	宮內府特進官, 免官	陸軍參將, 贊政, 全權公使 授日本旭日章, 外部大臣				
1902		駐淸全權公使		中樞院議官, 學部協辦	流配, 特免懲戒, 特進官	黃海觀察使
1903		外部大臣, 法部大臣, 贊政		駐日全權公使 度支部協辦	宮內府特進官	
1904	宮內部特進官			學部協辦	學部大臣, 全北觀察使	歸國(日本軍通譯)
1905	學部大臣	法部大臣, 農商工部大臣, 學部大臣, 外部大臣, 參政大臣		法部協辦, 贊議, 黃海觀察使	學禮院卿	唯新會·一進會의 組織
1906	臨時署理 外部大臣		特赦歸國, 統監府囑托	總理院卿		
1907	議政府參政大臣, 總理大臣 授日本桐花章	中樞院顧問	法部大臣, 授日本旭日章	度支部大臣, 授日本旭日章	提調, 特進官	農商工部大臣 鑛山總裁, 授日本旭日章, 太子日本留學時陪從
1908			農商工部大臣	法部大臣, 度支部大臣		內部大臣
1909		內部大臣			學部大臣	中樞院顧問
1910	總理大臣	總理大臣事務(臨時署理)				

〈資料〉 履歷書를 中心으로 作成.

첫째는 관직의 在任期間이 대단히 짧고 특히 協辦과 大臣의 경우는 1년이 채 가지 못하고 빈번히 交替되고 있다.

둘째는 各部의 協辦·大臣의 臨時事務를 많이 보고 또한 大臣은 他部大臣의 臨時署理를 많이 겸직하고 있다.

세째는 관료의 免官·懲戒가 있어도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에 대한 特赦免이 있고, 곧 懲戒 이전의 지위에 再任命되는 경우가 많다.

네째는 관료지배층의 敎育은 대개 7~8세에 私塾 또는 家塾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에서 관료의 身分地位의 不安이 존재하고 있다.

1898년 4월 「獨立新聞」에 의하면, 28개월 사이에 交替된 大臣이 外部와 度支部 그리고 法部에는 8명(在任期間이 평균 3개월 半), 內部와 農商工部에는 4명(在任期間이 6朔半), 그리고 學部와 軍部에는 7명(在任期間이 3개월半)이나 된다.[11]

이러한 大臣들의 交替와 짧은 在任期間에서는 안정된 분위기와 자세에서 職務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고 主體的인 政策執行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것은 下部官廳과 官吏任免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당시의 政治不安과 관료의 非專門性 및 專橫을 조성하기 쉽고 나아가 관료의 不正腐敗와 사회의 不安을 조성할 가능성이 대단히 큰 것이다.

表 14에서 親日賣國奴의 사회적 특성을 찾아보자.

첫째로 이들의 年齡은 대부분 50代 前期에 속한다.

둘째로 이들의 氏族은 다양하다.

세째로 이들의 官職生活은 계속적인, 安定된 것이 아니고 또한 職業的官僚出身이라 볼 수 없다. 그들의 昇進이 甲午改革 후에 대단히 빨랐다.

네째로 이들은 日本國의 旭日章과 같은 大勳을 모두 받았다.

다섯째로 이들은 특히 甲午改革 前後 日本에 政治的 亡命 또는 外交官 및 外遊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여섯째로 이들은 甲申政變 이전에 科擧入格者가 많고 外國文物에 밝은 人士들이다.

일곱째로 이들은 대부분 地方官僚의 경험이 적고 中央官職에 주로 종사하였다. 地方官職이라 하더라도 4년간의 在任이 원칙인데 이것이 無視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보아, 그들의 身分背景과 門閥은 전통적인 政治勢力과는 異質性이 있고 甲申政變 당시의 開化勢力의 사상적 영향을 받았으며 근대적인 外國文物에 의하여 開明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親日的인 政治勢力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관료 지배층의 일반적 자

11) 「독립신문」 光武 2년 4월 12일.

질과는 대단히 다르다.

親日的인 관료 지배층은 甲午改革 후에 上級官僚가 되었으나, 특히 日帝植民主義者의 走狗 노릇을 한 宋秉畯과 趙重應은 1907년에 오랜 日本에서의 亡命生活 후 귀국하여 갑자기 大臣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이것은 1907년의 韓日協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高等官吏의 任免이 統監의 同意를 받게 되었고 統監이 추천하는 日本人을 韓國官吏로 任命케 되어 있었으며 韓國政府 및 施政改善에 관한 統監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12)]

이와 같은 관료 지배층 또는 정치적 지배층의 사회적 특성에서 植民地化란 정치 변동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開港 이후, 특히 甲申政變 이후의 권력 지배층의 政治的 行態에서 그것을 규명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나 植民地化의 결정적인 역할은 이들이 행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社會的 特性에서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下級官僚는 新制教育에 의하여 대부분 入官되고 上級官僚는 科擧에 크게 의존되고 있어서 대단히 보수적인 면이 강했는데, 이들은 그러한 資質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親日性이 대단히 강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당시 官僚充員의 情實性은 관료 지배층, 즉 정치 지배층의 가치 기준이 公共性·民族性·國家觀을 전제로 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職位와 權力을 私有視하는 경향에서 초래된 것이 아닌가 한다.

2) 身分世襲性

傳統社會에 있어서 兩班階級은 그들의 支配階級으로서의 身分變動은 거

12) '韓日協約' 第1條·4條·5條에 규정되어 있음. 光武 11년 7월 24일.
統監이 추천하는 日本人을 高等官吏에 任命할 때 그 基準은 ① 各部次官 ② 內部警務局長 ③ 警務使 또는 副警務使 ④ 內閣書記官 및 書記郎 중 약간명 ⑤ 各府書記官 및 書記郎(判任) 중 약간명 ⑥ 各道事務官 1명 各道警務官 ⑧ 各道主事(判任) 중 약간명으로 되어 있다.

의 없다. 다만 오랫동안 入科와 入官이 계속되지 않으면 그들의 身分地位는 下落되게 마련이다.

韓末의 정치 지배층은 앞서 그들의 신분 배경에서 본 바와 같이, 그들 父·祖의 科擧入格者와 有官者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身分의 세습성은 대단히 높은 것이다.

科擧入格率이 勅任官 本人의 경우 65.7%인데 그들의 父親은 55.2%이고 祖父는 52.6%이다. 그리고 勅任官의 父親의 66.7%가 有官者이고 祖父는 50.7%가 이에 해당한다.

高等官과 貴族의 경우는 오히려 勅任官의 신분 배경에 비하여 약간씩 그 比率이 더 높기 때문에 이들의 官職世襲性은 대단히 높은 편이다.

먼저 科擧의 세대간 入格率을 보면, 勅任官의 경우는 자기의 父親 중에 科擧에 入格한 者는 그들의 자식이 87.2%가 科擧에 入格했고, 父親 중에 入格하지 못한 사람도 子息代에 74.3%의 入格率을 내고 있다. 그러나 父親이 未詳인 경우는 子息의 科擧入格率이 24.2%밖에 되지 못한다.

〈表 15〉 世代間 科擧入格率

自己 \ 父	進士	生員	文科	武科	蔭	無	未詳	合計
進士			1	1		4	2	8
生員	1					1		2
文科	6	2	14		1	13	2	38
武科			1	8		7	3	19
試驗						1		1
蔭	1		1		2	1	1	6
無	1		2		1	8	25	37
合計	9	2	19	9	4	35	33	111

그리고 文科入格者와 武科入格者의 世代 간 세습성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甲午改革 이전에는 文武 간의 身分差別이 존재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귀족의 경우는 자기 父親의 경우보다 오히려 自己代에 科擧入格率을 더욱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科擧의 상속은 이를 초과하고 있다.

表 15와 16과 같이 文科及第者의 자손은 역시 文科에 많이 入格했고

武科及第者도 그들의 자손은 武科에 거의 대부분 入格하고 있으며, 小科及第者인 경우 그들의 자손은 文科에 거의 대부분 入格하고 있다.

〈表 16〉 貴族의 世代間 入科者

父 / 自己	文科	武科	小科	蔭	無	未詳	合計
文科	9		10	5	17		41
武科	1	7		1	3		12
小科	2	1	1		1	1	6
無	2		2		3	3	10
合計	14	8	13	6	24	4	69

父親이 科擧에 入格하지 않아도 子息代에 文科入格者가 대단히 많고 또한 蔭子弟도 文科에 많이 入格하고 있다.

이와 같이 科擧入格者의 世代 간 상속성은 높지만 文科와 武科 간의 차별이 심했고, 自己父親代에 入格者가 없어도 祖父 또는 子息代에 入格者가 생기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韓末의 權力支配層, 특히 大臣 중에는 武科 출신이 대단히 많아서 이러한 신분 차별은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科擧의 世代 간 세습성은 勅任官의 경우에 父와 祖父 간의 交叉分析에서도 나타나고, 특히 世代間 無職者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62.2%)을 보면 科擧의 세습성이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관료 지배층의 祖上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科試入格率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에 世代間의 入科率과 入官率의 增大가 일어나야 名門이 될 것이다.

관료지배층의 官職世襲性은 66.6%이다. 나머지는 無官父親인데 이들도 비록 官職에 없으나 祖父代에서는 有官者가 있을 것이다.

관료 지배층의 父親의 官職은 대개 二品 이상이 대부분이고 특히 권력 있는 중앙의 要職이 가장 많다. 즉 判書와 參判, 그리고 承旨와 參奉의

벼슬이 많고 나머지는 여러 官職에 분포되어 있다.

〈表 17〉 勅任官의 官職世襲性

父 / 自己	領相	判書	參判	承旨	郡守	縣監	參奉	無	其他	未詳	合計
大臣		5	1			1		3	9	1	20
協辦								1	2		3
局長			2					4		10	16
贊議	1	2		1	1			2	2	6	15
特進官				2			1	2	1	1	7
觀察使					1		1	3	1	2	8
卿						1		4		1	6
參將		1							2	4	7
提調		5	1				2	2	1	2	13
其他	1				1			5	3	6	16
合計	2	13	4	3	3	2	4	26	21	33	111

이것을 보면, 上級官僚의 자손이 다시금 상급 관료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많으나 子息들에 비하여 父親의 官職位가 낮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지도 못한 것이다.

이것은 관료 지배층의 祖父가 父親에 비하여 官職背景이 낮고 無職者가 더욱 많기 때문이다.

5. 結　論

필자는 韓末 政治支配層의 사회적 성격을 그들의 배경 분석에서 實證的으로 규명하여 보았다.

그러한 결과, 과거의 전통적 지배층의 사회적 성격에 비하여 여러 가지 차이를 지적할 수 있었다.

韓末 政治支配層은 그들의 연령이 40代와 50代가 가장 많고, 전통적 교육과 科試에 의하여 대부분 充員되었으나 外國의 文物, 특히 日本에의 外遊의 經驗이 있는 者가 많다. 또한 그들의 氏族도 傳統的 門閥出身이 많이 있으나 새로운 氏族出身이 많이 등장되고 있다.

이러한 관료지배층의 성격은 一般官僚의 경우에 비하여 매우 對照的 特

性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甲午改革 이전의 권력 지배층에 비해서도 대단히 異質的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출신 배경은 전통성이 강하면서 그들의 社會化는 상당히 近代性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정치 지배층의 近代性이라는 것은 주로 日本의 文物에 의하여 社會化되었고, 따라서 그들의 親日的 性向이 마침내 日帝의 走狗 노릇을 하게 된 것이다.

韓末의 植民地化는 단순히 20세기초의 권력 지배층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다. 오히려 開港 이후 줄곧 外勢의 挑戰과 侵奪이 존재하였는데 이것을 자주적 입장에서 否定的으로 消化하지 못하고, 특히 밑으로부터의 意志를 긍정적으로 受容하여 발전시키지 못하고 外勢에 의하여 安逸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事大主義的 保守主義的 政治哲學을 가진 권력 지배층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20세기초의 권력 지배층은 植民地化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겠지만 19세기 말기의 권력 지배층도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韓末의 支配層은 20세기초뿐만 아니라 19세기말의 권력 지배층까지 포함하여 분석되어야 하겠고, 이러한 考察에서 어느 정도 정확히 解明될 수 있는 것이다.

필자의 조사에서는 이러한 모든 권력 지배층이 研究의 對象이 되지 않았으나 그래도 앞서 분석한 資料에서 어느 정도 植民地化의 前衛的 役割을 전술한 지배층의 성격에서 밝힐 수 있었다.

韓末 支配層의 배경 분석에서, 필자가 알 수 있는 것은 前述한 여러가지 특성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甲申政變과 甲午改革 등에서 표현되어 있는 사회적 정치적 개혁의 意志가 支配層의 새로운 性格構造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20세기 초의 정치 지배층이 과거의 경우에 비하여 전통성과 보수성이 약하고 親日性과 近代性이 강하다고 해서 植民地化가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開港 이후 日帝의 정치적 경제적 侵奪과 이로 인한 우리 나라의 정치·경제 구조의 買辦性과 植民性이 그 동안에 형성된 日本志向의

官僚勢力을 부체질하여 植民地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日帝의 植民地官僚는 20세기초부터 統監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育成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1907년 이후에 볼 수 있는 急造大臣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들이 韓日合併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